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대한민국정부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01 세제	3
●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3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5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7
●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9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1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1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12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3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4
●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15
●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16
●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17
● 자녀장려세제 도입	18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20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21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22
●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23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대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을 상향 조정	24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25
●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26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27
● 역외탈세 방지 강화	28
●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29
●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	30
●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31



●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32
●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33

02 산업·특허·관세 35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규제 완화	35
● 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37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	38
● 계량 질서를 바로잡아 국민 소비생활 보호	39
●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	40
●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대상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을 추가	41
● 특허청고시 상품명칭으로 출원한 경우 상표 출원수수료 할인	42
●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높아진다	43

03 환경·기상·국토 45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45
●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47
●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48
●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50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250원→300원)	51
●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52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53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54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보고·등록·신고 등의 의무 이행 필요	55
●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7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58
●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 도모	60
●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 구축	61
● 여름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이안류 발생 예측정보 대상 해수욕장 확대	62

● 지진통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시행	63
● 초단기예보 및 단기(동네)예보 기간 연장	64
● 총자외선 지수 대국민 서비스 실시	65
●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전국 확대	66
● 기후변화 원인물질,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제공	67
●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68
● 통합 전세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70
●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72
●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	74
● 파독(派獨) 근로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75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	76
●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77
●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78
● 국가공간정보의 제공대상 범위확대	79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 시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80
● 보상전문기관 확대	81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82
●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완화	84
●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 한곳에... ‘건설워크넷’ 운영	85
●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횟수를 확대조정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을 완화 ...	87
●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내 융·복합개발 촉진	88
●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89
●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90
●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본격 지원	91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92
●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93
●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94
●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운영	95
●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96
●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97



●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기관의 자격 구체화 시행	98
●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99
●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100
●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내려	101
●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2

04 보건복지·여성·법무·교육 103

●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103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A형간염 추가)	105
●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06
●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107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108
● 3대 비급여 개선	109
●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110
●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111
●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11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13
●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115
●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11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117
● 국가유공자, 보호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118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119
●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20
● 여성장애인에게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121
●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122
●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123
●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	124
●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125
●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	126
● 친(親)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127

●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	128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129
● 기업 기부채납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1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132
●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133
●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확대 지원	134
●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지원	135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136
●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137
●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138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 및 사업 확대	139
●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신설,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14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본격 추진	142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연중 상시 운영	143
●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	144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최초 시행	145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	146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실시	147
●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149
●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시설 신규 지원	150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151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등 피해자 지원확대	152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153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154
●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도입 및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156
●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157
● 보험모집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158
● 피보험자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제한	159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160
● 단체생명보험의 수익자는 가족으로	161



●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 방지	162
●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	163
●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의지대로	164
● 마을번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165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 교복은 학교에서, 학부모는 부담 경감! -	166

05 고용노동 167

● 최저임금액 인상	167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168
● 일학습병행제 참여대상을 고교 재학생 단계로 확대	169
●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누구나 원하고 필요한 직업훈련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업간 칸막이 제거	170
●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대상 확대 및 내일배움카드제로 참여방식 일원화	17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172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73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중소기업 근속장려금)	174
● K-MOVE 센터 추가 설치 등	175
●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176
●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177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178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179
● '1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및 적용단가 변경	180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을 건설업까지 확대	181

06 인사·행정자치·경찰 183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7급 공무원 공채시험까지 확대	183
●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185
● 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 규제 완화·폐지	186

●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실종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체계 출범	187
●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인상	188

07 **보훈·국방(방사)·병무** 189

●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189
●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190
● 수도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남양주 보훈요양원 개원	191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192
● 상이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기능통합으로 사용자 불편해소	193
● 5급 공채공무원의 중위 임관제도 보완	194
●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선발대상 확대	195
● 군인 진급 또는 전역 시 범죄경력조회 법적 근거 마련	197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적용기준 완화	198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기준 개선	200
●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201
● 예비군 일반훈련 입소 허용시간 변경	202
● 예비군 일반훈련 시 M16소총 사용	203
● 병 봉급 인상	204
●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강화	205
● 장병 전투임무수행 및 복무여건 향상을 위한 장병 보급품 보급 확대	206
● 지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해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	208
●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으로 군 부패행위 처벌 강화	209
● 국산 SW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210
● 저가낙찰 방지 및 기술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한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211
●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재도전 기회 제공 및 지원대상 확대	212
●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 적용	213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214
● 306보충대 해체 후, 사단 직접 입영	215



●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216
●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	217
●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218
● 성실복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가의 가산	219
●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220

08 문화·통신·미래 221

● 재난사고·학교/가정폭력 피해자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221
●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	222
● 스포츠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추진	224
●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225
● 창조관광사업을 관광 창업 지원에서 유망 관광사업체의 맞춤형 성장 사다리로 확대 개편	226
● 장애인·노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지 조성 시범 사업의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향유권 보장	228
●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으로 등급제도 신뢰성 향상	229
●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토대 구축	230
● 궁·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	231
● 전국적으로 EBS 무료 교육채널 1개 시범 도입·운영	232
●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233
● 웹하드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234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실시	235
●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운영	236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대상	237
●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및 중소기업 범위 확대적용	238
● 공개SW R&D 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	240
●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본격 지원	241
● 대학의 연구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간접비 산출방식 개선	243
● 2015년 新 학기부터 150여명 규모로 ICT 학점이수인턴제 실시	244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245

●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246

09 농식품·산림·해양 247

-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 시행 247
-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강화 지원 249
-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250
-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안전·화재)가입 지원 확대 251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252
- ‘농업경영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수입(收入) 보장보험이 도입됩니다. 253
- 발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254
-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255
-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256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257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258
- 쌀 관세화 시행 259
-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260
-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 확대 261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262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264
-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 지원 265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육계로 확대 266
-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 267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 268
-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269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완화 270
- 교육-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식품인력양성 271
- 對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 272
-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각화 273
-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전망 대회 개최 274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275



● 농업인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로 GAP 활성화	276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으로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 강화 ...	277
● 친환경농업직불금(유기) 3년간 추가 지급으로 유기 인증 농가의 소득 보장 확대	278
●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279
●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	280
● 현장 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281
● 산림탄소모아(산림탄소등록부) 시스템 운영	282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규제 개선	283
● 우드그랩 품셈 반영	285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286
●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	287
● 국유림 대부(사용)료 부담 완화	288
● 공·사유림 교환제도 개선	289
● 자연휴양림 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290
● 자연휴양림 보험가입 의무화	291
● 대도시 지역 내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완화	292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 신설	293
● 산림치유지도사 활동범위 확대	294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295
●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296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 완화	297
● 원목 표고자목 구입비용 지원	298
●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확대	299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및 조경수 관정시설 보조율 조정	300
● 정원 정책 신설	301
●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302
●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기준 완화	303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304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연장	305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활용 확대	306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공동사업 지원기준 강화	307
● 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이중규제 개선	308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1%→0.5%)	309
●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	310
● 연안어선의 선복량 한계 상향조정	311
●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상향	312
● 수산자원보호와 농어가 소득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313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시행	314
●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이 쉬워집니다	315
● 배타적경제수역 입어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시범실시	316
● 선박운항의 필수품, 해도 판매가격 인상	317
● 국립해양박물관이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	318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기획재정부

1.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3
2.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5
3.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7
4.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9
5.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10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11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12
8.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3
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4
10.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15
11.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16
12.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17
13. 자녀장려세제 도입	18
1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20
15.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21
16.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22
17.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23
18.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대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을 상향 조정	24
19.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시 과세특례	25
20.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양도시 감면	26
2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27
22. 역외탈세 방지 강화	28
23.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29
24.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	30
25.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31

26.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32
27. FTA관세특례법 전면개정	33

● 산업통상자원부

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규제 완화	35
2. 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37
3.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	38
4. 계량 질서를 바로잡아 국민 소비생활 보호	39
5.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	40

● 특허청

1.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대상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을 추가	41
2. 특허청고시 상품명칭으로 출원한 경우 상표 출원수수료 할인	42
3.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높아진다	43

● 환경부

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45
2.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47
3.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48
4.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50
5.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250원→300원)	51
6.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52
7.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53
8.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54
9.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보고·등록·신고 등의 의무 이행 필요	55
10.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7
11.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58



● 기상청

1.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 도모	60
2.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 구축	61
3. 여름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이안류 발생 예측정보 대상 해수욕장 확대	62
4. 지진통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시행	63
5. 초단기예보 및 단기(동네)예보 기간 연장	64
6. 총자외선 지수 대국민 서비스 실시	65
7.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전국 확대	66
8. 기후변화 원인물질,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제공	67

● 국토교통부

1.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68
2. 통합 전세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70
3.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72
4.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	74
5. 파독(派獨) 근로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75
6.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	76
7.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77
8.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78
9. 국가공간정보의 제공대상 범위확대	79
10.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 시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80
11. 보상전문기관 확대	81
12.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82
13.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완화	84
14.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 한곳에... ‘건설워크넷’ 운영	85
15.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횟수를 확대조정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을 완화 ..	87
16.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내 융·복합개발 촉진	88
17.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89

18.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90
19.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본격 지원	91
20.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92
21.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93
22.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94
23.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운영	95
24.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96
25.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97
26.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기관의 자격 구체화 시행	98
27.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99
28.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100
30.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내리	101
31.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2

보건복지부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103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A형간염 추가)	105
3.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06
4.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107
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108
6. 3대 비급여 개선	109
7.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110
8.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111
9.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112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13
11.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115
12.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116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117
14.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118
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119



16.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20
17. 여성장애인에게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121
18.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122
19.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123
20.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	124
21.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125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	126
23. 친(親)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127
24.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	128
25.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129
26. 기업 기부채납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1
27.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132
28.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133
29.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확대 지원	134
30.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지원	136
3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136
32.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137

여성가족부

1.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138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 및 사업 확대	139
3.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신설,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141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본격 추진	142
5.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연중 상시 운영	143
6.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	144
7.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최초 시행	145
8.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	147
9.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실시	147
10.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149
11.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시설 신규 지원	150

1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151
1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등 피해자 지원확대	152
14.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153
1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154

● 법무부

1.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도입 및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156
2.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157
3. 보험모집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158
4. 피보험자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제한	159
5.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160
6. 단체생명보험의 수익자는 가족으로	161
7.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 방지	162
8.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	163
9.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의지대로	164
10.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165
11.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 교복은 학교에서, 학부모는 부담 경감! -	166

● 고용노동부

1. 최저임금액 인상	167
2.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158
3. 일학습병행제 참여대상을 고교 재학생 단계로 확대	159
4.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누구나 원하고 필요한 직업훈련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업간 칸막이 제거	170
5.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대상 확대 및 내일배움카드제로 참여방식 일원화	171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172
7.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73
8.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중소기업 근속장려금)	174



9. K-MOVE 센터 추가 설치 등	175
10.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176
11.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177
1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178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179
14. '1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및 적용단가 변경	180
1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을 건설업까지 확대	181

인사혁신처

1. 지방인재채용목표제 7급 공무원 공채시험까지 확대	183

행정자치부

1.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185

경찰청

1. 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 규제 완화·폐지	186
2.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실종 등‘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체계 출범	187
3.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인상	188

국가보훈처

1.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189
2.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190
3. 수도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남양주 보훈요양원 개원	191
4.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192
5. 상이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기능통합으로 사용자 불편해소	193

● 국방부

1. 5급 공채공무원의 중위 임관제도 보완	194
2.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선발대상 확대	195
3. 군인 진급 또는 전역 시 범죄경력조회 법적 근거 마련	197
4.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적용기준 완화	198
5.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기준 개선	200
6.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201
7. 예비군 일반훈련 입소 허용시간 변경	202
8. 예비군 일반훈련 시 M16소총 사용	203
9. 병 봉급 인상	204
10.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강화	205
11. 장병 전투임무수행 및 복무여건 향상을 위한 장병 보급품 보급 확대	206
12. 지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해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	208
13.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으로 군 부패행위 처벌 강화	209

● 방위사업청

1. 국산 SW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210
2. 저가낙찰 방지 및 기술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한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211
3.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재도전 기회 제공 및 지원대상 확대	212
4.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 적용	213

● 병무청

1.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214
2. 306보충대 해체 후, 사단 직접 입영	215
3.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216
4.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	217
5.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218
6. 성실복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가의 가산	219



7.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220

문화체육관광부

1. 재난사고·학교/가정폭력 피해자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221
2.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	222
3. 스포츠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추진	224
4.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225
5. 창조관광사업을 관광 창업 지원에서 유망 관광사업체의 맞춤형 성장 사다리로 확대 개편	226
6. 장애인·노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지 조성 시범 사업의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향유권 보장	228
7.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으로 등급제도 신뢰성 향상	229
8.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토대 구축	230
9. 궁·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	231

방송통신위원회

1. 전국적으로 EBS 무료 교육채널 1개 시범 도입·운영	232
2.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233
3. 웹하드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234
4.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실시	235
5.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운영	236

미래창조과학부

1.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대상	237
2.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및 중소기업 범위 확대적용	239
3. 공개SW R&D 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	240
4.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본격 지원	241
5. 대학의 연구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간접비 산출방식 개선	243

6. 2015년 新 학기부터 150여명 규모로 ICT 학점이수인턴제 실시	244
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245
8.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246

농림축산식품부

1.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 시행	247
2.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강화 지원	249
3.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250
4.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안전·화재)가입 지원 확대	251
5.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252
6. ‘농업경영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수입(收入) 보장보험이 도입됩니다.	253
7.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254
8.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255
9.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256
10.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257
11.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258
12. 쌀 관세화 시행	259
13.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260
14.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 확대	261
15.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262
16.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264
17.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 지원	265
18.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육계로 확대	266
19.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	267
20.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	268
21.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269
22.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완화	270
23. 교육·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식품인력양성	271



24. 對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	272
25.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각화	273
26.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전망 대회 개최	274
27.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275
28. 농업인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로 GAP 활성화	276
29.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으로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 강화 ..	277
30. 친환경농업직불금(유기) 3년간 추가 지급으로 유기 인증 농가의 소득 보장 확대	278

식품의약품안전처

1.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279
2.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	280
3. 현장 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281

산림청

1. 산림탄소모아(산림탄소등록부) 시스템 운영	282
2.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규제 개선	283
3. 우드그랩 품셈 반영	285
4.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286
5.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	287
6. 국유림 대부(사용)료 부담 완화	288
7. 공·사유림 교환제도 개선	289
8. 자연휴양림 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290
9. 자연휴양림 보험가입 의무화	291
10. 대도시 지역 내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완화	292
1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 신설	293
12. 산림치유지도사 활동범위 확대	294
13.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295
14.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296
15.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 완화	297

16. 원목 표고자목 구입비용 지원	298
17.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확대	299
18.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및 조경수 관정시설 보조율 조정	300
19. 정원 정책 신설	301
20.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302
21.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기준 완화	303
22.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304
23.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연장	305
2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활용 확대	306
25.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공동사업 지원기준 강화	307

해양수산부

1. 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이중규제 개선	308
2.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1%→0.5%)	309
3.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	310
4. 연안어선의 선복량 한계 상향조정	311
5.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상향	312
6. 수산자원보호와 농어가 소득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313
7.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시행	314
8.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이 쉬워집니다	315
9. 배타적경제수역 입어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시범실시	316
10. 선박운항의 필수품, 해도 판매가격 인상	317
11. 국립해양박물관이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	318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4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11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	38
●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 도모	60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 시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80
● 보상전문기관 확대	81
●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 한곳에... '건설워크넷' 운영	85
●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89
●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90
●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내려	101
●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2
●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165
● 상이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기능통합으로 사용자 불편해소	193
●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으로 군 부패행위 처벌 강화	209
●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재도전 기회 제공 및 지원대상 확대	212
● 성실복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가의 가산	219
●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220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264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육계로 확대	266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	268
● 농업인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로 GAP 활성화	276
● 자연휴양림 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290
● 자연휴양림 보험가입 의무화	291
● 대도시 지역 내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완화	292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 신설	293
● 산림치유지도사 활동범위 확대	294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295
●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302
●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기준 완화	303
● 배타적경제수역 입어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시범실시	316

● '15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월

●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3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5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7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1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12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3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4
●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15
●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16
●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17
● 자녀장려세제 도입	18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20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21
●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23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대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을 상향 조정	24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25
●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26
● 역외탈세 방지 강화	28
●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29
●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	30



●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31
●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32
● 계량 질서를 바로잡아 국민 소비생활 보호	39
●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대상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을 추가	41
●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높아진다	43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45
●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47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250원→300원)	51
● 도로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52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53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54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보고·등록·신고 등의 의무 이행 필요	55
●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7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58
● 지진통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시행	63
● 통합 전세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70
●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72
●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완화	84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92
●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94
●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96
●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97
●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기관의 자격 구체화 시행	98
●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100
●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103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108
● 3대 비급여 개선	109
●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112
●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115

●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20
● 여성장애인에게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121
●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122
●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	124
●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125
●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	126
●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	128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129
● 기업 기부채납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1
●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확대 지원	134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136
●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137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 및 사업 확대	139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연중 상시 운영	143
●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	144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실시	147
●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149
●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시설 신규 지원	150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등 피해자 지원확대	152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153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154
●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 방지	162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 교복은 학교에서, 학부모는 부담 경감! -	166
● 최저임금액 인상	167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168
●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누구나 원하고 필요한 직업훈련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업간 칸막이 제거	170
●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대상 확대 및 내일배움카드제로 참여방식 일원화	17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172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73



●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176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179
● '1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및 적용단가 변경	180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을 건설업까지 확대	181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7급 공무원 공채시험까지 확대	183
●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185
●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189
●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190
●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선발대상 확대	195
● 군인 진급 또는 전역 시 범죄경력조회 법적 근거 마련	197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적용기준 완화	198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기준 개선	200
●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201
● 예비군 일반훈련 입소 허용시간 변경	202
● 예비군 일반훈련 시 M16소총 사용	203
● 병 봉급 인상	204
●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강화	205
● 국산 SW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210
● 저가낙찰 방지 및 기술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한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211
● 306보충대 해체 후, 사단 직접 입영	215
●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216
●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	217
●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218
● 장애인·노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지 조성 시범 사업의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향유권 보장	228
●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으로 등급제도 신뢰성 향상	229
●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토대 구축	230
● 궁·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	231
● 전국적으로 EBS 무료 교육채널 1개 시범 도입·운영	232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대상	237

●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및 중소기업 범위 확대적용	238
● 공개SW R&D 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	240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252
● 발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254
●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255
●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256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258
● 쌀 관세화 시행	259
●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260
●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 확대	261
●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 지원	265
●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269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완화	270
●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각화	273
●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전망 대회 개최	274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275
●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	280
● 우드그랩 품셈 반영	285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286
●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	287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 완화	297
● 원목 표고자목 구입비용 지원	298
●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확대	299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및 조경수 관정시설 보조율 조정	300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활용 확대	306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공동사업 지원기준 강화	307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1%→0.5%)	309
●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	310
● 수산자원보호와 농어가 소득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313
● 선박운항의 필수품, 해도 판매가격 인상	317



2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117
-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123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중소기업 근속장려금) 174
- 수도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2015년 2월
남양주 보훈요양원 개원 191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214
- 스포츠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추진 224
- 창조관광사업을 관광 창업 지원에서 유망 관광사업체의 맞춤형 성장 사다리로
확대 개편 226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257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262

3월

-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48
-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50
- 초단기예보 및 단기(동네)예보 기간 연장 64
-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 74
- 파독(派獨) 근로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75
-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111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132
-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133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 146
-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도입 및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156
-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157
- 보험모집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158

● 피보험자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제한	159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160
● 단체생명보험의 수익자는 가족으로	161
●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의지대로	164
● 일학습병행제 참여대상을 고교 재학생 단계로 확대	159
● K-MOVE 센터 추가 설치 등	175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실시	235
●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본격 지원	241
● 2015년 新 학기부터 150여명 규모로 ICT 학점이수인턴제 실시	244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245
●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250
●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안전·화재)가입 지원 확대	251
●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	267
● 對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	272
● 연안어선의 선복량 한계 상향조정	311
●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상향	312

4월

●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116
●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신설,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141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최초 시행	145
● 5급 공채공무원의 중위 임관제도 보완	194
● 지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해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	208
●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233
● 웹하드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234
● 대학의 연구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간접비 산출방식 개선	243
●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246
●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279
● 현장 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281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시행 314
- 국립해양박물관이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 318

5월

-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9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22
-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 구축 61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A형간염 추가) 105
- 국가유공자, 보호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118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본격 추진 142

6월

-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 40
-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전국 확대 66
-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77
-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78
- 국가공간정보의 제공대상 범위확대 79
-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본격 지원 91
-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99
-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 222
-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가등기(附記登記) 시행 247
-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강화 지원 249
- ‘농업경영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수입(收入) 보장보험이 도입됩니다. ... 253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으로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 강화 ... 277

7월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규제 완화 35

-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68
-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107
-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110
- 친(親)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127
-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지원 135
-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138
-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인상 188

9월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151

10월

-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06

12월

- 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37

●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5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27
-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33
- 특허청고시 상품명칭으로 출원한 경우 상표 출원수수료 할인 42
- 여름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이안류 발생 예측정보 대상
해수욕장 확대 62
- 총자외선 지수 대국민 서비스 실시 65
- 기후변화 원인물질,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제공 67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	76
● 부동산 중개보수 효율 개선	82
●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횟수를 확대조정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을 완화 ...	87
●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내 융·복합개발 촉진	88
●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운영	9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13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119
●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	163
●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177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178
● 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 규제 완화·폐지	186
●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실종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체계 출범	187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192
● 장병 전투임무수행 및 복무여건 향상을 위한 장병 보급품 보급 확대	206
●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 적용	213
● 재난사고·학교/가정폭력 피해자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221
●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225
●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운영	236
● 교육·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식품인력양성	271
● 친환경농업직불금(유기) 3년간 추가 지급으로 유기 인증 농가의 소득 보장 확대	278
● 산림탄소모아(산림탄소등록부) 시스템 운영	282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규제 개선	283
● 국유림 대부(사용)료 부담 완화	288
● 공·사유림 교환제도 개선	289
●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296
● 정원 정책 신설	301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304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연장	305

C CONTENT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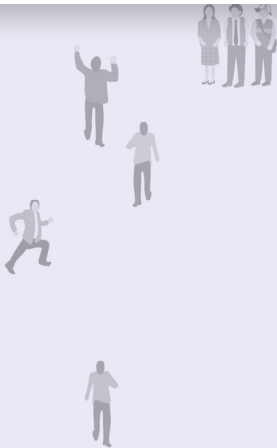
● 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이중규제 개선	308
●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이 쉬워집니다	315

●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6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유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9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제	3
2.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 관세청	35
3. 환경부 · 기상청 · 국토교통부	45
4.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법무부 · 교육부	103
5. 고용노동부	167
6. 인사혁신처 · 행정자치부 · 경찰청	183
7. 국가보훈처 · 국방부 · 방위사업청 · 병무청	189
8.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221
9.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해양수산부	247

01

세제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1)

-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제외)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 추진배경 :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을 과세대상에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된 작물이 과세대상이나,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재배업 관련 작물은 과세 제외

구 분		세분류	세세분류
작 물 재 배 업	과세제외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음료용 및 향신용 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시설작물재배업 ※시설: 움막,온실,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 특수 고정시설	콩나물재배업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재배업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 시행일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1)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또한,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종합과세)하였으나
 -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추진배경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 주요내용

-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 '14~'16년 소득분 비과세
 - '17년 이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분리과세 방법

- 필요경비율 60%
-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 *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단일세율 14%
-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 시행일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1)

■ 다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 ②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됩니다.

- 위 ①의 사업자: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위 ②의 사업자: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를 자진 발급하는 경우 '15.1.1.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추진배경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다음의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진발급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
- 시 행 일 : 2015.1.1.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1)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자는 '15.4.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 '15.5.1. 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추진배경 : 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다음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전세버스 운송업
 - 장의관련 서비스업
- 시 행 일 : 2015.5.1.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2)

■ '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고, 공제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종전 월세지급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에서 월세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전세 → 월세 전환에 따른 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종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중산·서민층 월세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종전 : 월세지급액의 60%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 개정 :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공제대상 확대
 - 종전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개정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시 행 일 : 2014.1.1. 이후 지급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2)

-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6.12.31.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소비심리의 개선을 위해 작년보다 늘어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14.7~’15.6월 1년간 지출분)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추진배경 :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
- 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 '16.12.31까지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30%→40%)
 -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13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 시 행 일 : 2014.7.1. 이후 지출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2)

■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내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으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 한도 확대

■ 추진배경 : 가계부채 구조개선

■ 주요내용

- 공제대상 차입금 추가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공제한도 1,800만원)
 -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공제한도 300만원)

■ 시 행 일 :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2)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한도없이 적용됩니다.

- 종전 : 한도 미적용(본인·장애인·65세이상 노인 의료비)
- 개정 : 난임시술비도 한도 미적용 의료비에 추가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추진배경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지원

■ 주요내용

- ① 공제방식
 -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② 한도 미적용 의료비
 - 현행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 개정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추가
- ③ 700만원 한도 적용 의료비
 -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시 행 일 : 2015.1.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2)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 제도의 적용기한이 2년(2016.12.31) 연장되었습니다.
-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본 제도의 적용기한(2016.12.31)을 삭제하여 안정적으로 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 주요내용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 적용
 -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 헤드쿼터 인증기업 : 적용기한 폐지
 - 그 밖의 기업 : 2016.12.31.(2년 연장)
- 시 행 일 : 2015.1.1.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2)

■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됩니다.

- (현행)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 감면
- (개정) 감면기간 연장
 - ① 취업일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감면
 - ② ① 외의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 감면기간 적용사례 〉

구분	군 입대 전 감면기간	군복무기간	복직 후 감면기간	총감면기간
①의 경우	2년 10개월	1년 10개월	2년	4년 10개월
②의 경우	6개월	1년 10개월	2년 8개월	3년 2개월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취업청년 장기근속 장려
- 주요내용
 - 종전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개정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연장(3년→5년)
- 시 행 일 : 2015.1.1.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2)

■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신규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종전 : 신규사업장의 경우 반기납부 적용 불가
- 개정 : 신규사업자 중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도 반기납부 신청 가능

〈 적용 사례 〉

(현행)	'14년 상반기 창업	'15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가능('15.6월 신청)
	'14년 하반기 창업	'15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가능('15.6월 신청)
(개정)	'14년 상반기 창업	'14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가능('14.6월 신청)
	'14년 하반기 창업	'15년 상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가능('14.12월 신청)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 추진배경 : 납세자 편의제고
- 주요내용
 - 종전 : 신규사업장의 경우 반기납부 적용 불가
 - 개정 :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신규사업자도 반기납부 신청 가능
- 시 행 일 : 영 시행일 이후 반기납부 신청분부터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3)

- 퇴직연금에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하여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추진배경 : 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납입금액 기준으로 4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 금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적용 방법

납입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 세액공제 (300만원)	총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세액공제액 (공제율 12%)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	700만원	-	400만원	300만원	700만원	84만원
200만원	5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700만원	84만원
4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84만원
5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200만원	600만원	72만원
7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48만원

- 시 행 일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자녀장려세제 도입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4)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 자녀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총소득요건 이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1~5.31)에 자녀장려금 신청서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요건 : 1세대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하를 보유할 것

재산요건 : 가구원(가구주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은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안

자녀장려세제 도입

■ 추진배경 :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

■ 주요내용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 지급
 -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되, 부부의 총급여액등의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
 -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과 동일
 - 부양자녀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신청, 결정, 환급의 제한 등은 근로장려금의 해당 규정을 준용
-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산기준 1억원~1억4천만원까지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

■ 시 행 일 : 2015.1.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4)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며, 전문직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210만원(홀벌이 가구 170만원, 단독가구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매년 5월 중 신청하면 수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9월 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사업자 확대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안
-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 등
- 주요내용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사업자로 확대(전문직 사업자 및 배우자 제외)
 - * 당초 계획을 법령에 명확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
 - 영세자영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시 행 일 : 2015.1.1.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4)

■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중 주택 가격기준과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가격기준을 폐지하여 주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재산기준은 종전에는 가구원(가구주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저소득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주택·재산기준 완화
 - 1세대가 무주택 또는 1주택(주택 가격기준 삭제)을 소유할 것
 -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의 50%만 지급

■ 시 행 일 : 2015.1.1.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4)

- 근로장려금을 신청기간(5.1~5.31)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11월까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10%만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 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 보호
- 주요내용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1~5.31)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종전 3개월) 이내
- 시 행 일 : 2015.5.1.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221)

■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시 추가과세 적용이 1년 유예됩니다.

-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기본세율 + 10%p) 적용을 1년 유예하여 '15년에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됩니다.
-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양도차익의 10%) 적용을 1년 유예하여 2015년에도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적용 1년 유예

■ 추진배경 :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 (세율) 기본세율(6~38%)+10%p • (시행시기) '15.1.1. 이후 시행 ('14년 추가과세 유예)	■ 추가과세 1년 유예 • (좌 동) • '16.1.1. 이후 시행
■ 법인보유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 (세율) 법인세율+10%p • (시행시기) '14.1.1. 이후 시행* * 단 중소기업은 '14년 추가과세 유예	■ 중소기업 추가과세 1년 유예 • (좌 동) • 중소기업 1년 추가 유예 ('16.1.1. 이후 시행)

■ 시 행 일 :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대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을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221)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보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로서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조특법 § 77의2) 대신 감면 (조특법 § 77)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보상과 동일한 2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감면을 상향 조정

- 추진배경 : 대토보상은 환금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금보상(15%)의 경우보다 높은 채권보상(20%)에 준하는 감면율을 적용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 대토보상시 과세이연 ※ 과세이연을 받지 않고 양도세 신고 납부시 집행상 현금보상에 준하는 15% 감면을 적용 중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을 인상 ○ 15% ⇒ 20% * 채권보상시 감면을 20%

- 시 행 일 :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221)

- 거주자가 '15.1.1.~'17.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됩니다.
-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변경*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완화 : (10년) → (8년)
 - 10년 이상 임대시 : 장특공제율 60%
 - 8년 이상 임대시 : 장특공제율 50%(신설)
-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이 허용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시 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추진배경 : 민간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① '15년부터 3년간 주택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 활용후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② 임대기간별로 준공공임대주택의 장특공제율 차등 적용
 - 현행 : 10년 이상 임대시 60% 장특공제율
 - 개정 : 8년 이상 임대시 50% 장특공제율
 - ③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호나 등록시 기존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
- 시 행 일 : 2015.1.1 이후 취득·양도분부터 적용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221)

- '15.1.1. 현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합니다.
 - (주택 규모)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35㎡ 이하
 - (임대 요건) '15.1.1.~'1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
- 동 특례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

- 추진배경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 주요내용
 - '15.1.1.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시 취득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공제
- 시 행 일 : 2015.1.1 이후 취득·양도분부터 적용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231)

■ 음식점업 등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혜택이 확대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해 매출액 규모별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1억원 이하	60% (‘14.12.31까지 적용)	1억원 이하	60%	50%
1억원~2억원	50%	1억원~2억원	55%	
2억원 초과	40%	2억원 초과	45%	40%

-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2기분 공제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확대

■ 추진배경 : 음식업자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①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확대
 - 현행 : 매출액 1억원 이하 60%(‘14.12.31까지), 1억원~2억원 50%, 2억원 초과 40%
 - 개정 : 매출액 1억원 이하 60%(‘15.12.31까지), 1억원~2억원 55%, 2억원 초과 45%
- ② 농수산물 매입액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제조업에 대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요건 완화

■ 시 행 일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잠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



역외탈세 방지 강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331)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의 판정기준,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와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 →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 관계자인 경우에 한함)하였습니다.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인상하였습니다.
 - 국세부과제척기간 : 10년 → 15년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40% → 60%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되, 수정·기한후신고시 과태료 감면을 확대(감면율 10~50%→10~70%)하였습니다.
 - 벌금 : 미신고금액(50억원 초과시)의 10% 이하 → 20% 이하
 - 과태료 : 미신고금액의 4~10% → 10~2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역외탈세 방지 강화

- 추진배경 : 역외탈세 방지 강화
- 주요내용
 -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국외증여 과세 및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 등
- 시 행 일 : 2015.1.1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 해외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한도의 상향조정('14.9.5. \$400 → \$600) 이후 면세한도를 초과한 휴대품의 성실신고를 위해 통관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경감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15만원 한도)
 - 한편,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반입하였는데도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였습니다.
 -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 : 현행 30% → 40%로 상향조정
 -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60%의 가산세율을 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 대기업에 비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이 하향 조정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현행 물품과세가격의 60%에서 물품과세가격의 40%로 1/3 줄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현행 : (대기업) 물품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 물품과세가격의 60%
- 개정 : (대기업) 현행 유지
(중소기업) 물품과세가격의 4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

- 추진배경 : 중소기업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 하향 조정
 - 현행 : 물품과세가격의 60%
 - 개정 : 물품과세가격의 40%
- 시 행 일 : 2015.1.1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관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관세법 상 정부의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데 반해, 납세자의 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상황을 개선한 것입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 044-215-4491)

-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개편하였습니다.
- 법령체계를 협정관세 적용절차의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조문을 세분화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원산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관세특례법 전면개정

■ 추진배경 :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FTA 이행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증진 및 FTA 활용률 제고

■ 주요내용

- 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 정비
 - FTA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중심으로 법조문 재구성(36개조문→ 46개 조문)
 -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조문으로 세분화(예: 협정관세 적용신청 등 → 협정 관세 사전신청, 사후신청)
 - 모든 FTA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보완(예: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원산지 증명 원칙)
- ②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과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시 협정관세 적용
 - 원산지 조사시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 협정관세 적용배제시 가산세 징수·감면 등의 근거 신설
- ③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의 법률 근거 명확화
 - 원산지를 자율증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및 해제 근거 신설
 - 원산지증빙서류를 반복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자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는 근거 명확화
 -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규정 명확화

■ 시 행 일 : 2015.5.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02 산업·특허·관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규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 044-203-4613)

■ 중소기업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3~6개월 단축됩니다.

- 2015년 7월부터는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되어, 30% 범위 내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행 자격요건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투자적정등급,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등), 자격요건자들이 100% 출자한 SPC

- 또한,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알림·뉴스>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개요

■ 주요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
- ② 개발계획 변경 관련 이중절차 개선
 -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해당법률에 따라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상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

■ 시행일

- ①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 2015년 7월
- ② 개발계획 변경 관련 이중절차 개선 : 2015 1월

■ 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044-203-5124)

- '15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보다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처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에너지복지 사업은 에너지효율 개선, 시설보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통해 난방비를 직접 보조해주는 지원을 강화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노인·아동·장애, 98만 가구)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동절기('15.12~'16.2)에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 가능하며,
 - 가구원수,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최대 16.5만원 ~ 최소 5.4만원(15단계)으로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너지법 및 에너지법 시행령

2015년도 에너지바우처 도입

- 추진배경 : 노인·아동·장애 등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노인·아동·장애, 98만 가구)
 - 지원기간 : 2015년 12월 ~ 2016년 2월(동절기 3개월간)
 - 지원규모 : 가구원수,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최대 16.5만원~최소 5.4만원(15단계)으로 차등 지급
- 시행일 : 2015년 하반기(신청접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044-203-4431)

- 지금까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지식산업 13종만 입주 가능하였으나,
 - 2014년 8월부터 7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면서, 총 20종의 지식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①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②무형재산권 임대업, ③시장 및 여론조사업, ④물품감정·계량 및 견본추출업, ⑤환경정화 및 복원업, ⑥음악 및 기타오디오물 출판업, ⑦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제조업과의 융합·연계 효과가 높은 지식산업의 입주를 허용하면 산업단지 내 업종이 고도화되고 기업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법령검색)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제14호~제20호)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

- 추진배경 : 제조업과의 융합·연계효과가 높은 지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확대
- 주요내용
 - ① 지식산업 7종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여, 입주가능 지식산업을 13종에서 20종으로 확대
- 시행일 : 2014년 8월 6일



계량 질서를 바로잡아 국민 소비생활 보호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 043-870-5516)

■ 2015년 1월 1일부터 불법 계량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 **(계량기 수거)** 계량기의 허용오차, 사용자의 안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업체는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수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과징금)** 계량기를 불법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위반업소명을 공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포장 상품의 내용량을 의무적으로 표시(정량표시상품)해야 할 품목을 확대합니다.

- 정량표시 대상품목을 식료품 위주의 26종에서 물티슈, 화장지 등 생활용품을 포함하여 **27종으로 확대**합니다.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법령검색)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계량기 관리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불법·불량계량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계량제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①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법정관리 계량기·정량표시상품 품목 조정
- ②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계량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계량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③ 소비자 권익보호가 가능하도록 엄정한 사후관리 및 처벌기준 강화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 043-870-5453)

- 앞으로, 모든 어린이제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왔으나,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자체 또는 제3자의 시험을 통해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어린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하며, 개별 안전기준이 제정되어있는 고위험 제품은 개별안전기준에도 적합해야 함
- 또한,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한 사업자는 사고사실을 알게 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내용을 보고해야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제품의 판매중개, 수입·구매대행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알림마당>설명회자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취약하므로, 일반 공산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
- 주요내용
 - ① 안전관리대상 확대, 모든 어린이제품에 적용되는 공통 안전기준 운영
 - ② 사고보고의무 부과,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 처벌기준 강화 등
- 시행일 : 2015년 6월 4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대상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을 추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8353)

- 창작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디자인상품을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으로 선정된 상품을 디자인 우선심사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 이미 실시 중인 상품에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게 되므로 안정된 기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우수디자인 선정상품임을 근거로 디자인의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디자인이 판매 또는 전시 등을 통해 공개된 디자인일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2015년도 디자인 우선심사의 확대 대상

- 추진배경 :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상품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 지원
- 주요내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으로 선정된 상품을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 특허청고시 상품명칭으로 출원한 경우 상표 출원수수료 할인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042-481-7418)

- 특허청에서 매년 고시한 상품명칭만으로 선택하여 전자출원하는 경우 기존 전자출원 수수료 6만2천원보다 저렴한 5만6천원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출원인이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출원하게 된 경우 특허청에서는 상품명칭 인정여부 및 정확한 상품 류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체DB로 자동분류하였고 자동분류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는 외부기관에 분류의뢰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출원인이 정확한 상품명칭만으로 선택해서 출원하여 자동분류되는 경우 분류의뢰 필요성이 없어져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절감됩니다.
- 따라서 절감된 행정비용혜택을 출원인에게 되돌려주고자 기존 전자출원수수료보다 약 10% 저렴한 5만6천원 수수료체계를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출원인의 상품 선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시상품명칭 의 개수도 기존 1만5천개에서 4만 5천개로 확대됩니다.

2015년도 저렴한 상표출원수수료 대상 항목

- 추진배경 : 특허청고시 상품명칭으로 전자출원한 경우 기존 전자출원 수수료 보다 저렴한 출원 수수료 적용

■ 주요내용

- ① 상표 전자출원수수료 인하(62천원 → 56천원)

■ 시행일 : 2015년 1월(잠정, 개정안 법제처 심의중)

※ 입법 진행중, 예산 심의중 등의 사유로 시행여부, 시행일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 표시와 함께 진행상황 기재 요망

■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높아진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 042-481-7834)

- 2015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인상됩니다.

- (현재) 납부세액의 30% → (향후) 납부세액의 40%

- 이는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 상향(미화 400달러 → 600달러)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과세대상물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보도자료>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높아진다

■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율 인상

- 추진배경 :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 유도

- 주요내용

- ①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율 30%에서 40%로 인상
- ② 반복적인 신고 불이행자(2년내 2회이상) : 납부할 세액의 60%

- 시행일 : ① 2015. 1. 1. ② 관세법 시행령 개정시 적용

03

환경 · 기상 · 국토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201-7066)

■ 인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입지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폐수배출시설에서 납, 카드뮴 등의 특정물질을 먹는물 기준치보다 낮게 방류하는 경우에도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등의 지역에서는 입지를 아예 원천금지하였으나,

*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그 상류지역

- 앞으로는 먹는물 기준치 미만으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하고 그 이상만을 배출하는 시설만 입지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규제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합리화 입법예고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추진배경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및 설치제한지역 내 입지를 제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먹는물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시행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14.11.24)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 고시 6개('15. 1월 말)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60)

■ 환경부는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용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를 시행(’15.1.1)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어야 할 환경유해인자를 지정하여 준수여부를 사후적으로 단속하였으나,

- 2015년 1월1일부터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4종)*가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를 한 경우 해당 기업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 동 제도로 국민의 어린이용품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할 수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 > ‘어린이 활동공간·용품 유해물질 사전에 관리한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로 국민의 선택권 및 알권리 보장

■ 주요내용

- ① 어린이용품 내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 표시
- ②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한 벌칙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44-201-7177)

■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에 대한 면책범위가 확대되고, 과도한 정화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계획입니다.

- 기존 토양법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한 오염발생의 경우에만 정화책임이 면책되었으나, 2015년 3월 25일 개정 토양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 토양법 시행일('96.1.6) 이전 토지를 양수받은 자는 정화책임을 면책받게 되는 등 면책범위가 확대됩니다.
- 또한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해당 토지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정화책임자는 국가에 대하여 정화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수의 정화책임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설치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화책임 우선순위 : ①토양오염 직접원인자 ②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유·운영자 ③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소유자 ④토양오염 발생토지 현재 소유·점유자 ⑤토양오염 발생토지 과거 소유자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 > 환경부,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 합리성 강화한다' 시행령 입법예고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 추진배경 : 정화책임 면책범위 확대 및 일정요건하 국가의 비용지원,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합리적인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 구축

■ 주요내용

- ① 오염토지 소유자의 정화책임 면제
 - '96.1.6 토양법 시행 이전 양도 등의 사유로 해당토지를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 토양법 시행이전 토지를 양수한 경우
- ② 과도한 정화비용 발생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 오염유발자 또는 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 : 정화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시설의 소유·점유·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초과
 - '02년 이전 토지양수자 : 정화비용이 해당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02년 이후 토지양수자 : 정화비용이 해당 토지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③ 환경부에 설치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장은 위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토양환경분야의 전문가(10년 이상 종사자, 교수, 변호사, 관계공무원 등)로 구성

■ 시행일 : 2015년 3월 25일(법제처 심사 중)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환경부 유역총량과 (☎ 044-201-7021)

- 고농도·난분해성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 되었습니다.
- 기존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농협조합도 할 수 있게**하여, 축산·경종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앞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부과되며, 기존의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3~5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가축분뇨 관리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축사인근 토지에 출입**하여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준이 모호한 채 방치되던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액체비료)**에 대한 **품질·검사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추진배경 : 생활악취와 수질 오염부하량이 큰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 기여
- 주요내용
 -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주체 확대**,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실태조사 실시, 가축분뇨 퇴액비화 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15년 3월 25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250원→300원)

환경부 자연정책과 (☎ 044-201-7224)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2001년 도입 당시의 부과단가(단위면적당 250원)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생태계의 훼손을 막기 위한 유인수단으로 한계가 있는 바,
 -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과단가를 단위면적당 300원으로 상향조정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 추진배경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01년 도입 당시의 부과단가(단위면적당 250원)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생태계의 훼손을 막기 위한 유인수단으로 한계
- 주요내용
 - ① 개발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단가를 250원/㎡→300원/㎡로 소폭 상향조정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도로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2)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 저감’을 위해서 도로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환경부는 인체 위해성이 크고 오존(O₃)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해 건축, 자동차보수, 도로표지판 등에 사용되는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 2015년 1월 1일부터는 선박용, 철구조물(강교)용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자에게도 함유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기존에 설정한 함유기준도 최대 50%까지 강화·시행하게 됩니다.

도로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 추진배경 : 인체 위해성이 크고 오존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량 저감을 위해 도로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
- 주요내용
 - ① 선박용, 철구조물(강교)용 도료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설정
 - ② 건축용·자동차보수용·도로표지판용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최대 50%까지 강화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11)

■ 환경부는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일러, 도장시설, 탄화시설 등을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포함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도장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간당 증발량이 2ton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이상인 보일러

** 용적이 5㎡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모두 해당되며, 특히 도장작업 전 페인트를 벗겨내는 자동차 정비업의 샌딩시설도 포함

- 또한, 도시지역에 입지한 일정규모 이상의 숯가마 및 찜질방*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용적 30㎡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150㎡이상인 전통식 숯가마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 추진배경 : 주거지역에 인접한 대기배출 오염원 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 사용 보일러, 도장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
- ② 일정규모 이상의 숯가마 및 찜질방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 02-6943-1305)

- 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14.12월)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동 제도의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최소화 및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기대합니다.
 -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비용효과적이며, 감축 수단의 유연성을 제고합니다.
 - 우리나라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및 저탄소산업 육성에 기여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정책이슈>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게시판

배출권거래제 시행

- 추진배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까지 BAU대비 30%감축)의 비용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 결정
- 주요내용
 - ① 할당된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
 - ② 여분 또는 부족 배출권을 다른 사업장과 거래
 - ③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용효과적 달성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보고·등록·신고 등의 의무 이행 필요

환경부 화학물질과 (☎ 044-201-6771)

■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기반하여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최초 보고는 '16.6.30일까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위반시 제조·수입 불가, 판매중지 가능,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마다 고시('15년 상반기중 최초 고시 예정)되며, **3년간 등록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 전**(총량 연간 1톤 초과 확인시) **또는 다음해 4월30일**(총량 확인 곤란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는 위해우려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려면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15년 상반기 내 고시 예정(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12종 +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3종)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 인체·환경에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함유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 주요내용

- ① 보고제도 신설(모든 신규화학물질, 1톤/년 이상 기존화학물질 양·용도 현황 보고)
- ② 등록대상 확대(0.1톤/년 신규화학물질 → 모든 신규화학물질, 1톤/년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
- ③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도시)
- ④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신설(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 1톤/년 초과)
- 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신설('15년 상반기 내 고시 예정)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34)

- 환경부는 “국민 안전”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화학물질 유통·관리 체계를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15. 1. 1)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유독물은 지자체, 취급제한물질 및 수입화학물질은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환경관서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합니다.
 - 또한,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검토하여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그간 공무원의 육안검사에 의존하던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는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변경하여 **2중·3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 사고의 우려가 큰 사고대비물질(69종)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 사회에 고지**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화학물질 사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개정 법률 시행으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사용**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알림/홍보>보도·해명>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추진배경 : 화학물질 유통·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
- 주요내용
 - ① 화학물질관리체계 일원화(지자체, 지방환경관서→지방환경관서)
 - ② 취급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장외영향평가 제도 도입
 - ③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는 전문기관이 수행
 - ④ 사고대비를 위한 위해관리계획 제도 시행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27)

- 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소비자가 2015.1.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중 CO₂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게 되며,
 - 종전처럼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까지 그대로 받으시면서 일반자동차에 비해 연료비도 약 30%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구매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으로 신청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헬프데스크 1661-097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인 친환경차의 기술향상과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 > 환경부,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제도 시행’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20년 BAU 대비 34.3%인 34백만톤) 및 친환경차 산업 육성을 위해 '15년부터 친환경차(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지급대상) CO₂ 배출량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한 구매자('15.1.1일 출고분부터)

* 출고일은 「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상의 양도 연월일을 말함

② (지원금액) 대당 100만원 국고보조금 지급

③ (신청) 구매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방문, 우편 신청 가능)

* 첨부서류 : 자동차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구매자 본의명의 통장 사본(법인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 도모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 02-2181-0850)

■ 규제완화·개선 및 창조경제 실현 등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기상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을 개정('14.11.19 시행)하였습니다.

- 이번 시행령 주요개정내용은 기상사업(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등록 인력기준인 상근 기상인력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여 기상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 이를 통하여 그동안 기상장비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위축되었던 기상서비스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에게 맞춤형 기상예보 및 기상서비스 지원이 다양해집니다.

☞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소관법령>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 개정사유 : 기상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기상서비스 분야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①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

-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상근 기상인력기준 축소(기존 2명 → 1명)

■ 시행일 : 2014년 11월 19일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 구축

기상청 슈퍼컴퓨터운영과 (☎ 043-711-0230)

- 급변하는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국지적 위험기상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수치예측모델 해상도 향상에 필요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현재 사용 중인 기상청 슈퍼컴퓨터(3호기)를 대체하는 슈퍼컴퓨터 4호기 초기분(우리)이 2015년 5월부터 정식 가동하게 됩니다.
 - 슈퍼컴퓨터(우리)에서 가동할 수치예측모델을 2015년 1월에 설치 후, 5월부터 현재 보다 약 2배 이상 향상된 수치예측모델(25km→17km)의 시험운영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2016년 슈퍼컴퓨터(4호기) 최종분 가동으로 위험기상의 사전 대응능력과 강수 정량예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2016년부터 수평분해능 17km의 전 지구 수치예보모델 운영과 호우특보 선행시간 향상에 필요한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우리 : 대국민 공모를 거쳐 당선된 슈퍼컴퓨터 4호기(초기분) 명칭

☞ (참고) 기상청부 홈페이지>행정과정책>보도자료>기상용 슈퍼컴퓨터(4호기) 낙찰예정사 선정

여름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이안류 발생 예측정보 대상 해수욕장 확대

기상청 해양기상과 (☎ 02-2181-0742)

- 하계 휴가철 해수욕객들의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이안류 발생 예측정보 대상 해수욕장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안류(Rip Current)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밀려든 해수가 좁은 폭을 통하여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으로, 빠른 속도(초속 2~3m/s)로 피서객을 휩쓸어가기 때문에 여름철 안전사고의 주요 요인

- 2011년부터 기상청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이안류의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제주 중문과 양양 낙산을 추가하여 총 3군데 해수욕장에 대한 이안류 예측정보를 86회 제공함으로써 유관기관의 구조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안류 발생건수가 2009~2014년까지 67건이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 2015년부터는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이안류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대상 해수욕장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날씨>날씨영상>일기도>해상예상일기도>해양지수정보>이안류 예측정보
기상청 홈페이지>행정과 정책>보도자료>해운대 해수욕장, 이번 여름 이안류 걱정 뚫!
(2011.7)

2015년도 이안류 발생 예측정보 제공 해수욕장 확대

- 추진배경 : 해수욕객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이안류 예측정보 제공 지역 추가
- 주요내용
 - ① 이안류 예측 해수욕장 확대(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 시행일 : 2015년 6월(잠정)

지진통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시행

기상청 지진정책과 (☎ 02-2181-0768)

- 예측 불가능한 지진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정보 제공을 위해 기상청은 2015년부터 지진발생 후 50초 이내에 지진정보를 통보하는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 지진속보는 120초이내, 지진통보는 300초이내에 발표되어 지진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지진속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지진조기경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2015년 1월에는 지진재난대응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먼저 시행하고,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국민들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또한, 2020년까지 지진조기경보 통보시간을 10초 이내로 단계적으로 단축시키고, 자동자막방송, 재난기관 재해대응시스템 연계를 통한 재난대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진조기경보서비스는 지진재해 경감과 대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지진관측법 제정공포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시행

- 추진배경 : 지진 발생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국민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진정보 제공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필요
- 주요내용
 - ① 지진조기경보 통보(현재 지진속보 120초 → 지진조기경보 50초)
 - ② 지진조기경보 재난기관 직접 전파 시행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

초단기예보 및 단기(동네)예보 기간 연장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510)

- 기상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초단기예보와 단기(동네)예보의 기간 연장을 통해 이음새 없는 날씨예보를 제공합니다.
- 단시간에 발생했다 소멸하는 기상현상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1시간 단위로 최대 3시간 후까지의 날씨예보를 1시간마다 초단기예보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2015년부터는 초단기예보의 제공기간을 최대 4시간까지 연장하고, 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 할 계획입니다.
- 전국 읍·면·동 단위로 12가지 기상요소에 대한 예측정보로 국민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단기(동네)예보는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날씨를 3시간 단위로, 3시간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 2015년부터는 국민들이 상세한 모레까지의 날씨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보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동네예보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 추진배경 : 예보기간 연장으로 이음새 없는 날씨예보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편의 제고 및 신속한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 주요내용
 - ① 초단기예보를 기존 3시간에서 4시간까지 연장하여 발표
 - ② 단기예보 예보기간을 기존 오늘~내일에서 오늘~모레까지 연장하여 발표
- 시행일 : 2015년 3월(2014년 3월부터 대국민 시범서비스 중)*
 - ※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 중



총자외선 지수 대국민 서비스 실시

기후변화감시센터 (☎ 041-674-6420)

■ 최근 피부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에 따라 피부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총자외선 지수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백내장, 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자외선B의 자외선 지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피부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A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를 개발하였고,

- 2015년부터는 WMO/WHO* 자외선지수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외선A와 B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를 국민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세계기상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 세계보건기구

- 또한, 2015년 8월에는 태양의 비타민D 생성과 자외선 유해정도, 노출시간 등을 지수로 환산하여 제공하는 **건강자외선지수**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료경로)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limate.go.kr) >
기후변화감시 > 자외선지수(예정)

2015년도 총자외선 지수 제공 서비스

- 추진배경 : 최근 피부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
- 주요내용
 - ① 총자외선지수 대국민 서비스(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
- 시행일 : 2015년 3월(잠정)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전국 확대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팀 (☎ 02-2181-0895)

■ 취약계층(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상청은 2011년 서울시 독거노인 대상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2014년에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하여 현재 취약계층 관리자(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국·공립어린이집원장, 장애인시설관리자)에게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6~9월)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12~3월)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오늘과 내일 지수별 최고 예상값이 발송기준 도달시 문자 발송(일 1회/ 08시)

- 수도권지역에 제공되던 생활기상정보 서비스를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전국의 다양한 취약계층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취약계층과 직접 교류하는 관리자를 통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전달 방법 다양화, 수혜 대상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정보소외계층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전국 확대

■ 추진배경 : 취약계층 생활안전 및 건강보호 위해 생활기상정보 제공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전국 확대
 - ('13) 서울시 약 1,500명 → ('14) 인천, 경기지역 약 3,100명 → ('15) 전국

■ 시행일 : 2015년 6월

기후변화 원인물질,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제공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센터 (☎ 042-674-6420)

-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이산화탄소의 일평균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농도는 월평균과 연평균 농도로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 연 1회 제공되었습니다.
- 2015년 2월부터 한반도의 서쪽(안면도) 이산화탄소의 일평균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기후변화 원인물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 또한, 10월부터는 남쪽(제주고산)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확대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제공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료경로)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limate.go.kr) >
기후변화감시(예정)

2015년도 이산화탄소 실시간 농도 제공

-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이해 향상 및 정보 제공
- 주요내용
 - ①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웹페이지 제공(연1회 월, 연평균 → 매일 일평균)
 - ② 이산화탄소 농도 대국민 서비스 확대(한반도 서쪽, 남쪽 관측망)
- 시행일 : 2015년 2월(잠정)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7)

■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합니다.

-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설립되어,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 설립 한세대를 맞아 자산규모가 100조가 넘는 최대 사업성 기금인 주택기금의 기능을 **확대·재정립**하고, **운용체계를 혁신**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의 역할에 더하여 달라지는 **주택도시기금**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①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②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③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개편으로 **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지역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주택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추진배경 : 국민주택기금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 주요내용
 - ①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 ② 도시재생사업에 재정 보조 뿐 아니라, 기금의 금융지원 가능
 - ③ 전문성 있는 기금 전담 운영기관 지정
- 시행일 : 2015.07.01



통합 전세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5)

■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그간 이원화(근로자서민 3.3% 및 저소득가구 2.0%)로 운영되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를 '15.1.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합니다.

- 본 대출은 임차인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 수록 우대)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로 이용가능하고,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표】

임차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7 (1.7)	2.8 (1.8)	2.9 (1.9)
2천 초과~4천만원 이하	2.9 (1.9)	3.0 (2.0)	3.1 (2.1)
4천 초과~5천만원 이하	3.1	3.2	3.3

☞ ()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 특히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p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자체가 소득(최저생계비 2배 이내), 부동산, 자동차 소유 등을 엄격히 따져 추천하던 2.0% 금리의 기존 저소득가구 추천 제도는 폐지

- 이번 조치로 지역별 대출한도도 상향조정되어 소득이 낮은 전세자금 대출계층에 주거 상향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통합 전세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 추진배경 : 버팀목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내년 1. 2일부터 전격 시행

■ 주요내용

- ① 기존 전세대출 제도(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는 폐지되고 버팀목 대출로 통합
- ② 금리를 2.7~3.3%으로 보증금별, 소득별 차등화하여 저소득층 우대
-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 우대금리

■ 시행일 : 2015.01.02

■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주택기금포털 또는 기금취급 6개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12.22일부터 사전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국민주택기금포털 www.nhf.molit.go.kr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5)

■ 정부는 10.30 서민주거비 완화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을 '15.1.2일부터 최초로 실시합니다.

- (대상) ①취업준비생, ②희망키움통장(I,II) 가입자, ③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 허용
- (대출조건)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 고액월세자 제외 : 보증금 1억원, 월세금액도 60만원 이하로 제한

■ 정부는 이번 월세대출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500억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월세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14.12.22부터 **우리은행**에서 사전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주택기금포털 www.nhf.molit.go.kr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추진배경 : 저금리 기조의 확산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심해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15년 한시로 주택기금 월세대출을 시범 실시
- 주요내용
 - 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월세대출 상품 출시
 - ② 2.0% 저금리로 ①취업준비생, ②희망키움통장(I,II)가입자, ③근로장려금수급자 대상
 - ③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 (다만,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 시행일 : 2015.01.02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51)

- 9·1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이 '15년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 현 주택시장은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소되면서 지역별로 수급상황이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기에 도입된 전국적·획일적 청약규제로 국민 불편은 물론 기업활동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 청약제도는 관련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개편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추진배경 : 9·1부동산대책(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

■ 주요내용

〈'15. 3월 이전 시행예정〉

- ①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 ②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③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④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⑤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15. 7.1 시행예정〉

- ⑥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
- ⑦ 청약대상 주택유형 단순화

※ 주택법개정안(9.30 국회제출) 공포후 주택공급규칙 후속 개정추진

파독(派獨) 근로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51)

■ 파독(派獨) 근로자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15년 3월 중 시행됩니다.

- 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가 국내정착을 희망하고 있으나, 고령·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고,
 - 사망·중증장애로 생활이 불안정하기 쉬운 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의 경우에도 주거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파독 간호사·광부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 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5년간 한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파독(派獨) 근로자등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추진배경 : 파독(派獨) 근로자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① 파독(派獨)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 시행일 : 2015. 3월 시행예정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61)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등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 될 예정입니다.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됩니다.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됩니다.
 - **연립·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한이 완화**(4층→5층) 됩니다.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완화

- **추진배경**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등록 관련 규제 완화
 - **주요내용**
 - ①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단축(10년→8년)
 - ②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부여
 - ③ 연립·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한 완화
 - **시행일** : 2014년 3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 다만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7월까지 개정 예정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9)

■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대상가구의 거주형태, 주거비부담 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주거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주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년 4인가구 기준 월 173만원

- 수급대상 가구중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여, 내년 6월 또는 7월 본격 시행

2015년도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

■ 주요내용

- ① 수급대상 확대 : 70만(14년) → 97만 가구(15년)
- ② 월평균 급여액 증가 : 9만(14년) → 11만원(15년)

■ 시행일 : 2015년 6월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044-201-3459)

-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능을 조정합니다.
- 기능조정에 맞게 지적공사의 설치근거·사업범위 등에 관한 규정도 종전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대한지적공사의 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 조정

- 추진배경 :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지적공사의 공적역할을 확대하고 공적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명칭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전환하고 기능을 개편 필요
- 주요내용 : 대한지적공사의 명칭을 국토정보공사로 변경하고 업무범위를 조정
- 시행일 : 2015. 6. 4



국가공간정보의 제공대상 범위확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 044-201-3473)

- '15.6.4부터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가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동안 사전에 등록한 '공간정보사업자'에 한하여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공간정보의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일반국민, 학계 및 연구기관 등도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 공간정보의 검색, 구매(유료정보의 경우), 내려받기(Download)는 국가공간정보센터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www.nsic.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국가공간정보 제공대상 범위확대

- 추진배경 :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개선
- 주요내용
 - ① 공간정보 제공대상을 '공간정보사업자'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로 확대(공간정보 산업 진흥법 개정)
 - ② 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 시행일 : 2015년 6월 4일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 시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6)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할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영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보상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고 있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하고
 -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1천만원 한도)으로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 또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 보상액이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소상공인 휴업보상액, 현재보다 약60% 증가한다

2015년도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 추진배경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① 영업휴업 보상기간 :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 → 4개월로 확대
 - ②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신설) : 휴업보상분의 20%(1천만원 상한)
 -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 5백만 원 → 6백만 원
- 시행일 : 2014년 10월 22일(최초로 보상계획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보상전문기관 확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6)

-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공, 도공, 농어촌공사, 감정원, SH, 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되었으나,
 -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21개 기관으로 늘어납니다.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광역시·도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가능

2015년도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 추진배경 :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한 보상업무의 효율성 확보
- 주요내용
 - ① 보상전문기관 확대 : 현행 8개(LH공사 등) → 21개(부산도시공사 등 13개 추가)
- 시행일 : 2014년 12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3)

■ 주택(매매 6~9억원, 임대차 3~6억원)의 중개보수와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됩니다.

- 주택의 고가구간 기준(매매 6억 →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이 상향되고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됩니다.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금액	요율	금액	요율	
매매	6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이하	
			9억원 이상	0.9%이내 협의	
임대차	3억원 이상	0.8%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이하	
			6억원 이상	0.8%이내 협의	

-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됩니다.

구분	현행 요율	변경요율		비고
	오피스텔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그 외 오피스텔	
매매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0.5%이하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임대차		0.4%이하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부동산 중개보수요율 개선

- 추진배경 : 고가주택 중개보수가 현실에 맞지 않아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 확산
- 주요내용
 - ① 주택(매매 6~9억원, 임대차 3~6억원)의 중개보수요율 신설
 - ②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신설
- 시행일
 - ① 주택의 중개보수는 각 시·도별 조례 개정 중(잠정 '15.2~6월 공포 예정)
 - ②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중(잠정 '14.12월~'15.1월 공포 예정)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완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5)

■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임

- 공공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 시설의 범위 구체화, 토지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인정확대 (7개→14개),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 등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 공포 시행('14.12월말)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2015년도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 부담완화

■ 추진배경 :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이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

■ 주요내용

- ①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학교용지부담금, GB보전부담금 등 타 부담금 비용인정 확대 (7→14개), 진입로 개설비용 인정,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부과개시시점 이전 투입된 용역비, 준공후 납부한 지목변경취득세 인정)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 한곳에... ‘건설워크넷’ 운영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기술자들의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일부 건설관련 업체에서는 인력정보 부족으로 특정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협회별*로 분산된 기술인력정보를 하나로 모은 기술자 경력 디비(DB)**와 건설관련 업체의 구인정보를 연계한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내에 구축하였습니다.

* 경력관리기관(6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경력 디비(DB):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89년부터 건설기술자(약70만 명)의 경력, 학력, 자격, 근무처 등을 신고받아 관리중인 자료로 약2억 개 정보 축적

■ 기존 온라인 취업포털이나 건설관련 단체에서는 독자적으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건설관련업체 정보와 건설기술자의 경력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다양한 채용 정보가 제공될 수 없었으나,

-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는 70만 건설기술자들의 약 2억 개에 달하는 방대한 경력 디비(DB)와 건설업체의 구인정보 디비(DB)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인·구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구인·구직정보 한곳에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개설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개소

- 추진배경 : 건설경기 침체로 기술인력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에서는 특정 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구인난이 발생.
구인·구직 매칭지원을 통하여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건설기술인력 수급 불균형과 기술자 경력단절 및 실업 등을 해소
- 주요내용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보유한 건설기술자의 정보(약 2억개)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구인·구직 지원
- 시행일 : 2014년 11월 28일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횟수를 확대조정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을 완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7)

-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물(D,E급)의 정기점검 실시횟수를 확대조정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시설물의 등급에 상관없이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던 정기점검의 주기를 취약시설물(D,E급)의 경우 해빙기·우기·동절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중급기술자) 특정분야에 대해 ‘기사’ 자격으로 제한을 둔 항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 중 불필요한 장비보유기준(비디오카메라)을 삭제하여 신규 진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시설물 점검주기 확대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불필요한 진입규제 완화
- 주요내용
 - ① 취약시설물(D,E급) 정기점검 시기 변경(반기 1회 이상→1년 3회 이상)
 - ②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중급기술자 중 ‘기사’ 자격 삭제)
 -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장비보유 등록기준 완화(‘비디오카메라’ 삭제)
- 시행일 : 2015년 1월(잠정, 개정안 법제처 심의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내 용·복합개발 촉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08)

- 도시재생이 필요한 생활권 중심지에 대해 터미널, 역사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신설됩니다.
 -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입지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사항을 완화합니다.
 -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각종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통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 도시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참고자료>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 내 용·복합 개발 가능해진다.

2015년도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다양한 기능의 용·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공간 조성, 노후화된 기성시가지 정비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지정대상) 도시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 노후·쇠퇴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주거·공업지역 등
 - ② (지정기준) 도시기본계획의 부합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도시환경 개선·정비효과 등
 - ③ (완화내용)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
 - ④ (지정절차) 지자체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안) 입안 →국토부에 결정 신청 → 관계기관협의 → 중도위심의 → 국토부결정('18년부터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
- 시행일 : 2015년 1월(잠정, 12.9 국회 본회의 통과)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16)

-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민들이 하나의 기반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현재 기반시설에는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 할 수 있어 주민들이 한 시설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하나의 기반시설에 문화·체육·복지·판매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을 편익시설로 복합설치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14.12월부터 규칙이 개정되어 기반 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내용

- 추진배경 : 도시기반시설에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시설 활성화
- 주요내용
 - 공공청사, 학교, 문화·체육시설, 터미널 등 기반시설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 판매점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 확대
- 시행일 : 2014년 12월(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마련)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044-201-3756)

■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분양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하여 최초 공개모집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미분양 면적에 관계없이 추가 공개모집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표시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이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과 같이 중심선치수*에서 안목치수**로 일원화됩니다

*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 건물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도 분양건축물 제도 개선사항

■ 추진배경 :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 주요내용

- ①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범위 완화(20호실이상→30호실 이상)
- ② 분양건축물 수의계약 요건 완화(최초 공개모집후 미분양면적이 일정요건에 미달될 경우 2차 공개모집 후 수의계약 가능 → 최초 공개모집후 수의계약 가능)
- ③ 오피스텔 분양계약서표시 전용면적 산정방법 일원화(중심선치수→ 안목치수)

■ 시행일 : 2014년 12월 3일 시행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본격 지원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우수건축자산을 적극 보전·활용함과 동시에 새롭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간 국가적 유산으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많은 건축자산들이 경제논리 등으로 인해 훼손·멸실되어 왔습니다.
 - 앞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경우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 시 건축법·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의 완화 적용 등을 통해 적극 보전·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밖에 한옥과 관련 하여는 여러 지원책과 더불어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에 대한 별도의 특례적용 기준을 수립하여 한옥을 보다 쉽게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는 국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특례적용 등의 세부 지원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확정해 오는 6월 동법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

한옥등건축자산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건축자산 진흥을 통한 국가건축문화 진흥
- 주요내용
 -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계법령에 따른 특례적용
 - ②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을 통한 관계법령의 특례적용
 - ③ 한옥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및 관계법령에 따른 특례적용
- 시행일 : 2015.6.5(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중 '14.12.26~)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3)

-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시 수리용 부품으로 순정품(OEM부품)을 대부분 사용하여 수리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 2015년 1월 8일부터는 보다 저렴한 대체부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품질 인증**을 통해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저렴하고 품질 높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대체부품 인증제도

- 추진배경 :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14.1)
- 주요내용
 - ①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대체부품에 대해 성능·품질 인증
 - ②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경우 대체부품인증 표시하여 판매
- 시행일 : 2015년 1월 8일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유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8)

■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유무보험 보상한도를 인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자동차 책임보험은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 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대물 의무보험**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이번 보상한도 인상은 2016년 4월 1일 이후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 보상한도 인상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10년만에 1.5배 확대

2016년도 책임보험 및 대물유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개요

■ 추진배경 : 보상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①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사망·후유장애시 1억원→1억5천만원, 부상시 2천만원→3천만원)
- ② 대물유무보험 보상한도 인상(1천만원→2천만원)

■ 시행일 : 2016년 4월

■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0)

- 자동차 정비업자가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15. 1. 8부터 의무화** 됩니다.
-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정비사업자단체가 정하여 공개한 표준정비시간을 인쇄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주요 정비항목에 대하여는 게시물을 붙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정비의뢰자가 정비작업별로 소요되는 평균작업시간과 실제정비시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정비요금의 과다청구를 막고 정비업자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표준정비시간은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으로 제작사, 차종, 정비도구, 사용연료 등에 따라 실제정비시간과 달라질 수 있음을 정비의뢰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추진배경 :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게시하도록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요금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①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
 - ② 주요정비작업 외에는 홈페이지 게시 및 인쇄물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
- 시행일 : '15.1.8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운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044-201-4186)

■ 인천공항에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2곳)**를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 인천공항의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는 '14.10.18부터 1단계로 일부 제한적 운영* 중이며 '15년 1/4분기 중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 공항여객터미널 동쪽 Fast Track, 오전8시~10시

- 전용출국통로 이용으로 출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 **교통약자의 권익보호와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 사회적 기여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사회공헌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시범운영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 추진배경 : **교통약자·사회적 기여자** 등에 대한 공항이용 편의 증진

■ 이용대상

- ① (교통약자) 만6세 이하, 만80세 이상, 임산부, 보행 장애인 등
- ② (사회적 기여자) 독립유공자, 모범납세자, 외국인 투자가 등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자

■ 시행일 : 2015년 1/4분기(잠정, 관련기관 인력 증원을 위한 절차 진행중)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5)

■ 비행중인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건물이나 굴뚝, 철탑 등에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항공안전을 위하여 60m 이상 구조물중 특수구조물(철탑, 굴뚝 등)에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 자는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를 '15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5.1.1부터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하는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설치신서를 제출할 수 있게됩니다.

* 지역별 관할 지방항공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 서울지방항공청
- 경상, 전남, 제주, 울릉도(독도)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 추진배경 :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신고자의 불편 제거

■ 주요내용

- ①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5)

- 항공등화시설에 처음 근무하는 자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매우 중요한 시설중 하나인 항공등화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항공등화시설에 처음 근무하는 자에게는 1개월 이상의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에 대한 근무경력이 있어야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15년 1월 1일부터는 항공등화시설과 전력시설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만 있으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15.1.1부터 항공등화시설과 전력시설에 대한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 항공등화시설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 추진배경 : 공항운영자의 유지보수인력 운용효율 증대

■ 주요내용

- ① 항공등화시설 유지보수를 자격조건을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에 대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에서 항공등화시설과 전력시설에 대한 6개월 이상 실무경력으로 완화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기관의 자격 구체화 시행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5)

-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 자는 표시등 설치신고 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광도 및 광학 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성능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섬광등의 경우 시험검사기관이 섬광등을 시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성능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었으나, '15년 1월 1일부터는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시험성적기관의 표시등 시험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2015.1.1부터 표시등 설치신고서 제출 시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조명 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섬광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시험검사기관이 섬광등을 시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기관의 자격 구체화 시행

■ 추진배경 :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서의 신뢰도 향상

■ 주요내용

- ①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 제출하는 성능시험성적서에 대하여,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섬광등에 대하여는 섬광등을 시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도로변 규제 푸니 '여의도 18배' 땅이 이용 가능!”
접도구역 폭 축소(20→10m), 지정제외 확대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044-201-3910)

- 고속도로변에 토지를 소유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지으려 했지만 소유한 토지가 도로변 관련 규제(접도구역)에 묶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군도)변에 거주하는 B씨는 사는 집을 넓히려 했지만 역시나 관련 규제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접도구역 완화로 이 같은 국민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을 지정해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같은 접도구역 폭을 줄이거나 없애서 도로변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접도구역 규제 완화

- 추진배경 : 접도구역 지정목적에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개선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10m로 축소
- ② 전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접도구역 지정 제외
- ③ 군도 접도구역 지정 제외
- ④ 접도구역 내 농업용 축사·창고의 신축 기준 완화(연면적 20㎡→30㎡)
- ⑤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추가 허용

시행일

- ① 2014년 12월(법령개정)
- ② 2015년 6월[접도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국도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3), 경찰청 생활질서과 (☎ 02-3150-1361)

- 2차사고 예방에 효과적 수단인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불꽃신호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판매목적이 아닌 직접 사용 목적으로만 허가가 이루어져 보급에 애로가 있었는데
 - 경찰청에서는 하이숍에서 양도·양수 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먼저 시행하고, 자동차판매업소, 부품업소, 정비업소 등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 이에 따라, '15.1월말부터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 추진배경 : 불꽃신호기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나, 양도·양수 시 판매목적으로는 허가가 어려워 보급에 애로

■ 주요내용

- ① 경찰청 지침을 변경하여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14.10)하고, 하이숍에서 판매 추진('15.1월말)
- ② 하이숍 외에 자동차정비업소 등에서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시행일

- ① 2015년 1월(고속도로 하이숍에서 판매 추진)
- ② 2015년 10월(잠정, 개정안('14.10.31 입법발의) 국회심의중)*

*'14.10.31 입법발의(김성태 의원)하여 국회 계류 중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내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898)

-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그간 문제로제기되어 왔던 MRG(최소운영 수입보장)를 폐지합니다.
 -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km) 통행 시 3,1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였으나, 정부와 운영자의 협약 변경을 통하여 2,7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통행료 400원 인하로 연간 약 19만원의 가계 부담 감소 예정
 -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행료 인상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인상폭도 최대 7.37%(연평균 2.4%)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향후 25년간('15~'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9,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MRG를 폐지하여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을 완전 제거하고, 기존의 재정지원 소요액 미지급에 따라 5.2억원 재정 절감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902)

- 그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 이미 도입되어 연 평균 1천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 중 (‘2504 긴급견인서비스’, 1588-2504)

-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며, 그 이후 정비소 등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 이용

-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참고1)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은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불편사항(포장파손, 낙하물, 긴급견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으로 신속한 후속조치로 대처하면 된다.

04

보건복지 · 여성 · 법무 · 교육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2452)

-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14.11.23 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기사 등 (8개 직종)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신고제를 통해 앞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발급 이후 활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 '15년부터는 **면허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면허신고제도 시행

2015년도 의료기사면허신고제 시행내용

- 추진배경 :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 강화
- 주요내용
 -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보수 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 (신고대상자: 전체 의료기사 등 약30만명)
 -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괄 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 진행
- 일괄신고기간 : 2015.1.6.~11.2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A형간염 추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39)

■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간염’이 추가됩니다.

-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14년 13종 백신 지원 → '15년 14종 백신지원(A형간염, 5월 추가지원 예정)

-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15.5월 시행 예정).

*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A형간염 무료접종 시행('15년 초 보도 예정)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 확대

■ 2015년도 지원 백신(14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15.5. 지원예정)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21)

■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됩니다.

-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5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가까운 병·의원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5년 하반기 보도 예정)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

- 추진배경 :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독감예방접종 실시
- 주요내용
 - ①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실시
 - ② 무료접종기관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접근 편의성 향상
- 시행일 : '15년 10월경(백신 조달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 043-719-7913)

-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 2014년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합니다('15.7월 시행 예정).
-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15.7월 시행 예정).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으로 결핵발병예방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학교내 결핵발생 지속
- 주요내용
 - 고등학교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보건교육
 - 잠복결핵감염자 대상 예방치료
 - ※ 검사 및 치료 동의자 대상 실시
 -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본인부담금의 95% 까지 지원)
- 시행일 : '15년 7월경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2734)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시술·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 2015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됩니다.
- 아울러,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5년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로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① '15.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5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 ② '15.2월부터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적용
 - * 현재는 입원하여 중증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산정특례 적용
 - ③ '15년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3대 비급여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3, 2744)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14.2월 발표)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14년에는 선택진료비 부담 35%감소,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28개 병원에서 제공 등 추진함

-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5.8월)
-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하여,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15.9월)
-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 →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15.1월~)

※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은 www.nhis.or.kr 가능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2734)

- '15.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 그 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한 바 있으며,
-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울러,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5년도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적용

- 추진배경 :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① '15.7월부터 7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②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시행일 : 2015.7월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044-202-2753)

■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합니다.

- 그간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됩니다. 이렇게 보험 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7국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입니다.
- 그리고,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하여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례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15.3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 입법예고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4)

- 2015.1.1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됩니다.
 -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
 - * '12.12월 150㎡이상(7만개) → '14.1월 100㎡이상(8만개) → '15.1월 **모든 음식점(60만개)**
 -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됩니다.
 - 이에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하며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이를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전면금연

- 추진배경 : 공중이용시설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 주요내용
 -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내 전면 금연 실시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2)

-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15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합니다.
 -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합니다.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 〉

현 행			개 편 후	
선정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 계*	중위소득 28% 수준	중위소득 28% 수준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주 거	중위소득 43%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수업료, 교과서대 등 (현물급여)	의 료	중위소득 40% 수준	현행과 동일
		교 육	중위소득 50% 수준	현행과 동일

* 중위30%까지 단계적 조정 검토

-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합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14년) :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경우 (기존) 290만원(413만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 (개선) 464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다고 판단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는 점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며,

- **교육급여**에 대하여는 교육이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 교육부 교육비 지원사업과 연계·통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 급여체계 개편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14.11월) 약 134만명에서 약 210만명으로 약 57%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 일할 능력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추진배경 :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수준 현실화 및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강화

■ 주요내용

- ① '전부 아니면 전부'방식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 제고
- ②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보장수준 현실화
- ③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시행일 : 2015.6월 (잠정, 국회 본회의 통과)

■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2)

■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3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던 **금융재산 기준**을 ’15년 1월 1일부터는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긴급지원 지원단가를 **2.3% 인상**할 계획입니다.
 -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지원 월 108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위기 가구에 보다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4.12.9.)함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15년 하반기 이후에는 **소득기준*** 또한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 → 185% 이하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금융재산기준」일부개정안, 「긴급지원 지원단가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안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위기가구를 보호하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휴·폐업만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였으나, ’15년부터는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을 완화하겠습니다.
-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가족구성원이 모두 미성년자, 노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일부개정안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4)

- 내년 4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과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웁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미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매번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추진배경 : 원카드 멀티서비스 구현 및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 최소화
- 주요내용
 - ① 기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를 추가하여 사용 가능
- 시행일 : 2015년 4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4, 3228)

■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을 2015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3,321원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15년부터 **소득 65% 이하**(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4,553원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는 '14년보다 2만3천여 명이 늘어난 **8만 8천명이 지원받게** 됩니다.

* 서비스 수혜자 64,656명→88,071명(증 36%), 일자리 2,487개→3,387개(증 36%)

- 이와 함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비용부담이 큰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정하여 **예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예외지원 대상 : 미혼모('15.추가), 새터민산모('15.추가),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둘째·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결혼이민산모, 분만취약지산모 등

2015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 ② 상대적 산후관리 부담 계층에 대한 예외 지원 확대

■ 시행일 : 2015년 2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8, 3289)

- 장애인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2015년 5월부터 장애인 등록이 허용됩니다.
- 122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3천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등급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천여명의 상이등급자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과 등록 장애인 간의 복지서비스 격차가 해소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국가유공자 등 장애등록 허용

- 추진배경 : 현행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보편적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① (등록절차)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상이등급자(9천명)는 등록절차 간소화
 - ② (중복서비스 제한) 보훈서비스와 중복된 서비스는 제한
- 시행일 : 2015년 5월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1)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5년 6월 1일(입법예고 준비 중)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14년 대비 3% 인상('14년 8,550원 → '15년 8,810원)하여 지원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장애인활동급여 신청자격 확대 사항

-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장애 1급·2급→장애 1급~3급)
- 시행일 : 2015년 6월(잠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2)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등록 장애인이며,
 -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장애수당을 현행보다 33.3% 인상(3만원 → 4만원)하여 지급합니다.
-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현행 유지
- *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은 월 3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2만원 지급('14)

2015. 1월 이후 장애수당 급여 인상

- 추진배경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 지원
- 주요내용 : 장애수당 인상 3만원 → 4만원(33.3% 인상)
- 시행일 : '15. 1월

■ 여성장애인에게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7)

-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기존 1~3급에서 장애 등급 6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1~6급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14년 대비 ('14년 1~3급, 단가 1,000천원 → '15년 1~6급, 단가 1,000천원)하여 지원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확대 사항

- 추진배경 :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시 비용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자격 확대(장애 1~3급→장애 1급~6급)
- 시행일 : 2015년 1월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13)

- 국내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14년에는 아동이 만 14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던 양육수당을 2015년부터는 만 15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양육수당은 월 15만원이며, 앞으로도 지원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 추진배경 : 국내입양가정에게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주요내용

- ① (지급대상)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에서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입양한 국내 가정
- ② (신청절차) 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행일 : 2015년 1월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7)

-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75세이상 고령자 부부를 위하여 최대 2개월간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이상)의 노인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1인기준2,307천원)인자

〈소득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전국가구평균 150%이하		
	소득(월)	건강보험료(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307,000	70,377	62,319
2인	4,648,000	141,277	156,072

* '15.4월경 건강보험료 재산정시 건강보험료 변동 예정

- (본인부담금) 무료 ~ 42,000원(월)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 *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9,800원이며, 이 중 7,425원 이상을 돌보미 임금으로 지급
- (정부지원액) 193,200원 ~ 235,200원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 044-202-3481, 3463, 3451)

- (독거노인) 안전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돌봄을 강화합니다.
 - '14년에는 약 30만명을 지원하였으나, '15년에는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독거노인 보호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 * 안부확인(20→22만명) 안전확보(8.1→9만명), 친구만들기(4천명→5천명), 사랑잇기(4.6→5.4만명), 노노케어(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확대(3→10만명)
- (학대피해노인)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27→29개소, '15.7월~), 심리 상담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건강취약 노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안(眼)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 안검진의 단가를 ('14년)36,250원 → ('15년) 43,000원으로 인상 개인수술비는 ('14년) 2,440안(眼)→('15년)5,000안(眼)으로 확대합니다.
 - 무릎 인공관절 수술자 중 저소득 노인(약 1,900명)을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5)

-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15년부터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 사업규모를 '14년 28만명(재능나눔 3만 별도)에서 '15년 34만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지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며,
- 특히 '14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편성하여 활동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장에서의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인상(월 109만원 → 월117만원)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6)

-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등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안전성 및 위생 상태를 분기마다 점검하여, 복지용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를 위해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 사업소’는 매 분기마다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성 및 위생상태를 점검·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어르신들 모신 가정에서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과 위생상태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복지용구 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장기요양기관 검색>복지용구>지역별 복지용구 사업소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 현황

- 복지용구 이용가능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 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분
- 급여품목 현황
 - ① 구입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욕창예방방석, 지팡이, 자세변환용구 등 9개 품목
 - ②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수동·전동 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등 7개 품목
- 사용가능 금액 : 연간 1인당 16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이용



친(親)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6)

- 고령사회 대비 건강노화, 실버산업, 노인복지정책, 고령친화 제품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친(親)고령 분야 융복합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 2015년 2학기부터 대학 내 친(親)고령 분야 학위(석·박사)과정 및 산업현장 연계 실무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친고령 분야 특성화 대학원 2곳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 동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 받게 되면, 초기 3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9년까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동 특성화 대학원 지정 신청 관련사항은 내년 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친(親)고령 분야 특성화 대학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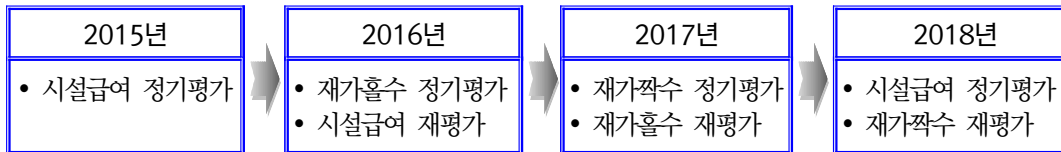
- 주요 지원 내용
 - 장학금, 교수진 운영비, 전문교육과정 운영비,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비용 등
- 지원금액
 - 2개 대학, 한학기당 3억원 내외('15. 2학기부터 운영)
- 교육과정
 - (석·박사 학위과정)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연구·개발, 친고령산업 기술 연구개발, 건강노화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
 - (비학위과정) 친고령 산업인력에 대한 산업기술 관리 및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강노화 비즈니스 개발 및 경영 컨설팅센터 설치·운영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044-202-3513, 3511)

- 장기요양급여 기관(시설 및 재가서비스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평가주기 등이 변경됩니다.
- (체계화·합리화) 난이도와 변별력을 강화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표 통·폐합 등을 통해 지표를 조정 하는 한편, 급여제공 과정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재배치
- (평가주기 변경) 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정기 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반면, 하위 기관 평가주기는 수시 평가 도입으로 주기가 짧아짐
- (수시평가)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신청 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질 향상 제고

〈참고〉 연도별 평가 현황



- 지표 신설 및 강화) 시설 학대예방 및 안전한 식생활등을 위해 지표 신설 및 배점을 조정·강화

* (신설) 식품위생관리 지표 신설

* (배점 강화) 안전(8→16점)지표, 노인학대예방(1→5점)지표의 점수 강화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9)

- 보육료(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가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발급됩니다.
 - 2015년 1월부터 **학부모들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한 **새로운 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7개의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의 카드 선택폭이 넓어지고 발급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
 - 기 발급받은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카드교체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1월부터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현 행】



【통합 후】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 추진배경 :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카드 발급 편의성 향상 및 선택권 제고

■ 주요내용

- ①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으로 어린이집 · 유치원 어디에서나 하나의 아이행복 카드로 사용 가능
- ② 7개의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부모의 카드사 선택 폭이 넓어지고 발급 편의성 향상
 - *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BC, 롯데
- ③ 기 발급받은 카드도 교체 없이 계속 사용 가능

■ 시행일 : 2015년 1월

기업 기부채납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기반과 (☎ 044-202-3545,3579)

-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 2015년부터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공동주택 입주인들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입주인 자녀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 기부채납 등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추진배경 : 기부채납에 대한 혜택 부여로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공동주택 입주인 자녀에게 입소우선권 부여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 * (확인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현행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1, 3569)

- 201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2015년에는 23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1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98개소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 201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추진, 서비스 제공 기관수를 2014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한 230개소로 확충하여, 취업모 등 맞벌이 가구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추진배경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시간제보육 서비스 주요내용

- ① (개요)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방식
- ② (지원 내용)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보육료 4,000원 중 3,000원은 정부지원)
- 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 지원(기본형)
- ③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시행일 : 신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15.3월부터 연차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6)

-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됩니다.
 - ‘만0세’의 경우 394천원에서 406천원으로, ‘만1세’의 경우 347천원에서 357천원으로, ‘만2세’의 경우 286천원에서 295천원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 이와 함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또한 3% 인상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안〉

(단위: 천원)

구분		'14년	'15년
만0세반	부모보육료	394	406
	기본보육료	361	372
만1세반	부모보육료	347	357
	기본보육료	174	180
만2세반	부모보육료	286	295
	기본보육료	115	118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추진배경 : 영아 가구 양육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주요내용
 - ① 0-2세 부모지원보육료 3% 인상
 - ②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3% 인상
- 시행일 : '15년 3월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4, 3568)

- 어린이집 0~2세반(영아반) 담임교사(15만명)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보육 업무 매진을 위하여 월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14년 월 15만원에서 '15년 월 17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 '12년부터 지원된 근무환경개선비는 '12년 5만원에서 '13년 12만원, '14년 1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향후 어린이집 내 교사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3~5세반(유아반) 담임교사 수준(월 30만원)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 한편,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2.3만명)에 대하여도 월 7만 5천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동 처우개선비는 '12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01)

■ '15년 7월부터 실직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지원합니다.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75%(나머지 25% 본인부담)를 지원하여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 실직 전 소득의 절반(최대 7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 실업크레딧 지원으로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든든히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변경 가능

■ 추진배경 : 실직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 주요내용

- 구직급여 수급자에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 시행일 : 2015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3)

-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5년부터는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5만원 이상~140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 역시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현재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85만원으로, 85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85만원 초과자는 월 38,2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5년부터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확대하여 91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91만원 초과자는 월 40,95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28)

-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기초연금이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 이는 전년도(2014년도) 선정기준액인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5.4월부터는 최대 20만 3,600원(잠정)의 기초연금액을 어르신들께 지급할 계획입니다.
 -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만 1,800원~20만 3,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 부부 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 감액 미반영

기초연금제도 주요 변경 내용

- 추진배경 : 노후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 주요내용
 - ('15.1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
 - ('15.4월) 기준연금액을 20만 3,600원(잠정)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초연금액을 최대 20만 3,600원 지급 예정
- 시행일 : 2015년 1월, 4월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02-2100-6149)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 동법의 시행으로 양성평등 추진체계가 강화됩니다. 기존의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도 신설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 대신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새롭게 지정되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범위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도까지로 확대됩니다.
-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지역성평등지수가 체계적으로 조사되어 공표**됩니다.
- **모성권 뿐만 아니라 부성권까지로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주간도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뀌어 실시됩니다.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시행에 따라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변화된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주요 내용

-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공포(14.5.28)
- 주요 개정내용
 - ① ‘여성정책’ 대신 ‘양성평등’ 정의 규정 신설(제3조제1호)
 - ②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양성평등실태조사 실시(제7조~제10조)
 - ③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양성평등 추진체계 개편(제11조~제13조)
 - ④ 국가성평등지수 등 양성평등 촉진정책 추진(제14조~제28조)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 및 사업 확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4, 6208)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확대됩니다.

- 2015년에는 신규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더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가까이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4) 140개소(410억원) → ('15) 150개소(447억원)

- 또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은 720개 과정**으로 전년도 보다 90개 과정이 **확대·운영**됩니다.

* ('14) 630개 과정, 14,000명(128억원) → ('15) 720개 과정, 15,800여명(162억원)

- 특히, 기업맞춤형·전문기술과정 훈련 확대, 훈련과정에 지역산업수요 반영 등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취업관련 상담☎ : 1544-1199(새일센터 대표전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 (추진배경) 여성 고용율 제고를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사업내용)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동행 면접, 인턴제 운영,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연계 :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개별·집단상담, 취업정보제공 및 구인처 연계
 - 직업교육훈련 : 경력단절여성의 연령·학력·경력 등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15년 720개 과정, 15,800명 예정)
 - 새일여성인턴 :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지원('15년 6,005명)
 - * 1인 총 300만원 한도, 6개월 이내, 월 60만원내 기업체 및 인턴자 지원
 - 취업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및 채용기업에 대하여 취업후 상담·멘토링 등 사후관리 지원
- (기대효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여성고용률 제고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신설,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55)

■ 청소년이 안심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 안전 전문기관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2015년 4월부터 설치·운영되어 프로그램 인증심사 및 현장점검,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보급, 안전 교육 등 **안전 관리**를 **총괄**하게 됩니다.

- 특히, **안전관련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시설 모니터링, 활동 현장점검 등 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청소년활동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 (중앙)청소년활동안전센터 27명, (지방)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각 3명

■ 청소년은 신고·인증을 거쳐 **안전이 확인된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수련시설 **종합평가**와 **안전점검 점검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 수련시설 점검 및 평가 결과, 신고 및 인증 프로그램 정보 등 청소년 활동 안전관련 정보 확인 가능

청소년활동안전센터 개요

■ 추진배경 : 청소년활동 안전에 대한 예방·교육과 대응을 위한 **총괄** 기구 설치·운영

■ 주요기능

-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컨설팅, 현장 확인 등 안전 관리
- 수련활동 안전 종합 매뉴얼 보급,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사자 안전 전문 교육

■ 설치·운영일 : 2015년 4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본격 추진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8)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4.5.28 제정, ’15.5.29시행)에 따라 조기발견-자립지원-사후관리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 동 법의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각급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때에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전국으로 확대(200개소)되며, 각 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4년) 54개 → (‘15년) 200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 추진배경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4.5.28 제정, ’15.5.29 시행)
- 주요내용
 - ① 상담·교육·자립·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자립지원(제8조~제11조)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지정(제12조)
 - ③ 학교장에게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때에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센터 연계의무 부여(제15조)
- 시행일 : 2015년 5월 29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연중 상시 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 02-2100-6302)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2015년부터 연중 확대 운영됩니다.
- 드림마을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1주부터 5주 과정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 프로그램은 상담(개인, 집단, 가족) 및 수련, 대안활동 등 다양한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서 참가 청소년들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관계 능력 증진, 자존감을 회복하게 됨
- 드림마을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학기 중에도 수업일수 인정을 받으면서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드림마을 참가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 (NEIS)에 남지 않습니다.
- 이용대상은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청소년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번없이 1388 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 추진배경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에 대한 상시 치유 서비스 제공
- 운영내용
 - 입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중·고생)
 - 프로그램 내용 : 개인·집단상담, 가족상담, 수련활동, 대안활동 등 수행
 - 입교절차 : 부모동의와 심리검사, 진단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입교
 - 입교비용 :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식대보조금 10~20만원(차상위 계층 이하는 서류 제출시 무료)
- 시행일 : 2015년 1월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41)

■ '15년 부터 청소년증 발급이 훨씬 쉬워집니다.

- 청소년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청소년증을 2015년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선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청소년증 개요

■ 발급대상 : 만9~18세 이하 청소년

■ 용 도

- ①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검정고시, 자격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②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할인혜택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릉 : 50%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원 : 면제~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500~1,000원 등

※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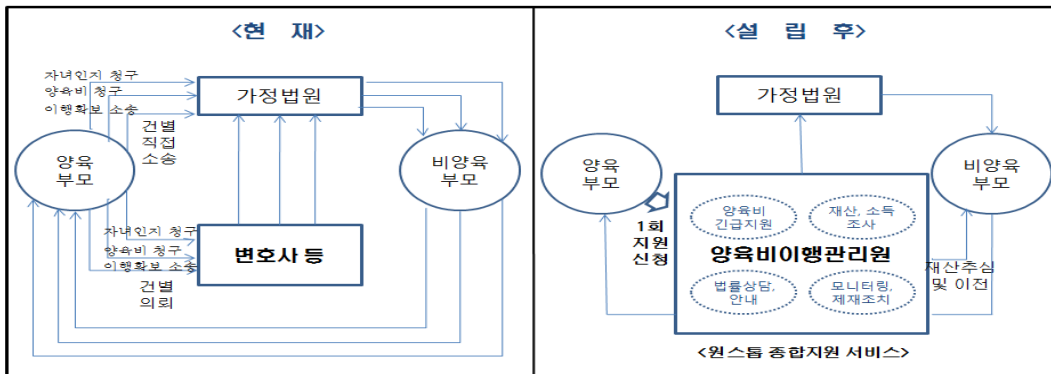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최초 시행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33~5)

- '15년 4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등)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그동안 복잡한 소송 절차,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양육비 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83% / 이혼·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 4.6% ('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15.3월말 예정)하여, 1회 신청으로 양육비 상담, 합의·법률·채권추심 지원,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강화제도 마련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주요 내용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4.3.24. 제정, '15.3.25. 시행)
-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
- * 양육비채무자 주소 파악, 소득·재산조사, 자녀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채권 추심, 양육비관련 교육·홍보 등 업무 수행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5)

■ '1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이하) 아동양육비를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지원 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지난 '13년에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15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 또한 191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2천여명이 확대됩니다.

* 예산 : (2014년) 516억원 → (2015년) 724억원

* 지원 단가 및 인원 : (2014년) 월 7만원 / 179천명 → (2015년) 월 10만원/191천명

- 향후 '17년까지 아동양육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생계·육아·가사의 3중고에 시달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18세미만의 아동(취학시 만 22세미만)을 양육하면서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구

■ 지원 복지급여

- ① 아동양육비(월 10만원/인) : 만 12세미만 아동
- ② 학용품비(연 5만원/인) : 중·고등학생 자녀
- ③ 생활보조금(월 5만원/인)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 ④ 추가아동양육비(월 5만원/인) :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는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에서 추가양육비를 지원함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실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02-2100-6368)

-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이 실시됩니다.
 - 금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던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 시범사업 : 6개 센터(경기 파주, 서울 성북, 충남 당진, 전남 함평, 경남 양산), 60여가구
 - **만 0~5세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주부모의 모국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올바른 의사소통 기술 습득을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 이중언어 습득을 위해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및 놀이 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가정 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됩니다.
- 일상생활에서 이주부모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문화가족자녀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중언어·문화 속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주요내용

■ 주요 내용

① 사업대상 : 만0~5세 취학 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② 지원 내용

영역	교육내용
부모교육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자조모임	• 각국의 이주부모들 주체로 이중언어 사용 지지를 위한 부모지지체계 형성의 장 마련 •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방법 등을 공유
부모-자녀 상호작용교육	• 가정 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 동요·동화 등 교구 교재를 활용한 이중언어 교육 부모코칭
기초 환경조사	• 이중언어 환경구축을 위한 가정환경조사, 적절한 교육방법 지도 모니터링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02-2100-6382/6385)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상담·수사·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이 1월 1일부터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됩니다.
 - 그간 센터는 기능이 매우 유사하나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 3가지 유형으로 복잡하게 운영되었습니다.
 - 1월 1일부터는 3개 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하고, 일부 기능을 재조정*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센터의 이름을 쉽게 기억하고,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학교폭력 피해자’ 제외, 해바라기아동센터 수사서비스 지원 활성화
- 한편,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15년 중 해바라기센터 2개소가 신규 설치되고, 성폭력 피해상담소 국비지원은 4개소가 확대됩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명칭 개선

■ 추진배경 : 성폭력 피해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시행일

- ① 통합지원센터 명칭 일원화 : 2015. 1월 1일부터
 - * (종전) 원스톱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변경) 해바라기센터
- ② 성폭력 피해상담소 국비지원시설 확대(96개소→100개소) : 2015. 1월부터 지원
- ③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확충(34개소→36개소) : '15년 중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시설 신규 지원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02-2100-6385)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개소를 '15년에 신규 지원합니다.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성폭력 피해자가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주거지원, 상담, 치료 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 자립자활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로, 피해자들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총 보호시설 지원 확대 (('14년) 27 →('15년) 29개소)

2015년도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시설 신규 지원

- 추진배경 :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인프라 확대
- 주요내용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신규지원(2개소)
- 시행일 : 2015년 1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2100-6395/6396/6398)

- 성매매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자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자활 서비스** 제공하고자 **고령 탈성매매 여성 대상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합니다.

*'14년 9개소 → '15년 10개소

- 또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 까지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운영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 성매매 추방주간 동안 지자체, 경찰청, 여성·아동·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인터넷 TV, 지하철·KTX 모니터, 전광판 등을 통한 전국 캠페인을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4.3.27 공포, ‘14.9.28 시행)〉

제7조(성매매 추방주간)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동법 시행령(‘14.9.24 공포, ‘14.9.28 시행)〉

제3조(성매매 추방주간)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2015년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 추진배경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 주요내용 및 시행일

① 성매매 추방주간 : 2015년 9월 시행

②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확충(자활지원센터 1개소) : 2015년 1/4분기 시행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등 피해자 지원확대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02-2100-6425)

- 10세 이상 남아(男兒)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하여 **가족보호시설 3개소를 2015년에 전환·설치**하여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 가족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 남아 동반(10세이상) 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설치현황(~'14) : 18개소
 - 부산, 대구, 광주, 강원(원주), 충북(청주), 전북(익산, 군산), 경남(양산, 거제, 창원), 제주(제주시), 전남(목포, 여수), 서울, 대전, 충남(논산, 공주)
- 또한, 폭력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지원시설을 2014년 199호에서 2015년에는 239호까지 확대** 하여 나가겠습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의 효율적인 운영과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신규18명)**,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치유프로그램 신규지원 (40백만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확대('14년 438백만원→'15년 631백만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 추진배경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대
- 주요내용
 - ①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확충(18개소→21개소)
 - ② 여성폭력피해 주거지원시설 확충(199호→239호)
 - ③ 1366 여성긴급전화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확보(18명 신규)
- 시행일 : 2015년 1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02-2100-6442)

- '1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연 2,500회에서 3,500회로 확대됩니다. 전국 10개 권역에서 15개 지역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예방교육이 필요하거나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을 발굴하여 교육을 추진할 것이다.

※ ('14) 전국 10개 권역 → 전국 15개 시·도

- 지역 및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내실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내 단체,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의 저변을 확산에 도모할 계획이다.
-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 양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추진배경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 주요내용

- ①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횟수(2,500회 → 3,500회)
- ②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운영 지역 확대(10개 → 15개)

- 시행일 : 2015년 1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02-2100-6429, 6430)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및 건강치료비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01만 2천원에서 월 104만3천원으로 인상되며,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만 8천원에서 월 45만 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 그리고 고령으로 인한 치료비 요구 증가에 부응하여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연 359만 4천원에서 연 427만원으로 인상되며, 맞춤형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 광복 70주년 계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 및 기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피해국가간 공조 및 기록물 목록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심포지엄 및 국제학생 작품공모전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더불어 민간단체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국제공조 활동 및 기념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소녀이야기 2 등을 제작하여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데 널리 활용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14년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운영비가 지원되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 추진배경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대한 관심 고조
- 주요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증액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대일 맞춤형 지원(신규)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민간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관련 국제공조 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
 - 국제학생작품공모전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 시행일 : 2015년 1월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도입 및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167)

■ 보험자의 보험약관 중요내용의 명시 의무가 설명의무로 강화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 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

- 지금까지 보험자는 보험약관 중요내용을 명시할 의무만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 '09년부터 '11년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 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례 2,784건 중 상품설명 불충분 199건(7.1%) 등 부실한 계약체결 관련 사례가 22.3%를 차지하였습니다.

- '15. 3. 12.부터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므로, 그 위반행위 여부가 보다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법무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보험소비자, 이제 법무부가 보호합니다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167)

- '15. 3. 12.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그 동안 심신박약자가 자신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신박약자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단체보험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심신박약자인 직원은 제외되어, 정신장애인의 소외감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 앞으로는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보조하는 심신박약자도 가족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참고) 법무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보험소비자, 이제 법무부가 보호합니다



보험모집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167)

■ 보험계약 체결을 돕는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보험대리상은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고,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으며, 청약·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통지하거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내부적으로 보험대리상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더라도 선의인 보험계약자는 그러한 제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 한편, 보험설계사는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면서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더불어 보험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법무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보험소비자, 이제 법무부가 보호합니다



피보험자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제한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167)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이 실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가족에게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실질적인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실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이어야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법무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보험소비자, 이제 법무부가 보호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167)

■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 보험수익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 2년 → 3년
-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청구권 : 1년 → 2년

☞ (참고) 법무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보험소비자, 이제 법무부가 보호합니다



단체생명보험의 수익자는 가족으로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167)

- **단체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려면 **단체협약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러한 단체협약이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단체협약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직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참고) 법무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보험소비자, 이제 법무부가 보호합니다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 방지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167)

-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15. 1. 16. 시행됩니다.
- ①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탕감받은 후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거나, ②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자가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또한 법원은 차명인수 시도가 의심되면 해당회사나 관리인,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회생절차 악용방지를 위한 도산법 2015. 1. 16. 시행 예정

2015년도 회생절차 악용방지 개정 내용

- 추진배경 : 부도덕한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 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필요
- 주요내용
 - ① 회생계획안의 임의적 배제(이사의 중대한 책임, 인수자와 구 사주의 연관성)
 - ② 회생계획안의 필수적 배제(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 ③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채무자, 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
 - ④ 형사처벌 조항 신설(자료제출 기피, 허위 자료 제출, 인가결정시 가중처벌)
- 시행일 : 2014년 1월 16일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167)

- 중소기업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15년 상반기 시행됩니다.
-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를 재량화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 절차 기간을 약 3개월 단축시키고,
-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는
 -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①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또는 ②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하고,
 -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하여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도입을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안 2015년 상반기 시행

2015년도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 내용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채무 관계가 단순함에도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함
- 주요내용
 - ①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의 재량화(회생절차기간 약 3개월 단축)
 - ②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 ③ 간이조사위원제도 신설(조사위원 선임비용 약 2,000만원 절약)
- 시행일 : 2015년 3월(잠정, 개정안 '14.12.9. 국회통과)*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의지대로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167)

■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공익신탁법」이 '15. 3. 19.부터 시행됩니다.

- 공익신탁을 설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가**만 받으면 되고, 인가요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인가 절차도 명확해지고, 각종 서식도 마련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공익신탁의 주무관청이 흩어져 있어 공익사업의 내용에 따라 여러 부처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의 인가와 감독**을 받으면 됩니다.
- 공익신탁의 활동내역이 **인터넷에 공시**되고, **법무부가 감독**을 전담하여, 공익신탁의 운영이 투명해집니다.
- 공익신탁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익신탁에게 귀속 되도록 하여 공익신탁을 악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의지대로

2015년도 시행 공익신탁법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 제도 정비

■ 주요내용

- ① 공익신탁 설정 요건의 완화(허가제→인가제)
- ② 공익신탁 주무관청의 일원화(공익사업별 주무부처→법무부)
- ③ 공익신탁 인가절차의 구체화, 관련 서식 마련
- ④ 공익신탁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제도 등 도입
- ⑤ 공익신탁의 악용방지를 위해 운용소득 사용제한 제도 등 도입

■ 시행일 : 2015년 3월 19일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법무부 법무과 (☎ 02-2110-3170)

-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행정자치부가 2014. 6. 5. 함께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대되어,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1,455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전국 읍·면 주민들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따뜻한 사례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상담건수는 714건으로, 미집계된 상담건수가 약 8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상담건수는 약 3,000여건으로 추정됩니다.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 “우리 마을에 ‘변호사’가 생겼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 추진배경 :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이웃같이 친근한 변호사를 연결할 필요성
- 주요내용
 - ① 변호사의 재능기부를 권유하여 마을변호사 추가 위촉(733명→1,455명)
 - ②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하여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시행일 : 2013년 6월 → 2014년 11월 21일 전면 배정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 교복은 학교에서, 학부모는 부담 경감!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044-203-6522)

■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하게 됩니다.

-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는 방식인 ‘학교 주관구매 제도’를 통해,
- 신입생은 교복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에서 선정한 교복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받게 됩니다.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주관 구매’ 실시 여부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음

■ 교복 착용 여부와 구매 일정,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 발표 이후에 해당 학교의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복 물려 입기’(중고) 등의 사유로 ‘학교주관 구매’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입생 배정 학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사전 신청하여 교복을 구하면 됩니다.

■ 따라서, 학교의 안내 없이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교복 학교주관 구매 시행 및 ‘교복구매 운영요령(2014년 개정)’ 안내

05

고용노동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5)

■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6,220원(5,580원×209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022원)할 수 있습니다.

※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도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의 100%(시급 5,580원)를 적용받게 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90)

- 2015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신고는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격종목별 주무부처(또는 시·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되고,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대여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건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단속이나 제도만으로는 행정력의 한계로 자격증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15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와 자격 미취득자 고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도 기대됩니다.

☎ (신고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 <게시예정>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제도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내지 제33조의5 참조)

- ▶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 : 자격종목별 주무부장관(시·도)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 신고서 조사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내 처리기간 연장)
- ▶ 신고포상금 :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
-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 대여행위 종료일로부터 3년경과, 공모 통한 부정신고,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한 경우, 이미 조사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
- ▶ 기타 : 신고자의 신상정보 누설금지
-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2015년 1월1일 이후의 대여행위에 한함)



일학습병행제 참여대상을 고교 재학생 단계로 확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044-202-7273)

- 現 고교 졸업생(최종학기 현장실습생 포함)중심의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를 **재학생 단계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 기존 고교·대학 졸업생 중심의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15.3월부터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을 통한 확대 추진(교육부 협업)

*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는 **스위스 고교단계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하여 도제식 수업이 가능한 분야의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과 일학습병행제간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형 직업학교 모델** 육성(특성화고-기업군 9개 시범 사업단 선정(10월말), 2015년 3월 시범운영)

일학습병행제 참여대상 고교 재학생 확대

- 추진배경 : 우리나라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스위스 산업현장중심 직업교육의 장점을 접목하여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 창출**

* (학생)구직기간 단축, 현장 적응력 제고, (기업)우수 기술·기능인력을 확보, (국가)핵심분야 산업 인력 확충 및 청년고용률이 제고

- 주요내용

- ① (학교-기업 컨소시엄 선정) 상호 인근 학교와 기업(또는 SC, 협회 포함 가능)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9개 사업단 선정(고용부-교육부 협업)
- ② (교육과정) 학교-기업(또는 SC, 협회 포함 가능) 컨소시엄이 산업분야별로 필요한 핵심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NCS를 기반으로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 시행일 : 2015년 3월

■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누구나 원하고 필요한 직업훈련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업간 칸막이 제거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8)

■ 직업훈련 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누구나, 쉽게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훈련참여자의 훈련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에,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 2015년에는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실업자의 경우,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사업주 훈련(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 참여 가능

- 또한,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같은 업종에 취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훈련비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2015년도 직업훈련 참여 확대

■ 추진배경 : 훈련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구직자(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직업훈련 참여 확대

■ 주요내용

① 실업자 ⇄ 근로자 간 직업훈련 참여 확대

※ 실업자의 경우,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사업주훈련에 참여 가능

② 동종 업종 취업 시 훈련비 전액 지원

■ 시행일 : 2015년 1월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대상 확대 및 내일배움카드제로 참여방식 일원화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411~5)

- 실업자직업훈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그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그간, 실업자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던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카드발급 방식(내일배움카드)과 확인서 발급(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나뉘어 있던 **실업자직업훈련의 참여방식**을 ‘**내일배움카드**’로 **일원화**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실업자훈련 지원대상 확대 등

- 추진배경 : 실업자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및 내일배움카드제로 참여 방식 일원화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확대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비진학 고등학교3학년 학생, 농·어업인
 - ② 실업자직업훈련의 참여방식을 ‘내일배움카드제’로 일원화
- 시행일 : 2015년 1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044-202-7339)

■ 2015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 이에 따라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 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15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 '15년 1월 1일
-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16년 1월 1일
- ▶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17년 1월 1일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해명자료>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채용서류 돌려받을 수 있어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48)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3)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12.7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 부담분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을 시행중입니다.
- '14.11월말 현재, 월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중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146만 명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 '15년에는 더 많은 근로자 및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월보수 140만원 미만)하여 시행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 없이), 고용센터 1350(국번 없이)

2015년도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
 - 지원수준 : 고용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50% 지원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 시행일 : 2015년 1월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중소기업 근속장려금)**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35)

-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숙련기술 습득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고교 졸업 후 조기취업을 장려하는 동시에 장기근속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군입대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합니다.
 - 또한, 미래유망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동력산업과 수출상품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합니다.
-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15년 2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 추진배경 :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기술습득 및 경력단절예방
- 주요내용 : 근속시 연 100만원 지급(최대 3년)
- 시 행 일 : 2015년(2월 세부내용 발표예정)

K-MOVE 센터 추가 설치 등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38)

-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 KOTRA 무역관을 중심으로 K-Move 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K-Move 센터는 재외공관, 진출기업, 한인회 등 다양한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일자리 발굴, 청년의 취·창업 지원, 사후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 '14년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독일 등 7개국에 추가하여, '15년 호주, 싱가포르 등 10개국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 K-Move센터 등 해외취업 관련 정보는 월드잡(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Move 센터

- **추진배경** : 기존 관(官)·연수기관 위주에서 다양한 현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KOTRA 무역관내 K-Move 센터 구축
- **주요내용**
 - 민관 협의체 운영, 현지 민간알선기관과의 MOU 등을 통한 일자리 발굴
 - 취업알선 지원, 멘토링 교육, 취·창업 박람회 개최 등 해외 취·창업 지원
 - 기 취업자 근로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 해소, 재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 **시행일** : 2015년 3월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 (☎ 044-202-7502, 7505)

- 다양한 시간선택제(채용형, 전환형, 개선형) 일자리 확산을 통해 일·가정 양립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도입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채용형)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130% 이상을 지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원 요건을 현실화하고, 간접노무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 (전환형)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시(자녀 돌봄, 교육, 간병, 학업 등) 일정기간만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선형)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2015년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 주요내용

- ①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요건 현실화(최저임금 130% 이상→중소기업은 120% 이상) 및 중소기업 간접노무비 신규 지원(월 10만원 정액)
- ②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 지원 신설
 - ▶ 전환장려금: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및 그 밖의 전환수당 등의 50%, 월 50만원 한도 지원
 -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정액 지원(중소·중견기업)
 - ▶ 대체인력지원금: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의 50%, 월 60만원 한도(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지원
- ③ 근로조건 개선지원 신설(중소·중견기업 대상)
 - ▶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시 임금 상승분 50%, 월 60만원 한도 지원

■ 시행일 : 2015년 1월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9, 7462)

■ '15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 그간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등과 연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이었음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임금이 30%이상 낮아진 경우 근로자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지원

- '15년부터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주 지원*)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

■ 또한, '15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60세 이상 정년연장시 연간 지원상한액 840만원 → 연간 1,080만원

2015년도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①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 지원 신설(1인당 월30만원, 최대 1년간)
- ② 임금피크제 연간 지원상한액 상향(연간 840만원 → 1,080만원)

■ 시행일 : 2015년 1월(잠정)*

* ①시행령 개정('14년 12월내) ② 고시개정 진행('14.12월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9, 7462)

■ '14년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17년말까지 3년간 지원기간이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 이는 '15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전면적용됨에 따라 경비근로자 등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정년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1~23%)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8만원씩 지원

- '15년부터는 경비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율을 완화(23% → 12%)하여 해당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정년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일 것((정년 미설정 및 폐지 포함)

2015년도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개편

■ 추진배경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주요내용

- ① 지원기간 연장('15년~'17년말까지)
- ② 경비업종 지원기준율 완화(23% → 12%)
- ③ 정년요건 완화(사업개시 이후 정년 미설정 → 정년 미설정)

■ 시행일 : 2015년 1월(잠정)*

* ①시행령 개정('14년 12월내) ② 고시개정 진행('14.12월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3)

-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지원금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14년까지는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으로 지원하였으나
 - 2015년 1월부터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부여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15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책마당>대상자별정책(여성)>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재고용) 확대

- 추진배경 :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
- 주요내용
 -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지원금 상향(연간 540만원 → 720만원)
- 시행일 : 2015년 1월

'1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및 적용단가 변경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라 사업주에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정방식과 부담기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 보다 쉽고 정확하게 부담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잡한 산정방식을 바꿔 **산정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미달인원 전체에 하나의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 또한, '15년에 적용할 부담기초액이 미달인원 1명당 **월 71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장애인 고용정도에 따라 최대 월 최저임금액(1,166,22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5년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710,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0이상 3/4미만	1/40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781,000원	852,000원	923,000원	1,166,220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을 건설업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044-202-7742)

■ 건설업의 경우 소음, 분진, 화학물질,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 작업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두고 있지 않았으나

- 2015년 1년 1일 이후 착공하는 아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유자격 보건관리자를 선임 하여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공사현장

*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하여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확대

■ 추진배경 :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등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

■ 주요내용

-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공사 현장에 유자격 보건관리자 선임

■ 시행일 : 2015년 1월

06

인사 · 행정자치 · 경찰



지방인재채용목표제 7급 공무원 공채시험까지 확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 02-2100-6613)

- 정부에서는 공직 채용에서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학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 그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적용하였으나
 - 2015년부터는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포함) 까지 확대 적용 할 계획입니다.
- 지방인재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 · 중퇴하거나 재학 · 휴학 중인 사람이 해당되며
 -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당초합격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7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포함) 공채시험의 경우 당초합격 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 입니다.
 - * 5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1차 -3점, 2차 -2점, 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상한(10%)의 제한을 두지 않음)
 - * 7급 공채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포함) (필기 -2점, 합격예정인원의 5%)

-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균형인사지침 검색(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행정자치부 주민과 (☎ 02-2100-3983)

- 2015년 1월 22일부터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고
 - * 영주권을 받아 국외이주 또는 현지이주 하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
 -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이 허용됩니다.
 - 또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등록됩니다.
- ※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재외국민 등록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

- 추진배경 : 재외국민의 국내활동 불편 해소 및 국민으로서 소속감 향상
- 주요내용
 - ①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주민등록 유지(거주자→재외국민)
 - ② 재외국민 말소자의 주민등록 허용(말소자→재등록, 미등록자→신규등록)
 - ③ 재외국민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변경(재외국민→거주자)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

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 규제 완화 · 폐지

경찰청 생활안전과 (☎ 02-3150-1331)

- 경찰청에서는 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시간을 축소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완화하였습니다.
- 일반경비원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입교육 시간** 중 입교식, 수료식 등 단순행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직업윤리 및 서비스 과목 등 매월 직무교육을 통하여 보완 가능한 과목의 교육 시간을 **완화**하였습니다.
 -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시간을 **현행 28시간(4일 소요)에서 24시간(3일 소요)으로 완화**함으로써 일반경비원이 보다 신속하게 업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경비업체**의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 임원 변경 등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로 개정**하여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 **경비협회 설립** 시 요구되던 **발기인 5인 이상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경비협회 설립과 관련된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경비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알림

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 규제 완화 · 폐지

■ 추진배경 : 경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추진

■ 주요내용

- ①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시간 완화(28시간 → 24시간)
- ② 경비업 변경신고 기간 완화(15일 이내 → 30일 이내)
- ③ 경비협회 설립제한 규정(발기인 5인 이상) 폐지

■ 시행일 : ①→'14.12.10, ②③→2014. 12월(잠정, 개정안 국무회의 대기중)

※ 국무회의 일정 : '14. 12. 23(화)

성폭력 · 학교폭력 · 가정폭력 · 실종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체계 출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02-3150-1391)

-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수사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 가해자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피해자가 하루 빨리 일상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경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 이에, 경찰은 성폭력 · 학교폭력 · 가정폭력 및 실종 등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 2015년 상반기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하반기 이를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됩니다.
- 새로 출범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기존 형사 등 다양한 기능에서 담당해 온 성폭력 · 학교폭력 · 가정폭력 및 실종 수사를 통합하여 전담함으로써,
 - 해당 분야에 특화된 수사 전문성 및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여성 · 아동 등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 분	현 행	개 선
성폭력	형사, 성폭력전담수사팀	→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통합, 전문화된 수사 및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 지원 역할
학교폭력	학교전담경찰관	
가정폭력	형사	
실종 · 가출	여성청소년과 형사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인상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 02-3150-2756)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청원경찰법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급의 보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2014년 12월 청원경찰법이 개정되어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급의 보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2015년 7월 1일부터 위 개정 사항은 적용됩니다.

☞ (참고) 청원경찰법 제6조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인상

- 추진배경 : 청원경찰 처우개선
- 주요내용
 - ① 보수단계별 재직기간 단축(경장급 : 15년 이상 30년 미만 →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사급 : 30년 이상 → 23년 이상 30년 미만)
 - ② 경위급 보수단계 신설(재직기간 30년 이상)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07

보훈·국방(방사)·병무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044-202-5411

- 1945. 8.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1945. 8.15.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또한,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동 개선내용은 2015. 1. 1.부터 새롭게 보상금을 받게 되는 손자녀부터 적용됩니다.

2015년도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시대·사회 변화를 반영한 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 및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① 독립유공자가 1945.8.15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 지급
 - ② 손자녀의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 시행일 : 2015년 1월

■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044-202-5620)

■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 참전유공자 중 3개 이상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나라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6·25참전유공자 평균연령 84세)로 편안한 노후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하며,
-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중 독거로 3개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보훈섬김이가 주3회 방문(기존 주1~2회)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참전유공자와 경합된 모든 보훈대상자 해당

- 이를 위해 보훈복지인력을 243명 증원(보훈복지사 17명, 보훈섬김이 226명)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 할 예정입니다.

☞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지원>이동보훈복지서비스>자료실>참전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수도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남양주 보훈요양원 개원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 044-202-5631)

■ 수도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남양주 보훈요양원**을 건립하여 2015년 2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 전국 보훈요양수요 접근성을 감안하여 현재 5개 요양원(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도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남양주 보훈요양원을 건립하여 요양서비스 점진적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남양주 보훈요양원은 '15.1. 19부터 입소를 시작하여 '15. 2월 개원 예정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동시에 모실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자세한 내용은 [http:// nyjcare.bohun.or.kr](http://nyjcare.bohun.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 보훈요양원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9
- 연락처 : 031-579-7000(남양주보훈요양원 개원준비단)
- 규모
 - 대지 5,005㎡(1,516평), 연면적 9,268㎡(2,808평)
 -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높이 19.5m
- 주요시설
 - 57개 요양실,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치료실, 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 044-202-5759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1972년 1월 31일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까지였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사위 계류중, 공포후 즉시시행)으로 1972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분중 고엽제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등록신청하여 신체검사 등을 거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되면 보상금지원, 취업·교육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참고)국가보훈처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보훈법령

■ 상이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기능통합으로 사용자 불편해소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 044-202-5761)

- 상이국가유공자의 복지카드 사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무임교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복지카드를 발급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LPG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따로 발급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 2014.12.23부터 LPG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복지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 (참고)국가보훈처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보철용차량 지원지침



5급 공채공무원의 중위 임관제도 보완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 2015년 4월부터 국립외교원을 거쳐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도 중위로 임관할 수 있습니다.
- 2014년부터 국방부는 정부부처 실무경험이 있거나 필요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5급 공채 공무원을 중위로 임관하여 개인역량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더해 2014년 외무고시가 폐지된 이후 국립외교원을 수료한 인원을 5등급 외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중위 임관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이는 5급 공채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군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될 것입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군인사법>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등

5급 공채공무원의 중위 임관제도 보완

■ 추진배경

외무공무원 임용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외교관후보시험에 합격하고 국립외교원을 거쳐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도 중위로 임관할 수 있도록 보완

■ 주요내용

- 5급 공채 공무원의 장교 선발 시 필기시험 면제
- 전문성 활용 차원에서 직렬별로 연관성 있는 병과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

■ 시행일 : 2015년 4월 1일(12. 9. 국회 본회의 의결)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선발대상 확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발 계급과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 2013년도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전역 당시의 계급인 대위와 중사로 선발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총 37명을 재임용하였습니다.
- 이후 제도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2014년 7월부터는 선발 시기와 계급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연 1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선발하고, 선발계급은 대위, 중사 뿐만 아니라 중위 계급도 포함하였습니다.
- 임용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자로서, 재임용 후 3년 근무가 가능한 인원 중 서류전형, 신체검사, 체력검정 및 심층면접 등으로 우수자를 선발하여 7월 1일과 12월 1일부로 재임용하고 있습니다.
- 2015년에도 우수한 중기복무자를 충원할 수 있는 재임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 현역으로 재임용된 자의 인사관리는 현역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3년간 복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수 복무자에게는 장기복무 및 진급 선발의 기회도 부여하며, 보수, 각종수당, 퇴직금, 연금 등을 현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선발대상 확대

■ 추진배경

우수한 중기복무자를 충원하여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보장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석 직위를 보충하며, 군사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우수예비역을 획득하여 활용함

■ 주요내용

- ①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부사관 재임용 대상을 확대
※ 기존 대위, 중사 계급 한정 → 대위, 중위, 중사로 1개 계급 포함
- ② 재임용 후 단기 복무 장교·부사관으로 활용
- ③ 전역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임용연령 미제한

■ 시행일 : 2015년 1월

■ 군인 진급 또는 전역 시 범죄경력조회 법적 근거 마련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 군인이 진급하거나 전역할 때,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범죄경력 조회는 진급 또는 명예전역 심사 시 감점, 비선 사유에 해당되기에, 인사정책의 형평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경력도 군사법원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기존에 대상자별로 제출한 ‘정보제공동의서’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인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강화하고자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군인사법시행령>제6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진급·전역 시 범죄경력조회 강화

■ 추진배경

군인신분을 은폐하고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진급 및 전역 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 주요내용

진급 및 전역 시 범죄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시행일 : 2015년 1월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적용기준 완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05)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근로연령 변화추세에 맞춰 적용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일반 또는 기능군무원의 직급별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일반 군무원			기능 군무원		
직 급	공개경쟁채용	특별채용	직 급	공개경쟁채용	특별채용
1급		56세			
2급		53세			
3급		53세			
4급		45세			
5급	20~40세	45세			
6급		53세	기능 6급	18~40세	45세
7급	20~40세	53세	기능 7급	18~40세	45세
8급		45세	기능 8급	18~40세	45세
9급	18~40세	45세	기능 9급	18~40세	45세

-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일반 국민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아래와 같이 완화할 계획입니다.

직 급	일반군무원	직 급	기능군무원
7급 이상	20세 이상	기능 6급 이하	18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적용기준 완화

■ 추진배경 : 국민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완화

■ 주요내용

①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

직 급	일반군무원	직 급	기능군무원
7급 이상	20세 이상	기능 6급 이하	18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		

■ 시행일 : 2015년 채용시험부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기준 개선

국방부 병영정책과 (☎ 02-748-5164)

- 다년간의 군 생활 경험으로 병영생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예비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상담 관련 자격증과 일정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을 경우에만 상담관 채용이 가능했습니다.
- 그러나, 2015년부터는 상담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상담 경험이 없더라도 10년 이상의 군 복무경험이 있으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 2015년에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74명을 전반기에 신규 채용 예정

2015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기준 개선

- 추진배경 : 군경험이 풍부한 예비역에 대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활용 확대
- 주요내용
 - ① 채용기준 변경
(자격증+상담경험 → 자격증+10년 이상의 군 복무경험 또는 상담경험)
- 시행일 : 2015년 1월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 예비군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하여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 지금까지는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휴일/전국 단위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향방작계훈련에 대한 휴일훈련 신청범위가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향방작계훈련은 2차 보충훈련에 한해서만 휴일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1차 보충훈련부터 휴일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예비군 홈페이지>공지사항>15년 달라지는 예비군제도 안내

2015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참여 유도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 ① 휴일/전국 단위 훈련 신청절차 개선
(훈련부과 이후 신청→훈련부과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② 향방작계훈련 휴일훈련 신청범위 확대(2차보충훈련→1차보충훈련)
- 시행일 : 2015년 1월



예비군 일반훈련 입소 허용시간 변경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 예비군 훈련 시 **훈련장 입소 허용시간이 09:00로 변경**됩니다.
- 지금까지는 훈련 소집통지 시간인 09:00 이후 지연입소자에 대해 09:30 까지 입소를 허용하고 보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상 입소한 예비군과의 형평성이나 보충훈련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소집통지 시간인 09:00 이후에는 훈련장 입소가 되지 않습니다.

☞ (참고) 예비군 홈페이지>공지사항>15년 달라지는 예비군제도 안내

<2015년 예비군훈련 입소 허용시간 변경

- 추진배경 : 정상 입소한 예비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소 허용시간 통일
- 주요내용 : 예비군 훈련장 입소 허용시간 변경(09:30 → 09:00)
- 시행일 : 2015년 1월



예비군 일반훈련 시 M16소총 사용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 예비군 일반훈련 시 총기는 M16소총을 사용합니다.

- 지금까지는 예비군 일반훈련 시 총기는 칼빈소총과 M16소총을 혼용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모두 M16소총으로 교체하여 사용합니다.
- 예비군 교육훈련에서 개인화기를 M16소총으로 전량 사용함에 따라 예비군의 훈련 여건이 개선되고, 작전 임무수행 능력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예비군 홈페이지>공지사항>15년 달라지는 예비군제도 안내

예비군 일반훈련 시 M16소총 사용

- 추진배경 : 일반예비군 전시임무에 맞는 훈련 여건 개선
- 주요내용 : 예비군 일반훈련 시 칼빈소총을 M16소총 전량 교체
- 시행일 : 2015년 1월



병 봉급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 병 봉급을 2014년 대비 15% 인상하였습니다.

-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 2배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5년에는 병 봉급을 2014년 대비 15% 인상하여 상병 기준으로 월 15만4천8백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병 봉급 인상

■ 추진배경 : 의무복무병사들의 복무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 병 봉급을 2014년 대비 15% 인상

구 분	병 장	상 병	일 병	이 병
2014년	149,000원	134,600원	121,700원	112,500원
2015년	171,400원	154,800원	140,000원	129,400원

■ 시행일 : 2015년 1월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강화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21)

■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자살로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병사망위로금’은 유가족에게 5백만원씩 지급되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1천 5백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15년 1월 1일 사망일 기준 적용

- 자살 이외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병 상해보험 가입을 통하여 보험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병 사망자 보상 강화 방안

■ 추진배경 :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

■ 주요내용

- 병 사망위로금 인상(자살자, 5백만 원 → 1천5백만 원)
- 병 상해보험금 지급(자살 이외 사망자, 1억 원)

■ 시행일

- 병 사망위로금 인상 : 2015년 1월
- 병 상해보험금 지급 : 2015년 3월(예정)

장병 전투임무수행 및 복무여건 향상을 위한 장병 보급품 보급 확대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99)

■ 장병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어 장병의 전투임무 수행과 복무여건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방탄복 등 개인장구류의 경우 노후하거나 부족한 물자 위주로 보급함으로써 야전부대 전투력 발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를 해소하고자 2015년에는 장병 전투력 발휘에 핵심적인 필수 개인장구류를 하나로 묶어서 부대 단위로 집중 보급하여, 연말까지 전방 GOP사단 전투부대에 100% 신형으로 교체되도록 추진합니다.

※ 핵심 개인장구류 5종 : 방탄복, 방탄헬멧, 개인천막, 전투배낭, 전투조끼

- 또한, 입대 시 1매 보급되던 동운동복 및 베갯잇(피)을 2015년부터는 입대 시 2매 지급하는 것으로 보급기준을 확대하여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개인일용품은 보충보급품 8품목 중 4품목 즉, 세수·세탁비누, 치약, 칫솔에 대해서만 현금지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보충보급품 8종 전 품목에 대해 현금지급으로 전환하여, 장병들이 개인 선호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개인일용품 보충보급품 8종 : 세수·세탁비누, 치약, 칫솔, 휴지, 가루비누, 면도날, 구두약

장병 피복·장구류 보급 확대

■ 추진배경 : 장병 전투임무수행 및 복무여건 향상을 위한 개인장구류, 동운동복, 베갯잇(피)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확대

■ 주요내용

- ① 핵심 개인장구류 집중 보급(2015년까지 전방 GOP사단 전투부대에 100% 보급)
- ② 동운동복,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초도 1매 → 초도 2매 지급)
- ③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확대(세수·세탁비누, 치약, 칫솔 → 세수·세탁비누, 치약, 칫솔, 휴지, 가루비누, 면도날, 구두약)

■ 시행일

- ① 핵심 개인장구류 집중 보급 : 2015년 7월 이후 보급 시작(연말까지 보급 완료 예정)
- ② 동운동복,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 2015년 7월(잠정, 계약 및 조달기간 필요)
- ③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확대 : 2015년 3월 이후

지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해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

국방부 시설기획과 (☎ 02-748-5859)

■ 2015년 4월 16일부터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 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 등”)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뢰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배상에 관한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위로금 등을 지급신청 할 수 있는 피해자는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다만,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피해자 등은 2017년 4월 16일까지 위로금 등을 지급 신청하여야 하고, 지뢰사고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국방부 관계법령(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추진배경 : 지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 주요내용

- ① 위로금(사망자), 의료지원금(상이자, 치료·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
- ② 위로금 등 지급절차 : 피해자 등이 위로금 등 지급신청 ▶ 사실조사 및 지급결정 ▶ 결정서 송달 ▶ 위로금 등 지급

■ 시행일 : 2015년 4월 16일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으로 군 부패행위 처벌 강화

국방부 법무과 (☎ 02-748-6818)

- 군납비리, 방위산업비리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 군인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 외에 수수한 금액 또는 횡령·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2014년 12월 12일부로 도입하였습니다.
- 또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군인이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군인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나아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군인 징계령」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군무원에 대해서도 2014년 10월에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여, 2015년 4월 16일부로 징계부가금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품수수과 공금횡령 군인·군무원에게 징계부가금 부과

- 추진배경 : 공직자에 대한 청렴 요구 증가
- 주요내용
 - ① 금품·향응 수수(授受)와 공금을 횡령(橫領)·유용(流用)한 군인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 시행일 : (군인) 2014년 12월 12일, (군무원) 2015년 4월 16일



국산 SW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위사업청 획득기반과 (☎ 02-2079-6328)

- 국산 상용SW를 적용하는 경우,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상용 SW :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SW 중 구매하는 SW(운영체계, 미들웨어, 응용SW)로서 내장형 SW와 구분됨

- 핵심기술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시 국산 상용SW의 적용 여부와 적용 방안을 평가합니다.
 - 핵심기술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SW 중심사업은 2점**, 그렇지 않은 사업은 1점을 **국산 상용SW 적용 항목에 배정**하였습니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국산 상용SW 적용 여부를 평가합니다.
 - 전체 **SW 국산화 항목의 배점을 0.5점 상향 조정**하고 **상용SW 국산화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여, 국산 상용SW 적용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산 상용SW를 적용하는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SW의 국산화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행정규칙>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국산 SW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 추진배경 : SW 국산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무기체계 SW 국산화 향상

■ 주요내용

-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시 국산 상용SW 적용 평가항목 및 배점 신설
-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시 SW 국산화 평가배점 상향 조정 및

- 시행일 : 2015년 1월

저가낙찰 방지 및 기술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한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사업운영평가팀 (☎ 02-2079-5032)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연구 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을 개정·시행합니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 시 비용평가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제안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여, 무리한 비용절감 대신 우수한 기술능력을 보유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제안비율 : 제안가격 ÷ 사업추정가격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무기체계 연구 개발사업에서 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저하, 주계약업체의 원가압박이 중소협력업체에 전가되는 현상 등이 개선되어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지침

저가낙찰 방지 및 기술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한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연구개발 여건 현실화를 통한 무기체계 품질 저하 방지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시 비용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제안비율 제안가격/사업추정가격)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
- 시행일 : 2015년 1월

■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재도전 기회 제공 및 지원대상 확대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02-2079-6442)

■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기업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국산화 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개발 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실패한 경우에는 개발이 중단되었으나, 앞으로는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개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실패 위험성이 높아 꺼려하던 **고난이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대상을 양산 및 운영 유지 중인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에서 **체계개발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핵심부품까지 확대**하였으며, 소재 및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재와 소프트웨어도 국산화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재도전 기회 제공 및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고난이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 및 소재, SW 등의 국산화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성실실패 재도전 제도 도입(성실실패 기업에 최대 2년간 재도전 기회 제공)
- ② 체계개발 단계의 핵심부품 및 소재와 소프트웨어까지 개발 지원대상 확대

■ **시행일** : 2014년 12월

■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 적용

방위사업청 물자규격팀 (☎ 02-2079-4690)

-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 군수품 보급을 위해 시중 공산품에 적용하고 있는 KC 안전기준과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 마크) 표시 방법 등 세부 내용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15년부터 KC 마크가 부착된 섬유·피복류 군수품을 보급합니다.

* KC : Korea Certification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필요한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고, 세부 적용요건은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 또한, 군수품의 계약상대자는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KC마크를 표시하여 납품합니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군 장병이 입고 활동하는 피부 접촉성 섬유·피복류 군수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발암성 물질 및 아토피 등 피부질환 유발물질로부터 안전한 군수품을 조달하여 군 장병의 복지향상은 물론 군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방위사업법령>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KC 마크 적용

- 추진배경 : 인체 유해물질로부터의 군수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 도모

■ 주요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
- ②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유해물질 안전 관련 품질보증 적용기준 반영
- ③ 유해물질 안전 관련 품질 검사를 거쳐 합격된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표시

- 시행일 : 2015년 3월(잠정, 2015년 조달분부터 적용)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3)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하여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 '14년도에는 선호시기(2~5월) 추첨제, 기타시기(6~12월) 선착순 제도 운영으로 특정 시기의 입영집중현상과 추첨 탈락자의 불만이 가중되어 '15년도에는 전면 추첨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 모든 의무자에게 선택기회 부여로 병역이행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타시기 선착순 운영 시 동시 과다접속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지연 및 다운 빈발 현상을 해소 하였습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뉴스마당>공지사항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추진배경 : 특정시기 입영집중 현상 및 추첨탈락자 불만 해소
- 주요내용
 - '15년 입영일자 본인선택 전면 전산 추첨제 도입
 - ※ 다만, 1월은 입영기일이 촉박하여 재학생입영원으로 입영일자 결정
- 시행일 : 2015년 2월 입영자부터



306보충대 해체 후, 사단 직접 입영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3)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14년말 306보충대가 해체되고, '15년부터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의무자가 직접입영하는 입영체제로 변경됩니다.
- 기존 경기지역에 입소하는 의무자의 경우 306보충대에 입소한 후 관할 사단으로 분류되었으나, '15년부터는 보충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함에 따라 부대에 보다 일찍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추진배경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부대 개편계획의 일환
- 주요내용
 - '14년말 306보충대 해체 후, '15년부터 사단신병교육대대로 직접 입영
- 시행일 : 2015년 1월 입영자부터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42)

- 현역 모집병에 지원하여 면접, 체력검사 등의 모집 전형에 참석한 사람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현역 모집병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병역이행으로 보아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부터는 전형 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여비지급은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2회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 추진배경 : 면접·체력검사 등 현역병 모집 전형에 참석한 사람에게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함으로써 국민 부담 경감 및 병역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① 현역병 모집 지원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병역의무 이행의 한 과정으로, 면접·체력검사 등 전형에 참석한 사람에게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
 - ②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2회까지 확대 지급
- 시행일 : 2015년 1월 전형 참석자부터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53)

- 그동안 현역병 모집 선발 시, 고교 내신 성적 또는 수능성적을 모집 선발 평가요소로 높게 활용하였으나, 앞으로 **학업성적 반영 비율을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 우선 2015년 1월부터는 각 군별로 달리 적용하던 성적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반영 비율을 대폭 축소(35%)할 예정입니다.
- * 종전 군별 성적반영 비율 :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
- 향후 기술 중심의 지원병은 2016년 1월 입영자부터 성적 반영을 완전 제외하여 자격·면허, 전공 위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

- 추진배경 : 현역병 모집 지원을 증가로 반복 불합격자 다수 발생에 따른 성적 반영 등 현행 선발 평가요소 개선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① 모집병 선발 평가요소 중 성적 반영 축소 및 각 군 반영 비율 동일하게 적용
* 현행(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 → 개선(각 군 35%)
 - ② 향후, 기술 중심의 지원병은 성적반영 완전 폐지, 자격·면허, 전공 위주로 선발
- 시행일 : ① 2015년 1월 입영자부터
② 2016년 1월 입영자부터



육군 분 · 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49)

- 현행 징집병으로 배치하는 1·3군 야전군 소총병을 우수자원으로 선발 배치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분·소대전투병」모집제도를 신설합니다.
-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키(신장) 165cm, 몸무게 60kg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 1차로 전산추첨을 통해 모집계획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신체등위와 고교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GP와 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며, 명예회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육군 분 · 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 추진배경 : 1·3군 야전군 소총병을 우수자원으로 선발 배치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 전투력 강화
- 주요내용
 -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 * 매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 접수
- 시행일 : 2015년 1월 입영자부터



성실복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가의 가산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10)

- 2014년 11월 10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성실히 복무한 사람은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추가로 가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가산의 경우

- 병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2일 가산
- 병가를 1회만 사용한 경우 : 1일 가산

- 사회복요원은 복무 중 통산 3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병가 미사용자와 사용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병가 미사용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복무기간 중 무단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가산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가산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이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병가의 사용자와 미사용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병가의 미사용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무단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가산함
- 시행일 : 2014. 11. 10.부터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3)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 지금까지는 현재 지정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었으나, 근로조건 열악 등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전직 제한기간(1년)까지 다른 업체 근무가 불가하여 중도 퇴사하는 등 근로권익 침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직 제한기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15년부터는 현재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하게 되면 다른 업체로 옮겨 계속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 추진배경 : 근로환경 등 회사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권익 보호
- 주요내용
 - 전직할 수 있는 최소 근무기간 단축 :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시행일 : 2014. 11. 10.부터

08

문화 · 통신 · 미래

재난사고 · 학교/가정폭력 피해자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044-203-2764)

- 재난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예술치유) 상담학,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유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내면의 역동을 읽어내고 미술, 음악 등 각종 예술 매체를 이용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

- 전문 예술치료사(미술, 음악, 무용 등)를 통한 1:1 또는 소규모 집단치유(10명 내외)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 (참고)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6)

■ 대중 이용시설인 민간체육시설의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및 안전위생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체육시설업소(등록·신고 체육시설업) 내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등록(3종)·신고(14종) 체육시설업 현황 : 56,124개소(2013년 기준)

- 스키장 안전시설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스키구조요원, 리프트 승차장 승차보조요원을 증원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 안전망 설치는 지면으로부터 1.8m(설면으로부터 1.5m 이상) 이상, 안전매트 두께는 50mm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 슬로프길이 1.5km 이상인 경우 구조요원을 2명→3명으로, 리프트승차장 보조요원을 1명→2명으로 증원하도록 했습니다.

-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수질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영장 탁도기준을 2.8NTU→1.5NTU로 강화하고 중금속(비소, 수은, 알루미늄)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공포·시행일 : 2014.12.22.(시행 공포 후 6개월)

■ 주요내용

- ① 체육시설 내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 의무화, 체육시설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
- ② 스키장 안전 강화
 - 안전망의 설치는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설면으로부터 1.5m 이상)
 - 스키구조요원 증원(2명→3명) 배치(슬로프 길이 1.5km 이상 시)
 - 리프트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증원(1명→2명) 배치
- ③ 수영장 안전위생기준 개선
 - 수영장 물의 탁도기준 강화(2.8NTU→1.5NTU)
 - 중금속 기준 마련(비소 0.05mg/l이하, 수은 0.007mg/l 이하, 알루미늄 0.5mg/l 이하)

■ 스포츠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3)

■ 2015년부터 스포츠 분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펀드 조성을 추진합니다.

- 스포츠 분야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주도형 투자조합을 결성,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의 스포츠산업 용자와 달리 펀드는 스포츠 관련 사업의 '창의성', '수익성', '성장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용자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스포츠산업펀드를 통해 스포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및 기존 스포츠 관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 목적 :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조성 통해 국내 스포츠 관련 산업 투자 및 발전 촉진
- 투자내용 : 정부주도형 투자조합
 - * 모태펀드 스포츠계정 → 자펀드(투자조합) 조성·운용
- 펀드 결성 목표액 : 총 400억 이상
 - 모태펀드 스포츠계정 출자 : 200억원(문체부→한국벤처투자(주)→투자조합)
 - 민간·기관투자자 출자 : 200억 이상(투자자→투자조합)
- 투자대상 : 스포츠산업 분야의 창업자·중소기업 등
 - 스포츠 용품, 스포츠 시설 및 설비, 스포츠 서비스, 스포츠 용·복합 분야 기업 및 스포츠 이벤트 등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 044-203-3165)

- (태권도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게임·드라마·영화 등 태권도원 소재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은 투자자와 연계하여 제작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내 및 해외사범과 연계하여 한국어·영어·중국어·일어권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콘텐츠 스토리를 통해 태권도원을 홍보하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 (태권도 공동브랜드 개발) 태권도 단체 간 활용협약을 체결하고, 단일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상표권 활용 및 휘장사업 등 신(新) 시장 창출할 계획입니다.
 - 국기원 주관 세계 무도종합대회 등 참가선수 용품(도복 등) 부착시킬 계획입니다.
- (무주 관광자원과 연계된 태권도 통합관광권 시행) 태권도원과 연계된 안국사 템플스테이, 반딧불 축제, 무주군 체험농장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하여 일반인들이 통합관광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절·지역 연계 가능 축제〉

• 구천동철쭉제(봄), 반딧불축제(여름), 덕유산단풍축제(가을), 남대천 얼음 축제(겨울)과 연계

창조관광사업을 관광 창업 지원에서 유망 관광사업체의 맞춤형 성장 사다리로 확대 개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44-203-2816)

- 창업 초기 관광기업과 중소 관광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금융조달 체계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 종전에 1개 년도에 한해 창업 자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창조관광육성펀드’를 조성·운영하여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자금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하여 한국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에 모태펀드 관광계정을 신설하여, 관광기금 13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 또한 민간투자자들에게 유망 창조관광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창조관광사업’을 지정 제도로 정비하고, 종전의 ‘창조관광사업’을 2단계로 개편합니다.
 - (1단계 : 예비 창조관광사업 발굴·육성) 먼저, 참신하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희망자는 ‘예비 창조관광사업’을 통해 창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 (2단계 : 창조관광사업 지정) 예비 창조관광사업자 중 유망 기업은 ‘창조관광사업’으로 지정받아 ‘창조관광육성펀드’의 우선투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예비 창조관광사업자 뿐만 아니라, 참신하고 혁신적인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중소 관광사업체가 ‘창조관광사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 ☞ (참고)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공모전 홈페이지(www.venture-visitkorea.com) : 추후 개편 예정

2015년 창조관광사업 추진계획

■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계획

- 공모 기간 : '15. 2월 중(예비창조관광사업) * 창조관광사업 지정은 추후 공고 예정
- 공모 대상 / 선정(지정) 규모
 - (예비 창조관광사업) 참신하고 혁신적인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으로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 40개 사업체
 - (창조관광사업) 유망 예비 창조관광사업 및 중소 관광사업체 / 제한 없음
- 지원 내역
 - (예비 창조관광사업) 사업화 지원 * 사업 당 평균 3천만 원
 - (창조관광사업) 창조관광육성펀드의 우선 투자 대상 및 정부 시상
- 사업 예산 : 총 154억원(예비창조관광사업 24억원/ 창조관광육성펀드 130억원)

■ 창조관광육성펀드 조성·운용

- 조성규모 : '15~'19년까지, 총 1,000억/ 관광기금 500억, 민간 500억
 - * '15년 제1호 펀드 출시 총 260억/ 관광기금 130억, 민간 130억
- 투자대상 : 중소 벤처기업(콘텐츠, 프로젝트)
 - * 주목적투자비율 : 관광산업 60%(창조기업 20~30%), 기타분야 벤처기업
- 출자비율 : 정부와 민간 출자비율 50:50
- 존속기간 : 결성일로부터 8년 (2년 연장 가능)
- 투자기간 :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

장애인·노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지 조성 시범 사업의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향유권 보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44-203-2816)

- 장애인, 노인 또는 유아 동반가족도 이동의 불편이나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이 관광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5 열린 관광지」 사업이 새롭게 실시됩니다.
- 매년 전국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2억 원 한도 내에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정된 후보지는 각 관광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연말에 소비자 평가 등을 통해 그 해의 1호 ~ 5호의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는 명예가 주어집니다.
-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으며, 개선 계획이 충실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미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사업 공고일 부터 확인 가능

2015년 열린 관광지 사업 추진계획

- 「2015년 열린 관광지」사업 추진계획
 - (사업목적)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 활동 여건 조성으로 관광 향유권 보장 및 고령사회 등 미래 관광산업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공모대상 및 규모/ 지원액) 전국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5개소/개소 당 2억 원 한도 내
 - (지원내용) 장애인, 노인 관광 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 개보수, 안내체계 개선, 종사자 교육 등
 - (사업추진기관) 한국관광공사
 - (추진 일정) 접수('14.12.29 - '15.1.30), 심사('15.2.10 - '15.3.15), 개보수 지원 및 컨설팅('15.4월-12월), 1호- 5호 열린관광지 현판식 및 2016 열린관광지 공모('15.12월)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으로 등급제도 신뢰성 향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044-203-2834)

- 호텔 등급제도가 전면 개편되며, 평가의 내실화·일관성 확보를 통해, 관광객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호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등급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 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제로 개편하고,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이원화 되어 있는 평가 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 ☞ (참고) 등급별 평가기준, 평가방식,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토대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044-203-2841)

■ 관광사업으로의 일반야영장업 신설과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포함되어 있어 일반야영장업의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일반야영장업 신설로 인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반야영장업을 신설,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존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안전 관련 기준을 보완함에 따라 국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참고) 야영장의 관광사업 등록여부는 www.gocamping.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 · 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 042-481-4909)

■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를 50% 감면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혜택이 부재하였으나, 2015년 1월 29일부터 4대궁 · 종묘, 조선왕릉 등의 관람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문화재 :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 종묘, 조선왕릉, 유적(여주 영릉)

☞ 문화재청 홈페이지>새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궁 · 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50% 감면

궁 · 능원과 유적 소재지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

- 추진배경 : 4대궁 · 종묘 등 주변 지역주민은 많은 관광객 ·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 등 일상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대정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궁 · 능원과 유적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관람료 50% 감면
- 시 행 일 : 2015년 1월 29일



전국적으로 EBS 무료 교육채널 1개 시범 도입·운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02-2110-1415)

- 2015년 1월말부터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EBS 1개 채널을 추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14.12.23일 EBS에 대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를 허용 하였습니다.
- 지상파다채널방송이란, 동영상 압축기술을 이용해 기존 방송용 주파수 대역에서 추가로 1개 채널을 더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 추가되는 채널에서는 기존 EBS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초중학 교육, 영어교육 및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지상파방송의 무료 콘텐츠 확대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참고) 방통위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방통위, EBS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허용 키로’

■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2110-1553)

- 청소년에 대한 휴대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 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됩니다('15.4)
-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하였으나, 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에게 **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방통위는 **현장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차단 수단을 실제 제공하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이 휴대폰을 가입할 때 유해매체물 및 음란물 접속 차단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음란사이트 등 **성인용 콘텐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법령현황

2015년도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항목

- 추진배경 :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로 청소년이 유해물에 쉽게 노출
- 주요내용
 - ① 이통사(알뜰폰 포함)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음란물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 ② 방통위는 차단 수단 제공 실태 점검 가능
- 시행일 : 2015년 4월

■ 웹하드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2110-1553)

- 웹하드·P2P 사업자에 대해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15.4)
-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우회**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음란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 방통위는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음란물의 주요 유통 창구인 웹하드에서 음란물 차단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 규정으로 **음란물 유통 금지 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법령현황

2015년도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항목

- 추진배경 : 웹하드·P2P 사업자에 대해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규제 미흡
- 주요내용
 - ① 웹하드·P2P 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되고, 이의 **제거·변경·우회**를 금지(위반시 2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 ②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 기록·보관
 - ③ 방통위는 실태를 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5년 4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02-2110-1274)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15년부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비를 5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기업당 지원규모는 **방송광고 제작비의 50%** 범위내에서 **TV광고는 최대 5,000만원**까지, **라디오 광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 * 벤처 · 이노비즈 · 메인비즈기업 / 우수 녹색 경영 · 녹색인증 중소기업 /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 / IP (지식재산) 스타기업 등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은 기존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최대 70% 할인)**지원과 연계하여 제작비와 송출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가장 좋은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많은 비용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방송광고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업인지도 향상과 마케팅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지원팀 (☎ 02-2110-1297)

■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 '15년 상반기에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치하여 서울권역 시청자에게도 **미디어 교육 등 시청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부산, 광주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서울 성북지역에 설치·운영합니다.

*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 지역 : 부산('05), 광주('07), 인천·대전·강원('14)

- 서울지역 1,000만 시청자에게 **미디어교육, 방송제작 장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해,
 - 지역 청소년의 미디어 창작 활동이 증대되고, 방송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시청자의 방송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대상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 02-2110-1833)

- '15년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됩니다.
 - 현재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5천만원이 넘고 GS인증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여야 하지만 '15년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도 분리발주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이에 상용 소프트웨어 조달 등록 활성화, 상용SW 제값주기, 발주자의 분리발주의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조달구매를 통해 분리발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제외사유 적용 증가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검토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 발주기관이 조달 발주를 통해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적용 할 경우, 발주의뢰 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제외사유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합니다.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및 중소기업 범위 확대적용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 02-2110-1833)

- '15년 1월부터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 사업에도 대기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한시적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면 참여가 허용되었으나,
 - 이후부터는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 사업이더라도 유지 및 보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SW산업진흥법 제24조의2)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중이던 2개 기준(상기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3년 평균) 기준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정보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종전의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되었고,
 - 매출액 규모도 종전 300억원 이하에서 800억원 이하로 변경되어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 시행됩니다.

〈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15.1월 시행) 〉

- 제3조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 (별표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015년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전면 개편

■ 추진배경 :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중인 2개 기준(상기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 (3년 평균)기준으로 단일화

■ 주요내용 : 정보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변경

법상 적용기업 \ 적용시기	종 전(~'14.12월)	변 경('15.1월)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이 800억원 이하

■ 시행일 : 2015년 1월(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공개SW R&D 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팀 (☎ 02-2110-1805)

■ 우수 공개SW 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개SW 개발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 및 **수행기업 납부 기술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 **공개SW 개발과제** :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SW 개발 및 유지관리하는 전 과정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방식으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 40조 공개소프트웨어 특례조항'에 따라 과제 추진

** **기술료** : 정부 R&D 과제를 수행해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정부에 출연금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

- 지금까지 공개SW 기술개발 과제 수행 기관은 일반 과제와 동일하게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5% 이상)과 기술료(정부 출연금의 10% 이상)를 부담·납부하여 왔습니다.
- 하지만 2015년 1월부터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공개SW 연구개발과제는 민간부담금과 기술료가 면제됩니다.**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부속훈령

-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SW 개발 방식과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구 성과를 글로벌화 하고, 우수 결과물의 지속적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공고 제2014-501~505)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5년도 공개SW 개발과제 관련 규정 변경 내용

- 추진배경 : 우수 공개SW 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개정내용
 - ① 민간부담금 면제(총사업비의 25% 이상 → 면제)
 - ② 기술료 면제(정부출연금의 10% 이상 → 면제)
- 시행일 : 2015년 1월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본격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신산업팀 (☎ 02-2110-1722)

■ '14년 수립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단지 조성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 국제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여 사물인터넷 분야의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개방형 IoT 플랫폼의 소스를 공개하여 개발자들의 사물인터넷 제품, 서비스 개발이 쉬워집니다.

- 유망 사물인터넷 분야(스마트시티, 헬스케어)의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이용자 중심형 리빙랩을 설치하여 신서비스를 발굴합니다.

-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추진단'과 '사물인터넷 실증센터' 운영을 통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들을 발굴하여 실증합니다.

-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사물인터넷 우수 시제품을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리빙랩* 실증공간이 조성됩니다.

* Living Lab : 혁신과정에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용자 주도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 실제 생활 현장(real-life setting)에서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현장 실험실이자 베타 테스트베드

- IoT DIY 환경을 확산하여 누구나 사물인터넷 신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 누구나 사물인터넷 아이디어를 구현시켜볼 수 있는 DIY 오픈 랩은 현재 수도권(강남, 송도, 용인)에 3개소 설치되어 있지만, '15년에는 지역에 2개를 추가하여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찾아가는 DIY 체험교실,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여 초등학생들이 사물인터넷을 직접 체험하고 만들어 볼 수 있게 됩니다.

- IoT 혁신센터를 통해 사물인터넷 관련 개발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도움을 받기가 용이해집니다.
 - 지역의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혁신센터, 무한상상실 등과 협력을 확대합니다.**
 - IoT 아이디어를 연중 공모하여 더 많은 **사물인터넷 스타트업이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가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 사물인터넷 글로벌 협의체’의 IoT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지원하여 **사물인터넷 중소기업들이 제품 개발, 해외 진출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우리나라의 유망 **사물인터넷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도록 전문 전시회, 해외 프로젝트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지원 내용

- 추진배경 :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른 사물인터넷 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
- 주요내용
 - ① 국제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 개발 및 IoT 생태계 구축
 - ②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신서비스 발굴·실증
 - ③ IoT DIY 환경 확산을 통한 신제품 개발 지원
 - ④ IoT 혁신센터를 통한 중소벤처 기업 지원
- 시행일 : 2015년~

■ 대학의 연구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간접비 산출방식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 02-2110-2731)

■ 대학별 연구환경에 적합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간접비 산출방식을 개선합니다.

- 그동안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등급에 따른 일괄적용 방식*이었으나, '15년부터는 전 대학을 대상으로 실소요 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출할 계획입니다.

* A등급 20%, B등급 15%, C등급 10%, D등급 5%

- 또한, 대학의 연구비 관리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간접비 가·감율을 정비하였습니다.
 - 국가R&D사업 참여제한에 따른 최대감율을 -2.8%p에서 -5.0%p까지 확대하고, 연구비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간접비를 $\pm 2\%$ 범위에서 차등 가·감할 계획입니다.

2015년 新 학기부터 150여명 규모로 ICT 학점이수인턴제 실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 02-2110-2856)

- 정보통신·정보통신 융합분야 기업, 학생, 대학을 대상으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학점을 이수하는 「ICT 학점이수 인턴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본 제도는 지난 2월 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학점이수인턴제’ 조항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 ICT 및 융합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R&D/서비스 개발, 특화 분야, 근무 관련 정보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기업에 지원, 소정의 과정을 거쳐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제도에 참여코자 하는 기업·대학은 신청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참여 기업 및 대학 등에는 근무 현장 구축, 전담 인력 배정, 사전 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여러 제반 사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2015년 신학기부터 학점이수인턴제 시행

2015년도 ICT 학점이수 인턴제 시행

- 추진배경 : 「ICT 특별법」, 대통령 지시사항('14.4.10, 국가과학자문위), 「공과대학 혁신방안」 등에 반영된 학점이수 인턴제를 추진
- 주요내용
 - ① 정보통신 융합 등 분야와 관련한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등에서 근무하면서 R&D, 서비스 개발 등에 참여하는 「ICT 학점이수 인턴제」를 시행('15년 150여명 규모)
 - ② 기업에서 발굴한 R&D, 서비스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 등이 학칙 또는 하위 규정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
 - ③ 제도 참여에 지원한 기업 및 대학 중 적정 기업 및 대학에 대해 시설 구축, 기자재, 지도 인력 배치 등을 지원(시행령 제15조)
- 시행일 : 2013년 3월(1학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 02-2110-2958)

■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 신고인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로 공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 최초 등록 후 매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공사업자의 경영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시 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여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실태조사를 통한 확인 등으로 공사업자의 건전성 확보는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과제 선정('14.3.20,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에 따른 비용절감 기대 효과 : 매년 총 12.8억원(공사협회 분석자료)

☞ (참고) 국화-의안정보시스템>처리(의안)법률안>「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

■ 추진배경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경감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 주요내용

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제도 폐지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 최초 등록 후 매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 시행일 : 2015년 3월 예정(본회의 의결 : 2014.12.9)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 02-2110-1947)

■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부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에
발신번호 변작방지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됩니다.('15.4.16)

- 앞으로 통신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특히,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만으로 문자발송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현재 인터넷발송 문자는 서비스 특성상 발송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발신번호 조작이 용이함에 따라 스미싱, 문자폭력 등에 악용

- 또한,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번호 변작이 발생한 통신사를 신속히 확인하여 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게 됩니다.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신번호 변작방지 등 통신사의 주요 조치 내용

■ 추진배경 :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화

■ 주요내용

- ① 발신번호 변작방지, 국제전화 안내 등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 ② 발신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중지
- ③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의 등록제 도입

■ 시행일 : 2015년 4월 16일(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 등록은 '15.10월까지)

09

농식품·산림·해양

■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실 (☎ 044-201-1382)

■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 '15년 6월부터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한사항** :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통상 건축, 토지는 10년 / 기계, 장비는 5년) 동안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 등과 같은 재산처분이 제한

■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보조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이 필요하나,

- **보조사업자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매수자·금융기관 등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승인없이 임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전남지역 민간보조시설 907개 중 88개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담보제공 되거나 제3자에게 매매(감사원 감사결과, '13. 9.)

■ 부기등기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승인없이 임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처분하는 비정상적 사례가 사전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시행

- 추진배경 :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의 임의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 사례 방지
 - 주요내용
 -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건축물 등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
- (기재예시) 동 재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것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보조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 시행일 : 2015년 6월(잠정, '14.12.9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강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7)

- 건실한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유치 및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 먼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영농조합법인만 가능했지만 농업회사법인도 관광휴양 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이 가능해집니다.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법인채무에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였으나, 2015년 6월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한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여 부담을 낮췄습니다.
-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그간 **합명·합자회사**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한·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영농조합법人间 합병·분할의 근거와 절차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12 공포, '15.6 시행 예정)

농업법인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농업법인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여 투자유치 및 경영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확대(농업경영, 가공·유통 등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포함)
- ②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범위 조정(무한연대 책임 → 출자액 한도)
- ③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 유형 확대(합명·합자회사만 가능 →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가능)
- ④ 영농조합법인 간 합병·분할 가능

■ 시행일 : 2015년 6월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54)

■ '15년부터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인프라 정비, 주택 개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 슬레이트 지붕 교체, 단열 강화 등 주택 개량과 상·하수도 설치, 진입로 확장, 옹벽 보강 및 빈집 철거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동 사업은,
-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15.3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3~4년간 최대 70억원(국비 기준)이 지원되는 동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지역위소식>보도자료>“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 내년도 예산으로 구체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 추진배경 :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

■ 주요내용

- ① 생활·위생 인프라 : 상·하수도 설치, 빈집정비, 골목정비 등
- ② 안전확보 : 재해예방시설 설치, 소방도로 확장, 노후시설 보수 등
- ③ 주택개량 : 슬레이트 지붕 개량, 벽체·창호 단열 등

■ 시행일 : '15년 3월(사업대상지 선정)

■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안전·화재)가입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044-201-1592)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체험객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학교 등 다양한 체험객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나, 보험료 부담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약 50%만이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2015년부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안전·화재 보험 가입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보험료의 50%→20%)하여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농촌관광 포털(www.welchon.com)>사업소개>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2015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전사고 대응력 확대
- 주요내용
 - ① 마을의 안전·화재 보험료 자부담 축소(50%→20%)
- 시행일 : 2015년 3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4)

-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38,250원에서 40,95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015년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
- 주요내용
 - ① 기준소득금액을 상향 조정(85만원→91만원)
 - *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 확대(38,250원→40,950원)
- 시행일 : 2015년 1월

‘농업경영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수입(收入) 보장보험이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80)

■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이 도입됩니다.

-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가격하락 또는 수확량 감소로 인해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3~'14년 도상연습*(11품목, 1,500농가)결과, 도입 타당성이 높은 **양파, 콩, 포도**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 수입보장보험 도상연습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금전의 수수 없이 가입, 손해평가, 보험금 산출 등을 실시하는 가상의 정책수행 방식

- 도상연습 결과에 따르면, 보험가입 농가의 수입변동성이 감소(양파 22%, 포도 27%)하여 경영안정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양파, 콩, 포도) 도입

■ 추진배경 : 농업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영위험에 대비

■ 주요내용 :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실시(양파, 콩, 포도)

※ 지급보험금 = 보장수입(과거 기준수입 × 보장률) - 실제수입

- ① 기준수입 : 개별농가의 과거 평년수확량과 과거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곱
- ② 실제수입 : 개별농가의 실제수확량과 시장가격의 곱
- ③ 보장률 : 가입자가 보장수준을 고려하여 60~80% 수준에서 선택

■ 시행일 : 2015년 6월(보험 판매개시)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8)

- '12년~'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위의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25만원/ha의 밭농업고정직불금이 지급됩니다.
 - 한편,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40만원/ha*의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됩니다.
 - * 밭농업고정직불금 25만원/ha 포함
 - 또한,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논에 대해서는 '14년보다 10만원 인상된 50만원/ha을 지급합니다.
- 한편, 본인이 경작하는 논을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허용기준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밭농업직접 지불제사업

2015년도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 주요내용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을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
 - ① 밭고정직불제 도입(모든 밭작물에 대해 25만원/ha 지급)
 - * 다만, 기존 밭농업직불대상인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40만원/ha 지급 (밭농업고정직불금 25만원/ha 포함)
 - ②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재배시 직불금 인상(40만원/ha→50만원/ha 지급)
- 시행일 : 2015년 1월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6)

■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100만원/ha 으로 인상합니다.

- '14년 지급단가(90만원/ha)보다 10만원 인상(증 11.1%)됨에 따라 농가는 평균 11만원 (평균 재배면적 1.1ha 기준)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귀농인 등 신규농의 경영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쌀직불금(고정, 변동) 지급대상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쌀직불금 신규 진입 농가의 경우에는 ▲'12년 이후부터 쌀직불금 등록 직전연도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에서 ▲1천㎡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15년도 쌀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2년이상 경작면적 1만㎡이상 또는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 (개선) 1년이상 경작면적 1천㎡이상 또는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2015년도 쌀직불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지원

■ 주요내용 :

- ① 쌀 고정 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90만원/ha→100만원/ha)
- ②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2년이상 경작면적 1만㎡이상 또는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1년이상 경작면적 1천㎡이상 또는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시행일 : 2015년 1월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6)

-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6개 용자 사업(잔액기준 3.2조원)의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 대상자금 3.2조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매년 약 336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 대출 농가 당 약 20만원의 금융 부담 절감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기대

대상사업	기존금리	변경금리
농기계구입자금	3%	2%
귀농인창업지원자금	3%	2%
긴급경영안정자금	3%	2%
축산경영종합자금	3%	2%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3%	2%
농업경영회생자금 *	3%	1%

- 적용대상은 '15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점부터 적용됨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추진배경 :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 주요내용

- ① 용자사업 이자율 인하(농기계구입자금 · 귀농인창업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축산 경영종합자금 ·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 3%→2%, 농업경영회생자금 : 3%→1%)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점부터 적용됨

■ 시행일 : 2015년 1월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 044-201-1797)

■ 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보장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대상품목) 2015년부터 **시설무·백합·카네이션**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품목이 **46개로 확대**됩니다.
- (보장범위) 과수 5품목에 대해 일부 재해(태풍·우박 등)만 보장하던 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합니다.
 - 2015년에는 종합위험보장방식 적용 품목에 **사과가 신규로 추가**(3개 시·군)되며, 기존에 적용되던 **배·단감은 사업지역이 확대**(배: 12 → 30, 감: 3 → 12)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작물재해보험, 보험대상품목 및 종합위험 보장방식 확대

2015년도 농업재해보험사업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추진배경 : 현장 수요에 부응한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주요내용

- ① 대상품목 확대(43 품목 → 46품목)
- ② 보장범위 확대
 - 종합위험보장방식 전환('14:배·단감 → '15:배·단감·사과)
 - 사업지역 확대 : 배(12개 시군 → 30), 단감(3 → 12), 사과(신규 3)

■ 시행일 : 2015년 2월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8)

- '1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매 지원단가가 3만원/3.3㎡ 에서 3.5만원/3.3㎡으로 인상됩니다.
- 그 동안 농지가격 상승률을 고려한 것으로 전업농의 농지매입 부담이 줄어들고, 영농 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농지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농지매매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 농지규모화사업

2015년도 농지규모화사업의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 추진배경 : 전업농의 농지매입 부담 완화 및 영농규모화를 촉진
- 주요내용
 - ①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3만원/3.3㎡→ 3.5만원/3.3㎡)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쌀 관세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44-201-1822)

- 2015년 1월 1일부터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쌀도 관세화(tariffication)** 됩니다.
 - * 관세화란 수입물량제한 등 관세 이외의 수입제한 조치를 없애고 이를 국내·외 가격차이로 계산한 관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해진 관세(513%)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난 20년동안 관세화 유예 대가로 의무적으로 저율관세(5%)로 수입했던 물량 408,700톤은 **5%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되며 국내 시장에 미치는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 만약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특별긴급관세, SSG)**하여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입니다.
- 또한,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 참고로, 정부는 WTO 농업협정에 근거하여 쌀 관세율을 513%로 적용하고 수입 급증시 추가 관세를 부과(특별긴급관세, SSG) 할 수 있도록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9.30)** 하였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요정보 바로가기>쌀 관세화 유예종료(특별 홈페이지)

쌀 관세화 시행

- 추진배경 : WTO농업협정 이행 및 국내 쌀 생산기반 보호
- 주요내용
 - ① 관세화 시행(의무수입물량 5% 관세→의무수입물량 5% 관세 및 수입쌀 513% 관세)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 · 판매 금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44-201-1815, 1820)

- 2015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 · 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 · 판매가 금지됩니다.
 - 금번 혼합금지 조치로 쌀에 대한 원산지 및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 및 유통거래 질서가 확립됩니다.
 - * 혼합 금지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 · 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며,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
 - 또한, 양곡의 거짓 · 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금번 조치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정부는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 · 판매 금지 실시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 · 판매 금지

- 추진배경 : 쌀 부정유통 방지 및 유통거래 질서 확립
- 주요내용
 - 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 · 판매 금지
 - ②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 · 판매 금지
 - ③ 처벌규정 강화(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044-201-2074)

- 2015년에는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해운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선박 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을 20%에서 '15년(1년간) 25%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하 대상항목은 기본수수료, 할증수수료, 재검사수수료 등 모든 검사항목입니다.
- ☞ (참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사전공표대상정보>이사회 개최 결과>제9차 임시이사회 결과 의안번호 제2014-17호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 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배경 및 내용

- 추진배경 : 해운경기 불황으로 인한 선박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 ①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폭 확대(20% → 25% 인하)
 - ② 인하항목 : 기본수수료, 할증수수료, 재검사수수료
- 시행일 : 2015년 1월1일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17)

■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을 2015년 2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2013년 2월 23일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하였으며,
 -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을 갇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축사면적에 따라 연도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만,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20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축산법 시행령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로 확대

■ 추진배경 :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주요내용

축종	전업규모 초과	준전업규모	소규모		
소	600㎡ 초과	600~300㎡	300~50㎡	50~15㎡	15㎡미만
돼지	1,000㎡ 초과	1,000~500㎡	500~50㎡	50~15㎡	15㎡미만
닭	1,400㎡ 초과	1,400~950㎡	950~50㎡	50~15㎡	15㎡미만
오리	1,300㎡ 초과	1,300~800㎡	800~50㎡	50~15㎡	15㎡미만

* 축사면적

계획	허 가	등 록		등록 (소· 돼지)
		허가(계획) / 시행일		미등록 (닭· 오리)
		'15.2.23일~'16.2.22일	'16.2.23일~	

* 축사면적 50㎡이하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 필요(닭·오리의 경우 15㎡미만은 미등록)

■ 시행일 : 2015년 2월 23일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44-201-2362)

-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성을 위해 돼지·돼지고기이력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 돼지 질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돼지 사육시설 마다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 또한,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돼지고기이력제

2015년도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 추진배경 :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기록·관리를 통해 방역의 효율성 도모 및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주요내용
 - ① 사육단계 : 돼지 사육농가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 ② 유통단계 : 농장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이력번호 발급 및 기록·관리
 - ③ 소비단계 : 스마트폰 앱, 인터넷을 통해 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 가능
- 시행일 : 2014년 12월 28일("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32)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은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여 축산물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국내산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 FTA 체결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직거래 판매장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업대상자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이며,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소당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지원 실시

- 추진배경 :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 한우, 육우, 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비회원조합 등(농·축협은 제외)
 - ② 지원내용 : 직거래 판매장 등 신축 및 임대료(융자금 활용), 냉장·냉동창고, 진열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 ③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30%(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④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
 - ⑤ 2015년 지원규모 : 20개소 (60억원)
- 시행일 : 2015년 1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육계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044-201-2383)

-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육계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는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 산란계와 돼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 육계로 확대하여 **계란,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에도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됩니다.
 - 사육기간과 용도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하여 인증
 - '**동물복지 인증마크**'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사육,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을 통해 운송,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축산물에만 표시할 수 있어 **사육부터 도축까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가 적용**되었음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 정보광장>법령정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2015년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 연차별 확대
- 주요내용
 - ①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대상 축종 확대(산란계, 돼지→육계 추가)
- 시행일 : 2014년 12월 15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044-201-2375)

■ 범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13.2월) 발표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15.3월)으로 무허가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13.5.31)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하였습니다.

-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14.3.24)으로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였습니다.

- '15.3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 또한, 농식품부 및 환경부 합동으로 '14년7월부터 '15년1월까지 '가축사육거리구역 거리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축사거리제한을 재설정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정보광장 > 입법예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추진

■ 추진배경 : 무허가 축사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① 무허가축사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한우 추가,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등)

■ 시행일 : 2015년 3월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044-201-2377)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대, 이동통제, 살처분, 초소 등 방역조치 사항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AI 발생으로 방역대 내(500m 또는 3km 이내)의 가금농가에 대해 전부 이동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였으나,
 - '15년부터는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 방역대 내에서 이동통제중인 가금 및 알에 대해서도 AI 검사 등 안전성 확인 후 출하를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발생지역 및 방역관리지구 중심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축산차량만 탐지 및 선별 소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식품부,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14.8.14)

AI 방역조치사항 변경 주요 추진내용

- 추진배경 : AI 방역조치로 인한 국가재정부담 완화 및 국민불편 최소화
- 주요내용
 - ① AI 발생 시 방역대 내 가금에 대해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 실시
 - ② AI 발생지역 내 거점소독시설 운영하여 축산차량 선별 소독
- 시행일 : 2014년 12월(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44-201-2359)

- 구제역 청정화 획득 및 유지를 위하여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구제역 발생시 엄청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축산농가의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상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소규모·고령 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의 자체 접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접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백신 접종 실효성 향상을 통한 **구제역 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구제역 재발방지 및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백신접종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추진배경 : 전국 상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 등은 자체 접종 어려움을 호소
- 주요내용
 - ①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 지원형태 : 국고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일 : 2015년 1월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044-201-2157)

- 우수외식업 지구 확대를 통한 외식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40퍼센트 이상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 지정요건은 총 매출 규모 및 식재료 구매액에서 외식업소의 수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 * (종전) 해당 지구내 외식산업 관련 총 매출 규모가 40억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관련 식재료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변경) 해당 지구 내 외식업소의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 또한,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등에 지회를 가지도록 한 외식산업 사업자 단체의 인가 요건을 폐지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

- 추진배경 :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외식업 지구 확대
- 주요내용
 - ① 지정요건 완화(외식산업 총 매출 규모가 40억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식재료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외식업소의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 ① 외식산업 사업자 단체의 인가 요건(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등에 지회 확보) 폐지
- 시행일 : 2015년 1월

교육-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식품인력양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044-201-2118)

■ 새로운 트렌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 교육과 취업을 위한 식품 기업의 매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취업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 신 식품 트렌드 직업의 취·창업교육(3개 과정 예정*)
-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 대학생 수출형 중소기업 연수프로그램

* 푸드 셰라피스트, 식품 무역통상, 식품제조기술

- 또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식품기업의 원활한 구인구직을 도모 하고 교육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인력양성 교육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

교육-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확대로 식품인력 양성

- 추진배경 : 식품산업 교육과 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식품인력 양성

■ 주요내용

- ① 교육인프라구축(식품교육 수요조사·분석, 교육프로그램 협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 공모 및 보급, 식품기업 구인·구직 정보시스템 구축)
- ② 교육프로그램 운영(신직업 창업교육 및 NCS기반 대기업 교육프로그램, 대학생·수출형 중소기업 연수프로그램, 사이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시행일 : 2015년 2월(잠정, 신규 사업 구축 중)

對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팀 (☎ 044-201-2172~7)

-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 (정보제공) 대한상의·aT·KREI 등을 중심으로 중국 성(省)별·도시별 수출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제공합니다.
 - (물류) 수출업체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청도 물류기지와 현지 공동물류센터(7개소)를 운영·지원합니다.
 - (통관) 중국의 인증·검사전문 국영기업인 CCIC(중국검험인증집단)를 통해 수출자 등록, 중문 라벨 제작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 (현지화) aT·Kotra·무역협회·대한상의 등과 협력하여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기업에 상품화·마케팅·법률자문 등 현지화 관련 사업을 지원합니다.
 - (온라인 진출) 1호점(1号店), 알리바바(1688.com) 등 해외 온라인 채널 입점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정보 제공, 입점 절차·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홍보·판촉 등도 지원합니다.

☞ (참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2015년도 대중국 농식품 수출 지원 항목

- 추진배경 : 한·중 FTA 활용,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집중지원 추진
- 주요내용
 - ① 성(省)별·도시별 수출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
 - ② 청도 물류기지와 현지 냉장·냉동 물류센터 이용을 지원
 - ③ 수출자 등록, 중문 라벨 제작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④ 현지화를 위한 상품화·마케팅·법률자문 등 지원
 - ⑤ 온라인 입점 절차·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 시행일 : 2015년 3월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각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20)

■ 농업관측 모바일앱 및 SNS를 활용, 농업인·유통인·소비자 등 이용자의 편의성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관측정보는 인쇄물과 PC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14년 농업 관측정보 모바일앱과 SNS(카카오톡스토리)를 개설하였습니다.
 - (모바일앱)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월보, 속보 등 관측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원하실 때 언제든지 농업관측 관련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SNS) 관측정보와 함께 제철농산물·건강 요리법 등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관련정보에 대한 의견교환 등이 가능합니다.
- 또한, 관측정보를 정보이용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 (참고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스토어 접속 > 농업관측센터 검색 및 앱 설치

☞ (참고2) 카카오톡스토리 접속 > 친구찾기 > 농업관측센터 > 소식받기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양화

- 추진배경 :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양화로 이용자 소통 강화
- 주요내용
 - ① 제공방식 다양화(인쇄물, 인터넷→모바일앱 및 SNS 추가)
- 시행일 : 2015년 1월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전망 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20)

- **2015년 농업전망**은 농업인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인 수급조절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농업전망 행사는 서울에서 의전행사 중심으로 개최되어 정책수요자인 농업인·생산자단체의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 2015년부터는 농업인의 참여도를 높이고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산지 중심의 지방대회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 동 행사를 통해 농업인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정책 담당자,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또한, 농업인·생산자단체·유통인 등의 자율적 생산·유통 조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참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관측정보 > 농업관측정보 > 농업전망

2015년 농업전망 권역별 개최

- **추진배경** : 농업인의 참여도 제고와 자율적 수급조절 역할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개최
- **주요내용**
 - ① 품목별 주산지 중심의 지방대회로 농업전망 행사 개편
 - * 중부권(경기), 호남권(전남), 영남권(경북), 충청권(충남), 제주도에서 개최
- **시행일** : 2015년 1월 20일(중부권), 22일(호남권), 27일(영남권), 29일(충청권), 2월 3일(제주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8)

- 시설원에 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11년부터 지열냉난방시설·목재펠릿난방기를 지원하였으나, 초기 사업비 부담과 지원 대상 제한으로 확대보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지중열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중열냉난방시설의 경우 지열냉난방시설 대비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약 37% 정도 절감 기대) 있어 농가 부담을 완화하게 되고,
 - 폐열 재이용시설은 발전소·소각장 등 폐열의 농업에너지화를 통해 버려지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농가 경영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편, 에너지절감시설로 지원해 온 공기열냉난방시설 농가 지원기준을 0.1~0.5ha에서 0.1~1.0ha로 조정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2015년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확대보급 기반 구축
- 주요내용
 - ①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대상 확대(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추가)
 - ②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원요건 조정(온실면적 0.1~0.5ha→0.1~1.0ha)
- 시행일 : 2015년 1월



농업인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로 GAP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 044-201-2425)

-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GAP(농산물 우수관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 시·도 지원, GAP 인증기관 등 3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14년 10월부터는 인증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되고 구비서류 또한 기존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완화되었으며,
- 인증 구비서류에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제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산물 우수 관리(GAP)제도, 인증은 쉬워지고 안전성은 강화

2014년도 GAP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GAP(농산물 우수관리) 제도개선을 통한 인증 면적 확대
- 주요내용
 - ① 인증절차 간소화(신청절차 3→1차례)
 - ② 인증 소요기간 단축(최대 126→42일)
 - ③ 인증 구비서류 축소(12종→3종)
 - * 단,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하여 잔류농약, 미생물, 중금속 등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 시행일 : '14.9.30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및 기타 고시 3종 개정)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으로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 044-201-2419)

■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였으나, 2015년 6월 4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합니다.

-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적용하며,
-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현행법령>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15.6.4. 예정법률)

2015년도 원산지표시제 위반자 처벌강화 내용

- 추진배경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주요내용
 -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시행일 : '15년 6월 4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14. 6. 3.)

친환경농업직불금(유기) 3년간 추가 지급으로 유기 인증 농가의 소득 보장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40)

■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 재배 실천 농가의 소득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을 개편하여 **유기지속직불**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동 필지에 대해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신규 도입되는 **유기지속직불금** 지급단가는 현행 유기 지급단가의 50%인 논 300천원/ha, 밭 600천원/ha이며,

- 우선 3년간 지급하고, 향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영구 지급 등 지속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시행지침

2015년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개편 내용

■ 추진배경 :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 재배 실천 농가의 소득 보장 확대

■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직불금 3년간 추가 지급(유기 5년 → 유기 5년 + 추가 3년*)

* (단가) 논 300천원/ha, 밭 600

■ 시행일 : '15년(잠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 추진)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구축추진단(☎ 043-719-4064)

- 12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14년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15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 그간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상호 단절되어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통해 범부처 식품안전정보를 학교급식 등 안전 관리에 활용하여 보다 촘촘한 먹을거리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과 산업체는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 추진배경 :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따라 부처별로 나누어진 식품안전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활용하고 국민에게 개방

■ 주요내용

- 식약처·안행부·농식품부 등 12개 기관에 분산된 159종의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공유·활용

행정업무통합시스템 (15.4월 운영)	식약처·지자체간 인허가 정보 등을 연계하는 통합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공동활용시스템 (15.5월 운영)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보 통합DB 구축
식품안전정보포털 (15.5월 운영)	전자민원, 상담·신고, 행정정보 등 대국민 맞춤형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15년 4월부터 순차적 운영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 043-719-2861)

- 기구류의 경우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조·판매하였으나, 2015년 1월부터 식품용 기구류는 “식품용” 문구나 마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식품용 기구에 “식품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 비식품용 기구를 혼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 식품용으로 제조된 적합한 기구를 소비자가 선택 구매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에 위해요소가 없는 안전한 기구류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19조 제1항(2013-254호, '13.12.26)

식품용 기구류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

- 추진배경 :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를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기구류 선택권 보장
- 주요내용
 - 식품용 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 의무화
- 시행일 : 2015. 1. 1.

■ 현장 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 043-719-2003)

- '15년부터 식품 생산·제조업체 현장 품질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 실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대부분 생산·제조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주로 영업자(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5년부터 식품안전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업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본 수칙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식품안전교육센터를 통한 기본안전수칙 내재화와 안전의식 제고로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수준이 한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현장 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 추진배경 : 생산업체 품질관리 담당자의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마련
- 주요내용
 - 식품 생산·제조업체 내 품질관리 담당자에 대한 기본안전수칙 등 교육
 - 교재 등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우수업체 현장 견학 등
- 시행일 : 2015. 4월 예정



산림탄소모아(산림탄소등록부) 시스템 운영

산림청 산림정책과 (☎ 042-481-4199)

■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림탄소모아(산림탄소등록부)’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던 기후변화와 산림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산림탄소 상쇄사업을 신청부터 산림탄소흡수량 거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시스템 구성 : 산림탄소모아 포털, 산림탄소등록부, 온실가스 인벤토리

☞ (참고) 산림탄소모아 시스템 오픈시 접근경로를 별도 공개 예정

산림탄소모아(산림탄소등록부) 시스템 운영

■ 추진배경 :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통계의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산림탄소모아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기후변화와 산림 관련 정보 제공
-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에 관한 통계 제공
- 산림탄소상쇄사업 운영(사업 신청부터 등록, 검·인증, 흡수량 거래까지 일원화)
-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정보 제공 등

■ 시행일 : 2015년 상반기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규제 개선

산림청 산림정책과 (☎ 042-481-4137)

- 기존 연구개발 참여는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자격을 제한하여 오던 것을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여 상상력·아이디어 발현 기회 및 연구개발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정부에서 출연하고 있는 연구기관 등으로 연구개발 참여대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R&D 참여제한 기준 및 연구비 목적외 사용 처벌 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창조경제 실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으로 과학기술 규제 발굴 및 개선

■ 주요내용

-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기준에 관한 제재사유별 상제기준 개선
- 누구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 완화(개선)
- 연구개발비 사용 변경 한도 상향조정 등 집행기준 개선
 - 장비·시설비 변경 승인 한도 : 5백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제출기간에 대한 기간 연장
 - 과제종료 후 5년간 제출 : 매년 1월 31일까지 → 매년 2월말까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기술료의 사용 비율 확대
 - 참여연구원의 정부출연금 보상금 지분 : 40%이상 → 50%이상
-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사용금액 비율) 참여제한 기간 축소
 - 20%이하인 경우 : 5년 이내 → 3년, 20%이상 30% 이하 : 7년 이내 → 4년,
30%초과인 경우 : 10년 이내 → 5년, 둘 이상 병합의 경우 : 10년 이내 → 5년
-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위원 확대
 - 12인 이내, 외부전문가 30% 이상 →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성별 고려,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 시행일 : 2015년 1/4분기



우드그랩 품셈 반영

산림청 목재생산과 (☎ 02-481-4204)

- 숲가꾸기, 직영벌채 등 벌채산물 집재 설계 시 우드그랩 품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우드그랩 집재에 대한 품셈 부재로, 벌채산물 집재 설계는 가선집재로, 실제 집재는 우드그랩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5년 1월부터는 우드그랩 품셈이 마련되어,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경사도 25도 이하인 임지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우드그랩 산물집재 품셈 반영 내역

- 추진배경 : 우드그랩 집재에 대한 품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물수집 설계와 실제 산물집재 상의 모순이 발생
- 주요내용
 - ① 숲가꾸기, 직영벌채 등 산물수집 시 우드그랩 집재에 대한 품셈을 반영
 - *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경사도 25도 이하인 임지에 대해서만 적용
- 시행일 : 2015년 1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산림청 목재생산과 (☎ 042-481-4204)

■ 국산목재의 중경재(가슴높이 직경 16~30cm) 생산시기 진입에 따라 목재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하여 목재생산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제재·건조·가공시설 등)을 보다 현대화시설로 개선하여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목재생산 사업계획

2015년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 추진배경 :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재생산시설을 현대화 개선

■ 주요내용

- 건조시설, 제재·가공시설, 방부시설 등의 현대화 개선을 지원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A-costa,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방부·집성재설비 등
- 지원단가 : 200백만원 / 개소 (국비 1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시행일 : 2015년 1월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042-481-4227)

- 가로수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의 관리방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가로수의 생장에 따라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현상을 조치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를 위해 강도 가지치기로 **수형을 조절**하고, 과도한 수형조절로 경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체 수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착되는 인식표는 수목생육을 고려하여 부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수간 부피 생장을 고려하여 못을 박아 관리번호를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용수철 등을 이용한 관리번호 표찰을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도시숲경관 사업계획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

- 추진배경 : 수목 및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한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
- 주요내용
 - 가로수 수형조절 및 수종교체로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물 시계 확보
 - 용수철 등 수간 부피 생장을 고려하여 관리번호 표찰 부착
- 시행일 : 2015년 1월



국유림 대부(사용)료 부담 완화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8)

■ 국유림 이용자(수대부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 부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지가의 상승에 따라 대부료가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부료 연간 증가율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5%로 개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유림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대부료 연간 증가율 : (당초) 9% → (변경) 5%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료 부과 요율을 20/1,000에서 10/1,000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소관법령>입법 및 행정예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유림 대부(사용)료 부담 완화

■ 추진배경 : 국유림 사용자의 대부(사용)료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국유림 대부료 연간 증가율 하향 조정 및 감면 폭 확대
 - 연간증가율 : (당초) 9% → (변경) 5%
 -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용 대부지 대부료 요율 하향 조정 (20/1,000 → 10/1,000)

■ 시행일 : 2015년 상반기(잠정)



공·사유림 교환제도 개선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5)

■ 국·사유림 교환 기준과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방청에만 설치하였던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산림청 소속 1차 기관에 추가 설치하고, 교환조건 등을 강화하여 국유림 교환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자문을 받음으로써 교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대상 면적 범위 확대
- 토지가격 감정평가 신뢰성 확보
- 산림경영임지 심사 강화 등 교환 승인 검토 강화
- 교환 처분면적을 제한하여 국유림 확대에 기여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소관법령>입법 및 행정예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공유림 교환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국·공유림 교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 국유림경영자문위원회 1차 전 소속기관으로 확대 설치
- 국유림경영자문위원회 자문대상 면적 범위 확대
- 교환승인 요청 강화로 2회에 걸친 교환 승인 검토
- 교환조건 강화로 면적 제한 규정 설치

■ 시행일 : 2015년 상반기(잠정)



자연휴양림 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042-481-4211)

■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자연휴양림 내 설치 가능 시설에 트리하우스, 모노레일 등의 시설을 추가하여, 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추가시설 : 트리하우스, 모노레일, 로프체험시설, 산악자전거시설·행/폐러글라이딩 시설, 방송시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소관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휴양림 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 추진배경 :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휴양 체험활동을 위한 자연휴양림 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 주요내용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자연휴양림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에 다음 시설물을 추가
 - 숙박시설 : 트리하우스
 - 편익시설 : 모노레일
 - 체험시설 : 로프체험시설
 - 체육시설 : 산악자전거시설·행/폐러글라이딩 시설
 - 안전시설 : 방송시설

■ 시행일 : 2014년 12월 4일



자연휴양림 보험가입 의무화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042-481-4211)

-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객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적용 시설 및 보험금 최저한도액 등 보험가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할 계획입니다.
-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자연휴양림 보험가입 의무화

- 추진배경 :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보험가입 의무화
-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으로 자연휴양림 시설의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보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시행일 : 2014년 12월 15일

대도시 지역 내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042-481-4124)

- 대도시 및 도서지역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 치유의 숲 면적 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 도시와 도서지역의 산림 면적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서지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면적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소유구분에 따라 30~50만㎡로 규정하던 치유의 숲 면적 기준을 특·광역시와 도서 지역에 완화된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치유의 숲 조성 가능

구분	국가 및 지자체	그 외
일반지역	50만㎡ 이상	30만㎡ 이상
특별시, 광역시 지역	25만㎡ 이상	15만㎡ 이상
도서(섬) 지역	-	10만㎡ 이상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소관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 지역 내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완화

- 추진배경 : 대면적의 산림 확보가 어려운 도시지역의 치유의 숲 조성 활성화
- 주요내용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특별시·광역시 지역과 도서지역의 치유의 숲 조성 면적 기준을 완화

- 치유의 숲 면적기준 완화 -

구분		현행	개선
특·광역시	국·공립	50만㎡	25만㎡
	사립	30만㎡	15만㎡
도서지역(섬)		신설	10만㎡

- 시행일 : 2014년 12월 4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 신설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042-481-4124)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지정해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과 같이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을 신설하여 양성기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소관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 신설

■ 추진배경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 신설

■ 주요내용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성기관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
 - * 거짓이나 수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 *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
 - * 지정 당시 제출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 시행일 : 2014년 12월 4일



산림치유지도사 활동범위 확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042-481-4124)

■ 증가하는 산림치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치유의 숲에 한정되었던 산림치유지도사 활동 가능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으로 확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림치유 수요에 대응하고 향후 양성되는 산림치유지도사의 고용 및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소관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치유지도사 활동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활동범위 확대

■ 주요내용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기존 치유의 숲으로 한정된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 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으로 확대

■ 시행일 : 2014년 12월 4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042-481-4124)

■ 산림치유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기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으로 인정함으로써 비전공자 출신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습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법령정보 > 소관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산림치유 지도사 등급별 자격 기준 완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술사,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경우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 시행일 : 2014년 12월 4일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91)

- 임업인이 영림업 및 별목업에 종사하기 위해 구입 또는 직접 수입한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 또는 직접 수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농어업용 기자재뿐만 아니라 영림업 또는 별목업을 위해 구입한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 추진배경 : 농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환급을 임업용 기자재에도 적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 ① 영림업 또는 별목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구입 또는 수입한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 시행일 : 2015년 상반기(잠정)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2014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음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91, 4195)

■ 임가소득 안정 및 효율적 산림경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당초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로 1인 1회 지원에 한정되었던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내역에 생산 운반시설장비 및 체험시설을 추가하여 임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산림경영·관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지원횟수 폐지) 1인 1회 1억원 이내 → 1인 1억원 이내

- (지원내역) 생산 운반시설장비(모노레일), 체험시설 추가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을 완화하여 임가소득 안정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을 완화하여 임가소득 안정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

■ 주요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 :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 →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이내에서 1인 2회 이상 지원 가능
- 지원내역 : 임도·작업로 시설, 목재생산 장비, 목재가공시설, 유통시설, 재배시설, 관정 및 용수저장시설, 관리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 [추가] 생산 운반시설장비(모노레일), 체험시설

■ 시행일 : 2015년 1월



원목 표고자목 구입비용 지원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208~9)

■ 원목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표고자목 구입비용도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당초 표고자목 구입비용은 지역별 가격 편차 및 지원 기준이 없어 정산 등이 어려운 관계로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원목표고 재배자들에게 표고자목 구입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표고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대상) 임업인, 생산자단체
- (비율)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금액 및 본수) 본당 금액 : 3,760원(W 10cm × L 120cm)
면적당 본수 : 1,000본/330m²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원목 표고자목 구입비용 지원

■ 추진배경 : 원목표고 재배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표고산업 활성화

■ 주요내용

- 원목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목구입비 지원
(당초) 원목 표고자목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변경) '15.1.1부터 원목 표고자목 구입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시행일 : 2015년 1월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확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206~9, 4194, 4196)

■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및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지원범위, 대상품목 확대 및 규모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전문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임산물 생산 · 유통시설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 구축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

■ 주요내용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냉동탑차 지원 → 냉동탑차 및 일반 화물차량 지원,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유통장비 추가 지원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 조성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임산물 생산단지조성 사업 : 임촉법 제7조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써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 → 제7조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중 1개 단지 규모가 25,000㎡ 미만이라도 소득창출 경영목표 달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가능

■ 시행일 : 2015년 1월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및 조경수 관정시설 보조율 조정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94, 4196)

-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자연순환 임업의 정착과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를 위해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및 조경수 관정시설의 보조율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 기존 토양개량에만 한정되었던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고품질의 안전한 임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질 비료도 지원 가능하도록 추가하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던 조경수 관정시설을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변경·편성하여 가뭄피해 방지 및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및 조경수 관정시설 보조율 조정

- 추진배경 :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임업의 정착 및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도모

■ 주요내용

구분	당초	변경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토양개량)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토양개량)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유기질비료) 국고+지방비 80%이내, 자부담 20%이상
조경수 관정시설	국고 40%, 자부담 60%	국고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 시행일 : 2015년 1월



정원 정책 신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9)

■ 정원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신설하여 정원정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정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원정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운영, 정원산업지원센터 설립, 꽃과 나무 상담소 운영

☞ (참고) 국회 홈페이지의안정보>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원 정책 신설

- 추진배경 :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위해 정원 정책 신설
- 주요내용
 -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정원산업지원센터 설치
 - ‘코리아가든쇼’ 개최 및 ‘꽃과 나무 상담소’ 운영
- 시행일 : 2015년 6월(잠정, 법률개정 중)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7)

■ 산불, 산사태 및 병해충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산림보호구역 내에서의 사방시설 등 재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 보호구역 해제절차가 선행되어야 했으나,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제절차 없이도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송전탑 긴급복구 행위 허용
- 사방시설, 산림재해 예방시설 설치 허용
- 병해충 예방시설 설치 허용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률>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 추진배경 :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안전관리 및 예방효과 제고

■ 주요내용

- 숲길 조성 허용
- 송전탑 긴급복구 행위 허용
- 사방시설, 산림재해 예방시설 설치 허용
- 병해충 예방시설 설치 허용

■ 시행일 : 2014년 12월 4일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기준 완화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042-481-8844)

■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선발 시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은 자를 선발대상으로 하였으나 교육 미 이수자도 산사태현장예방단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된 후 교육을 받도록 선발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률>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기준을 완화

■ 주요내용

-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산사태현장예방단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완화하되, 선발된 후 교육 이수

■ 시행일 : 2014년 12월 4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 042-481-4269)

■ 산림병해충 방제품질 향상 및 산림기술 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산림병해충 방제면적 100ha 이상의 사업은 기술특급에만 부여되어, 사업량 확대에 따른 기술인력 부족으로 방제품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품질 향상과 산림기술 인력의 고용확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기술 1급 : (기존) 100ha 미만 → (개선) 300ha 이하

- 기술 2급 : (기존) 100ha 미만 → (개선) 200ha 이하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 · 정책 > 법령정보 > 입법 및 행정예고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산림병해충 사업량 확대에 따른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방제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 주요내용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 기술 1급 : (기존) 100ha 미만 → (개선) 300ha 이하(실무경력 6년 이상)
 - 기술 2급 : (기존) 100ha 미만 → (개선) 200ha 이하(실무경력 3년 이상)

■ 시행일 : 2014년 12월(법제처 심사 중)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연장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 042-481-4269)

■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한 발급된 생산확인표의 유효기간을 45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 (기존) 30일 → (개선) 45일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연장

■ 추진배경 : 국민불편 해소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연장

■ 주요내용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연장
 - (기존) 30일 → (개선) 45일

■ 시행일 : 2014년 12월(법제처 심사 중)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활용 확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 042-481-4076)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역에 대량 훈증 시설을 설치하여 피해고사목의 임목자원 활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는 벌채·훈증하여 산림 내 방치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피복제를 수거하고 화목 등으로 이용하였으나, 지난해부터 최대한 수집·파쇄하여 열병합발전소 및 펄릿 원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역에 대량 훈증시설 설치(3개소)를 지원하며, 피해고사목을 훈증·건조한 후 제재목 등으로 활용을 확대하여 임목자원 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활용 확대

■ 추진배경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확대에 따른 피해고사목 활용가치 제고

■ 주요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훈증·건조하여 제재목으로 활용
 - 피해극심지역에 대량 훈증 시설 및 장비 지원(3개소, 42억원)

■ 시행일 : 2015년 1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공동사업 지원기준 강화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 042-481-8815)

■ 지난 '05년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인해 침체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사업부지가 없어도 공동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 1월부터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동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공동명의로의 사업부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단, 이동가능 기계설비, 디자인개발 등 토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사업신청자 공동 명의로의 사업부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공동사업 기준 강화

- 추진배경 : 공동사업 시설에 대한 분쟁발생 및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공동 보조사업 관리 강화
- 주요내용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동사업 지원에 한하여 신청자 공동 명의로의 사업부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사업우선순위에 추가)
- 시행일 : 2015년 1월

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이중규제 개선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044-200-5751)

- 항만공사(PA)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실시계획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양 법령에 따라 동일 내용의 실시계획을 각각 승인받았으나, 2015년부터는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단축되어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항만시설의 신속한 개발이 예상됩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항만공사법」 참조

항만과 경제자유구역 이중규제 개선

- 추진배경 : 항만과 경제자유구역 내 이중규제를 개선하여 항만시설의 신속한 개발 추진
- 주요내용
 - ① 항만공사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정한 실시계획 승인 의제
- 시행일 : 2015년 3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 입법 진행중(2014.12월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1%→0.5%)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044-200-5248)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을 먹는 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에서 0.5%로 인하합니다.
- 요율인하를 통해 산업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해양심층수 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 하여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요율 인하시 이용부담금 부과액(업계전체) : 100백만원→50백만원('13년 기준)

☞ (참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인하

- 추진배경 :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심층수 업계 부담 완화 및 업계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①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인하(1%→0.5%)
- 시행일 : 2015년 1월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 044-200-5448)

■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지금까지 염장수산물에 사용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어 왔으나, 2015년 1월 부터 염장수산물에 사용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2014년 6월 3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75호)에 따라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였으며, 6개월이 경과한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번 제도개선은 식용 소금의 원산지 둔갑, 염장수산물과 식염의 원산지를 동일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식염의 원산지표시 강화

2015년도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 추진배경 : 식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정보제공 확대

■ 주요내용

①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 현행(염장미역(미역 : 국산)) → 변경(염장미역(미역 : 국산, 천일염 : 중국산))

■ 시행일 : 2015년 1월



연안어선의 선복량 한계 상향조정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044-200-5517)

- 어선원 복지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어선 제한톤수를 상향 조정합니다.
- 지금까지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어선의 상한톤수를 8~10톤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연안어선의 상한톤수 제한을 10톤으로 상향조정하여 어선원의 휴식공간 등 어선원의 복지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어획능력을 높이지 않도록 선박톤수 증가는 어선대체를 통해서만 허용하고 불법 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업감독관이 상시 점검하는 체제가 갖추어집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개바다>보도자료>어선 제한톤수 늘고 과징금 크게 올라

연안어선의 선복량 한계 상향조정

- 추진배경 : 연근해 어선의 제한 톤수 상향 조정을 통한 어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
- 주요내용
 - ① 연안어선 선복량 제한 상향(8톤 미만 또는 10톤 미만 → 10톤 미만)
- 시행일 : 2015년 3월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상향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044-200-5563)

- 국내 어선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업정지 처분 대신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2015년 3월부터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 이번 과징금 한도액의 조정은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난 2007년 개정된 **현행 과징금 한도액은 너무 낮아**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어도 **과징금만 납부하면 다시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과징금 대체비율이 지난해 70%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 특히 어선규모가 큰 근해어업의 경우 지난해 과징금 대체율이 92% 달하는 등 불법어업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개바다>보도자료>어선 제한톤수 늘고 과징금 크게 올라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상향조정

- 추진배경 : 과징금 한도액 현실화를 통한 행정처분으로서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 ① 어업제한,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2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시행일 : 2015년 3월

■ 수산자원보호와 농어가 소득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1)

- 어가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확대합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일반 음식점 및 자동차 야영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선박의 길이가 40미터 미만(당초는 24m 미만)인 선박의 건조·수리를 위한 조선소와 그 부대시설의 건축도 허용합니다. 다만, 일반 음식점 및 자동차 야영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허용합니다.
- 진료시설, 도서관, 관광·조경시설, 레저용 기반시설 등 어항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횃집이나 휴게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허용합니다.
- 창고시설 건축이 가능한 용도를 농업용·수산업용 외에 선박시설과 선박용 창고시설까지 확대하고, 500톤 이하, 500㎡이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도 농어업·수산업과 선박시설, 선박용 물건까지 허용할 예정입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015년도 수산자원보호구역 허용행위 확대

- 추진배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확대
- 주요내용
 - ① 설치가능한 시설 추가 허용(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자동차야영장, 어항편익시설)
 - ② 수리·건조할 수 있는 적용대상 선박 확대(24m 미만→40m 미만 선박)
 - ③ 창고시설 건축대상 확대(농업용 및 수산업용→농업용, 수산업용과 선박용)
 - ④ 물건 쌓아 놓는 대상 행위 확대(수산업→수산업, 농어업, 선박시설과 선박용 물건)
- 시행일 : 2015년 1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시행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5)

■ 2015년 4월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제도의 법적근거가 시행되면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와 허위로 수산물 판매실적이나 어업종사실적을 확인해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2014. 4. 16.)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새소식>보도자료>수산직불금 부정수급못한다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부당수급 방지

■ 주요내용

- ①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처벌(지급액의 2배 환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 : 2015년 4월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이 쉬워집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044-200-5429)

- 2015년 1월부터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 업종별, 수산물가공)의 설립 시 사업규모 기준을 폐지하여 조합의 설립이 쉬워집니다.
 - 지금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 시 지구별수협은 100억원 이상, 업종별 및 수산물 가공수협은 80억원 이상의 사업규모를 갖추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선수협 설립 시 사업규모 기준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일선수협의 상임이사 자격기준요건이 완화되어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영입이 쉬워져 조합의 경영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 지금까지 일선수협의 상임이사는 수협·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에 국한되었으나 관련 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 등으로 확대 됩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5년도 수협관련 규제완화 추진

- 추진배경 : 조합설립 기준 및 상임이사 자격완화로 우수인력 진입 확대
- 주요내용
 - ① 일선수협 설립 조건 중 사업규모 기준 폐지(80~100억원 이상 → 폐지)
 - ② 일선수협 상임이사 자격기준 완화(수협·은행 10년 이상 종사경력자 → 관련 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이상 종사경력자)
- 시행일 : 2014년 12월(잠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16)

■ 배타적경제수역 입어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시범실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 061-240-7970)

■ 한·중 양국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입·출역하는 어획물운반선이 지정된 체크포인트를 의무적으로 통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어획물운반선의 체크포인트 통과를 의무화함으로써 상대국어선의 불법어획물 운반 행위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어 불법조업 사전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12월부터 시범으로 실시하고, 2015년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평가한 후 2016년에 정식 시행될 계획입니다.

- 또한 한·중 어업협정 수역 조업어선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 입어 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 연내 공동감시 실시

2015년도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 추진배경 : 한·중 양국은 어업협정수역에서의 해상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상호협력 강화

■ 주요내용

- ① 입어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 시범 실시(2014년 12월), 모범선박 지정제도 도입(2015년 1월)

■ 시행일 : 2014년 12월



선박운항의 필수품, 해도 판매가격 인상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 051-400-4312)

- 바다를 항해할 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해도(海圖)**와 **수로서지의(水路書誌, 항해서지)**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 해도 및 전자해도, 수로서지는 2011년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 왔으나, 생산 원가 상승에 따라 **2015년부터 판매가격을 11% 가량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현재 **종이해도 369종, 전자해도 692셀과 조석표·천측력 등 14종의 수로서지**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해도 및 전자해도, 수로서지는 선박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바다 안내 자료입니다. **항해사는 출항 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 (참고)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정보마당>해양조사관련 법률정보>고시>수로도서지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규정(별표)

2015년부터 수로도서지 판매가격 인상

- 추진배경 : 매 2년마다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의 적정성 판단 후 판매가격 조정
- 주요내용
 - ①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11% 인상
- 시행일 : 2015년 1월



국립해양박물관이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기획총괄과 (☎ 051-309-1721)

■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이 법인(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범**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정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었으나, 「국립해양박물관법」이 시행되는 **2015년 4월 중순 이후 법인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21호, '13.10.8.)」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법령 > 현행법령 > 국립해양박물관법[시행 2015.4.16.]
[법률 제12818호, 2014.10.15. 제정]

국립해양박물관의 법인 출범

■ 추진배경 : 「국립해양박물관법」 제정에 따른 법인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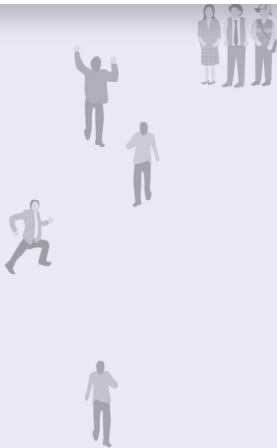
■ 주요내용

① 운영조직 변경(정부 임시조직→국립해양박물관 법인)

■ 시행일 : 2015년 4월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	321	경찰청	380
산업통상자원부	334	국가보훈처	381
특허청	337	국방부	382
관세청	337	방위사업청	386
환경부	337	병무청	387
국토교통부	345	문화·체육관광부	389
기상청	357	문화재청	391
보건복지부	359	방송통신위원회	392
여성가족부	367	미래창조과학부	393
법무부	371	농림축산식품부	397
교육부	373	식품의약품안전처	405
고용노동부	374	산림청	406
인사혁신처	378	해양수산부	415
행정자치부	37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획재정부			
1.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제외	□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작 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 배업 제외) 소득세 과세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 회 의결	소득세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1)
2.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 과 합산하여 과세	□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규 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 ’14~’16년 소득분 비과세 ○ ’17년 이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소득세법 (’14.1.1)
	□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 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 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서만 공제	□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 회 의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1)
3.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 서 발급 및 전송이 가능	□ 다음의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 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	소득세법 (’15.1.1)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진발급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1)
4.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 신 설 〉	□ 다음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을 의무화	소득세법 시행령 (2015.5.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전세버스 운송업 ○ 장의관련 서비스업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1)
5.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월세지급액의 60%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 공제대상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750만원 한도) ☐ 공제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소득세법 (’14.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한시적 확대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 〈신 설〉 ○ 공제한도	☐ 체크카드 공제율 확대 등 ○ (좌 동) □ (좌 동)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14.7.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14.12.31.	○ (좌 동) ○ 적용기한: '16.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table><tr><th>차입금요건</th><th>공제한도</th></tr><tr><td>○ 만기 15년 이상 < 신 설 > - 고정금리 or 비 거치식 분할상환 - 기 타</td><td>1,500만 원</td></tr><tr><td> < 신 설 ></td><td>500만원</td></tr></table>	차입금요건	공제한도	○ 만기 15년 이상 < 신 설 > - 고정금리 or 비 거치식 분할상환 - 기 타	1,500만 원	< 신 설 >	500만원	<table><tr><th>차입금요건</th><th>공제한도</th></tr><tr><td>○ 만기 15년 이상</td><td rowspan="3">1,800만원</td></tr><tr><td>-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 할상환</td></tr><tr><td>- (좌동)</td></tr><tr><td>- (좌동)</td><td>(좌동)</td></tr><tr><td>○ 만기 10년 이상</td><td rowspan="2">300만원</td></tr><tr><td>-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 할상환</td></tr></table>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차입금요건	공제한도	○ 만기 15년 이상	1,800만원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 할상환	- (좌동)	- (좌동)	(좌동)	○ 만기 10년 이상	300만원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 할상환	소득세법 (15.1.1)
	차입금요건	공제한도																		
	○ 만기 15년 이상 < 신 설 > - 고정금리 or 비 거치식 분할상환 - 기 타	1,500만 원																		
	< 신 설 >	500만원																		
차입금요건	공제한도																			
○ 만기 15년 이상	1,800만원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 할상환																				
- (좌동)																				
- (좌동)	(좌동)																			
○ 만기 10년 이상	300만원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 할상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8.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한도 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추 가> ○ (700만원 한도 적용)	○ (좌 동) ○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 (좌 동)	소득세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 자 의료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특례내용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 단일세 율 적용 ○ 적용기한 - 2014년 12월 31일	○ (좌 동) ○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 헤드쿼터 인증기업 : 적용기한 폐지 - 그 외 기업 : 2016년 12월 31일 (2년 연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10.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 0세 이상) 및 장애인 ○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 설> ○ 업종: 농업, 임업, 제조 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	☐ 감면기간 연장 ○ (좌 동) ○ (좌 동)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 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좌 동)	소득세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점업, 금융보험업 등 제외 ◦ 적용기한: '15.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11.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직전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 ◦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 은 자 ◦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 지 않을 것 ◦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	☐ 신청 대상 확대 ◦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2)
12.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납입금액 기준으로 400 만원까지 12%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 액을 합하여 납입금액 기준으로 4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하 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 금액 기준으로 300 만원까지 12% 세액공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3)
13. 자녀장려세제 도입	〈신 설〉	☐ 총소득기준 4,000만원 이하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 로장려금과 동일	조세특례 제한법 ('15.1.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 생계급여에 한함 ☐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소득세제과 (044-215-4154)
1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 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확대적용 시기는 당초 계획상 '14년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	☐ 지급대상 확대를 법령에 명확화 ○ 자영업자 포함 ※ 자영업자 확대적용은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14년 소득분부터 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부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15.1.1)
	☐ 근로장려금의 수급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급여를 받은 자 ○ 외국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수급 제외자 축소 <삭 제> ○ (좌 동)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4)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원칙)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중소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 ○ (예외) 중소신고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좌 동) ○ 신청방법 예외 추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 중 소신고한 것으로 간주 - 확정신고의무 없는 자 * *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등 - 일용근로자 〈추 가〉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자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15.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의 수급 재산 기준 ○ 1세대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가격 6천만원 이하) ○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예·적금 등, 골프장 회원권 등 〈신 설〉	□ 주택·재산기준 완화 ○ 주택 가격기준 삭제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 □ 재산기준 1억원~1억4천만원까지는 근로·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 제한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4)
16.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 기한후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 3개월 → 6개월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조세특례 제한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간	2014년 세법개정안	(044-215-4154)
17. 역외탈세 방지강화	①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 거주자 판정기준 ○ (원칙) -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좌 동) -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소득세법, 상속세법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2)
	② 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 국외재산 증여시 증여세 특례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 세 과세 ○ 이 경우 외국에서 증 여세가 과세되면 국내 에서 과세면제	○ (좌 동) ○ (좌 동) -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 계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 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국제조세조정예관 한법률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1)
	③ 국제 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국제 부과제척 기간 연장	☐ 국제부과제척기간 ○ 상증세 이외 국제 - 원칙 : 5년 - 무신고 : 7년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0년 <신 설> ○ 상증세 - 원칙 : 10년 - 무신고, 허위·누락,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5년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15년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국제기본법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④ 국제 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	☐ 가산세율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20% - 부정행위: 40% <신 설>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10% - 부정행위: 40% <신 설>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60%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6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국세기본법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1)
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벌금 인상	☐ 미신고 과태료 :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 ☐ 미소명 과태료 : 미소명 금액의 10% 이하 ☐ 형사처벌(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 : 미신고금액 1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미신고 과태료 인상 :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 미소명 과태료 인상 : 미소명 금액의 20% 이하 ☐ 형사처벌 강화 : 미신고금액 2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국제조세조정예관 한법률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1)
⑥ 해외 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확대	☐ 탈세 등 신고시 포상금 지급 - 지급 대상 및 포상금 - 조세탈루, 부당환급 등 신고: 탈루세액 × 5~15% - 채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징수금액 × 5~1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거부, 허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국세기본법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위발급 신고: 거부금액 × 20%(50만원 한도) ④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건당 100만원 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무 위반 신고(다만, ①,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 과태료·벌금 × 5~15% ○ 포상금 지급 한도: 20억원	⑤ ①,②에 따른 포상금과 별도로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⑦ 국제거래명세서 신고 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제출의무 대상 자료 및 기한 - 국제거래명세서(과세표준 신고시) - 계약서, 가격표, 명세표 등(과세당국 요구 시) ○ 과태료 부과 <신 설> - 계약서, 가격표, 명세표 등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좌동) - 국제거래명세서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5)
⑧ 해외 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시 자료 제출 의무 ○ 제출자료	□ 제출자료 확대		소득세법, 법인세법 ('15.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확대 및 과태료 인상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추 가> □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좌동) - (좌동) -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명세 □ 과태료 인상 ○ 취득가액의 1% 이하 (5천만원 한도)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2)
	⑨ 과소 자본세제 적용 기준 강화	□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 불산입 ○ 업종별 배수 - 일반 업종: 3배 - 금융업: 6배	○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 - (좌 동) - 일반 업종: 2배 - (좌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국제조세조정예관 한법률 (15.1.1)
	⑩ 특정 외국법인 (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개선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지배관계 판정 ○ 내국인과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을 것 ○ 특수관계 여부 판정시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비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 주식 포함	○ (좌동) ○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주식도 포함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국제조세조정예관 한법률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5)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㉑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 조정제도 도입	〈신설〉	☐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 - 신청시기: 내국세의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APA) 신청시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 - 신청대상: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 - 조정방법: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의 평가방법 및 적정 범위를 협의하여 결정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국제조세조정예관 한법률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4)
	㉒ 내국 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 소득에 대한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 적용대상 - 국외자회사: 모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 보유	☐ 지분율 요건 강화 - 적용대상 - 국외자회사: 모회사가 25% 이상 직접 주식보유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법인세법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2)
18.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 신 설 〉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서면 자진 신고자 산출세액의 30% 경감(15만원 한도)	관세법 (‘15.1월)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자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자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납부세액에 30%의 가산세 추가	◦ 가산세율을 40%로 상향조정	(044-215-4412)
	〈 신 설 〉	☐ 반복적인 자진신고 불이행자 ◦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자진신고 불이행 ◦ 60% 가산세율을 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19.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	☐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 ◦ 물품과세가격의 60%	☐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 ◦ 물품과세가격의 4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관세법 ('15.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3)
20.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 5년 단일	☐ 관세채권 규모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을 차등화 ◦ 5억원 이상 : 10년 ◦ 5억원 미만 : 5년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법 ('15.1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21.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 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 3년	☐ 경정청구기간 확대 ◦ 5년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법 ('15.1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2. FTA특례법 전면개정	☐ 법령 체계 ◦ 36개 조문	☐ 법령 체계 정비 ◦ 46개 조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5.5.1)
	☐ FTA 일반원칙 미규정	☐ FTA 일반원칙 ◦ 협정관세 적용요건 ◦ 원산지 증명원칙	
	☐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 자 권리보호 미비 ◦ 조사대상자의 협정관 세 적용보류 ◦ 원산지조사시 남용권 금지조항 없음	☐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 납세담보 제공시 협정관세 적용 ◦ 원산지조사시 조사권 남용금지 ◦ 협정관세 적용배제시 가산세 징 수·감면 등의 근거 신설	
	☐ 하위법령 규정(시행령) ◦ 원산지인증수출자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 관세청 지도·감독 근거	☐ 하위법령 규정 법률근거 명확화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해제 근거 신설 ◦ 원산지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한 자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 정하는 근거 명확화 ◦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 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료제 출 요구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215- 449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자유무 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1.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규제완화	㉠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 법인(SPC) 에 대한 자격요건 자들의	◦ 100%	경제자유구역법 (’15. 7월)
		◦ 70%로 완화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알림· 뉴스>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	산업통상 자원부 정책기획팀 (044-203- 46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필요적 출자비용			
	② 경제 자유구역 내 항만 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 변경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변경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알림·뉴스>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	경제자유구역법 (‘15. 1월) 산업통상 자원부 정책기획팀 (044-203-4613)
2.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산규	◦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노인·아동·장애, 98만 가구)을 대상으로 동절기(‘15.12~’16.2)에 총 10만원 내외의 에너지바우처 지급(‘15.12)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너지법 및 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15.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044-203-5124)
3.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		◦ 산단 산업시설구역에는 13종의 지식산업만 입주 허용	◦ 지식산업 7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 총 20종의 지식산업이 산단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8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31)
4. 계량 질서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 보호	① 계량기 수거	신설	◦ 계량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자발적으로 수거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수거명령토록 함	계량에 관한 법률 (‘15.1월)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6)
	② 과징금· 공포	신설	◦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가능토록	계량에 관한 법률 (‘15.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하고, 필요한 경우 위반업소명을 공표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6)
	③ 정량 표시상품	곡류, 우유, 설탕 등 식료품 위주의 26종에 대하여 정 량을 표시토록 규정	◦ 물티슈, 화장지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정량을 의무적으로 표 시하도록 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1월)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6)
5.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의무 를 부과	① 안전 관리대상 어린이제 품 범위	◦ 완구, 유모차 등 40개 품목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 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안전 관리대상을 확대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예산법 령>입법예고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15. 6. 4)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3)
	② 어린이 제품 사고보고 의무화	◦ 결함으로 인한 사고보 고 의무규정은 있으나, 보고시한 및 보고대상 미비	◦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 사실등을 알게 된 경우, 결함여 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자는 48시간 이내에 사고내용을 정부 에 보고해야함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예산법 령>입법예고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15. 6. 4)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3)
	③ 불법제품 판매중개, 수입·구 매대행 행위 금지	◦ 제조·수입·판매·영 업자에 대해서만 불법 제품 취급금지를 규정	◦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인증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구매를 대행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 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를 부과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예산법 령>입법예고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15. 6. 4)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허청			
1. 특허청고시 사용명칭으로 출원한 경우 할인	◦ 62천원	◦ 56천원으로 인하(특허청고시 상 품명칭으로 전자출원한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5. 1월)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 481-5267)
관세청			
1.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율 인상	◦ 납부할 세액의 30%	◦ 납부할 세액의 40%	관세법 제241조 (‘15. 1. 1)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4)
	◦ 신 설	◦ 반복적인 신고 불이행자(2년내 2회이상) : 납부할 세액의 60%	관세법 시행령 (‘15.1월중 개정예정)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4)
환경부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 스 배출을 직접규제 ◦ 제도 대상(관리업체), 목표를 매년 결정 ◦ 사업자 또는 업체 단 위로 관리업체 지정 ◦ 온실가스 감축으로 목 표 달성 ◦ 목표량 보다 초과로	◦ 기업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 여 자율적으로 배출권을 거래 ◦ 제도 대상(할당대상업체), 목표 를 계획기간 단위로 지정 * 1차 계획기간은 3년으로 설정 (‘15~’18) ◦ 업체 단위로 할당대상업체 지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15.1.1.)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추진기획단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 없음 ○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최대 1천만원 과태료	○ 온실가스 감축 외, 배출권 구매, 배출권 차입, 상쇄를 통해 목표 달성 가능 ○ 목표량 보다 초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잉여 배출권 판매 또는 배출권 이월 가능 ○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행하지 못한 실적에 비례하여 과징금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정책이슈>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게시판	(02-6943-1305)
2.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시행·보고·신고 등의 의무이행 필요	①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제도 신설	○ 신규	○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30일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한 장의 서식으로 보고 ○ 최초의 보고는 '16.6.30일까지이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판매자란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음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화평법 하위법령 제정 공포 (12월중 예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15.1.1) 환경부 화학물질과 (044-201-6771)
	② 화학물질의 등록 대상 확대	○ 연간 1톤 이상의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신청제도	○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15.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위반시 제조·수입 불가되며, 판매중지 가능,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마다 고시('15년 상반기중 최초 고시 예정)되며, 3년간 등록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부여됨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환경부 화학물질과 (044-201-6771)
[3] 화학물질 안전정보 의 제공	○ 신규	○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참고)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15.1.1)
				환경부 화학물질과 (044-201-6771)
[4] 유해화학 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신설	○ 신규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 전(총량 연간 1톤 초과 확인시) 또는 다음해 4월30일(총량 확인 곤란시)까지 신고하여야 함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15.1.1)
				환경부 화학물질과 (044-201-677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⑤ 위해우려 제품 안전관리 제도 신설	◦ 신규	◦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이 고시 되는 위해우려제품을 판매·증여 하거나 판매·증여 목적으로 수 입·진열·보관·저장하려면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 ◦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 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12.1.1) 환경부 화학물질과 (044-201-6771)
3. 화학물질 의 안전한 유통·관 리를 위한 개정화학 물질 관리법 시행	① 화학물질 관리주체 일원화	◦ 유독물은 지자체, 취급 제한물질 및 수입화학 물질은 지방환경관서 에서 관리	◦ 유해화학물질(유독물, 취급제한 물질, 사고대비물질) 영업자 관 리를 지방환경관서로 일원화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 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화학물질관리법시 행령 (’15.1.1)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4)
	② 취급시설 설치 시 장외영향 평가서 제출	◦ 사전 검토 없이 취급 시설을 설치	◦ 사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검토하여 유해화학물질 취 급시설의 안전성을 강화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화학물질관리법시 행령 (’15.1.1)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4)
	③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주체의 변경	◦ 주로 공무원의 육안검 사에 의존	◦ 전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정 기·수시검사 후 검사결과를 환 경청에 제출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화학물질관리법시 행령 (’15.1.1)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4)
	④ 사고대비	• 기존 자체방제계획은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시 행령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를 위한 위해관리 계획 제도 시행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면제 규정이 많아 실효성 부족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 사회에 의무적으로 고지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 >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15.1.1)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4)
3.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	CO₂ 배출량 97g/km 이하인 중 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신규 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한 구매자에게 보조금 100만원 지 급(‘15.1.1일 출고분부터)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 > 환경부,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제도 시행’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 -6927)
4.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및 입지 기준		◦ 검출한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먹는물 수준)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합리화 입법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11.24)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6)
5.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 신규	제조·수입업자의 어린이용품 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에 대한 함유여부 및 함유 량 표시 의무화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어린이 활동공간·용품 유해물질 사전에 관리한다	환경보건법 (‘15.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0)
6. 토양 오염	① 오염토지	◦ 신규	‘96.1.6 토양법 시행 이전 양도 등의 사유로 해당토지를 소유하	토양환경보전법 (‘15.3.2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정화책임 체계의 합리적 강화	소유자의 정화책임 면책		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시행 이전 토지를 양수한 경우 오염토지 소 유자의 정화책임 면제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 환경부,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 합리성 강화한다' 시행령 입법예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 7177)
	② 과도한 정화비용 발생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 신규	◦ 과도한 정화비용이 발생하는 경 우 정화책임자에 대한 국가의 비 용지원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 환경부, '토양오염 정화책임 체계 합리성 강화한다' 시행령 입법예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15.3.25.)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 7177)
	③ 토양정화 자문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 신규	◦ 위원장 및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규정 - 위원장은 위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 - 위원은 토양환경분야의 전문가 (10년 이상 종사자, 교수, 변호 사, 관계공무원 등)로 구성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 환경부, '토양오염 정화책임체 계 합리성 강화한다' 시행령 입법예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15.3.25.)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 7177)				
7. 가축 분뇨관리 선진화	① 공공처리 시설 설치·운 영 주체 추가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은 지자체장이 설치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 영 주체에 농협조합을 추가 ⇒ 농가 지원 확대, 고품질 퇴·액 비 생산·유통을 유도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 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3.25)
				환경부 유역총량과(044- 201-70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② 불법측사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신설	◦ 무허가·미신고 시설 은 고발	◦ 고발 조치 외에 사용중지, 폐쇄 명령 신설, 사용중지명령에 갈음 하는 과징금 신설 ⇒ 불법측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 정처분 근거를 마련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 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3.25)
				환경부 유역총량과(044- 201-7021)
	③ 가축분뇨 실태 조사 실시	◦ 신규제도	◦ 토지에 출입하여 가축분뇨 등으 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조사 실 시 ⇒ 조사결과를 관련 정책 수 립·추진에 활용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 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3.25)
				환경부 유역총량과(044- 201-7021)
	④ 가축분뇨 퇴비액비 화의 기준 신설	◦ 퇴비·액비는 비료공 정규격에 따른 기준 준수	◦ 「비료관리법」 적용 제외 대상인 퇴·액비에 대한 품질·검사 기 준 신설 ⇒ 양질의 퇴비·액비 생산을 유도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 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3.25)
				환경부 유역총량과(044- 201-7021)
8.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단가 조정		◦ 250원/㎡	◦ 300원/㎡으로 조정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15.1.1)
				환경부 자연정책과 (044-201-7224)
9.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 건축용, 자동차 보수 용, 도료표지판용 도료	◦ 건축용, 자동차 보수용, 도료포 지판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관리 강화	의 VOCs 함유기준 (g/L)을 설정 - 건축용 도료(콘크리트·시멘트·몰타용 등)의 경우 수성무광 40 이하, 유성내부 400 이하 등 기준 설정 - 자동차보수용 상도-topcoat 500 이하 등 기준설정 -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수성 200 이하, 유성 450 이하 등 기준 설정 ○ < 신 설 > ○ < 신 설 >	강화 - 건축용 도료(콘크리트·시멘트·몰타용 등)의 경우 수성무광 35 이하, 유성내부 200 이하 등 - 자동차보수용 상도-topcoat 500 이하 등 -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수성 170 이하, 유성 400 이하 등 기준설정 ○ 선박용 도료 - 방오도료 500 이하, 무독성 방오도료 450 이하 등 기준 설정 ○ 철구조물(강교용)도료 -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750 이하,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성 50 이하 유성 650이하 등 기준 설정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제61조의2 별표16의2 (15.1.1)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1)
10.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 < 신 설 > ○ 일부 도장시설만 대기 오염 배출시설로 관리 - 조립금속·기계·기기·장비·운송 장비·가구 제조시설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 < 신 설 >	○ 보일러중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며 시간당 증발량이 2t/h 또는 1,239,000kcal 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포함 ○ 배출시설의 업종에 구분없이 적용 - 용적이 5m³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 솟가마 등 대기배출시설에 포함 - 용적이 30m³이상인 욕장업의 솟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 용적이 150m³이상인 솟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솟가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15.1.1.)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토교통부			
1. 2세대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신설	○ (지원대상 확대) 주택건설자금 및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에 국한되던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 ○ (지원방식 다변화) 민간자금을 임대주택·도시재생사업에 유치 하기 위하여 단순 융자 외 출자, 투·융자 등 지원방식 다변화 ○ (전담 운영기관) 자금관리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주택도시기금법 (2015.07.0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7)
2. 통합 전세상품(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 금리 연 3.3% : 소득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5.5천만원) : 수도권 1억, 지방 8천만원 한도 : 최장 8년 가능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금리 연 2.0% : 지자체장 추천(최저생계비 2배 이내 등)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4백만원 한도 등 : 15년	○ 버팀목 전세대출 : 금리 연 2.7~3%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1% 우대) : 소득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5.5천만원) : 수도권 1억, 지방 8천만원 한도 : 최장 10년 가능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주택법 제63조 제1항제8호 ('15.1.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5)
3.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대상) ①취업준비생,	주택법 제63조 제1항제8호 ('15.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②희망키움통장(I, II)가입자, ③근로장려금수급자 ○ (금리)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 (보증 등) 월세 미반환 위험회피를 위하여 월세대출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연체일수가 적은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금리우대(0.2%p)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5)
4. 주택 청약제도 전면개편	①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 대주) 완화	○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공급	○ 세대주 요건을 폐지(세대원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세대주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청약허용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②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 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은 1순위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후, 다시 2순위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 이후 3순위는 추첨 (총 13단계) * 1순위 :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 2순위 : 6개월, 6회 이상 - 민영주택(85㎡ 이하)	○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 6개 순차를 2개 순차로 통합 * 1순위 : 가입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 국민주택은 1순위 중 2개 순차에 따라 선정한 후, 2순위 추첨제 - 민영(85㎡ 이하)은 1순위 중 40% 가점 및 60% 추첨제, 2순위 추첨제 (민영 85㎡ 초과는 1순위 및 2순위 모두 추첨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은 1순위 청약자 중 40% 가점 및 60% 추첨제, 다시 2순위 청약자중 가점 및 추첨제, 이후 3순위 추첨 (총 5단계) * 민영주택 85㎡초과는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100% 추첨		
③ 입주자 저축 예치금액 변경 기간 등 제한 완화	○ 청약예금 가입자는 가 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주택규모 변경 가능(규모 상향시는 추 가로 3개월 지나야 청 약 가능)	○ 주택규모 변경(2년) 및 청약제한 (3개월) 기간 폐지하여 즉시 청 약 허용	○ 예치금액 이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 허용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④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 간에 따라 가점(최대 32점)을 받고 있으나, 유주택자(2주택 이상) 는 이와는 별도로 감점 (1채당 5~10점) 부여	○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 기준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⑤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청약자 및 배우자가 일정한 기준의 소형· 저가주택(전용 60㎡이 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1채) 보유시 무주 택자로 간주	○ 지역별 집값 편차 등을 고려하 여, 소형·저가 주택 기준을 완 화(전용 60㎡이하, 수도권은 공 시가격 1.3억, 지방 8천만원 이 하 1채)	○ 소형·저가 주택 기준 적용 대상 을 세대구성원 전체로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⑥ 청약통장	○ 청약통장 유형 4개(청 약저축, 청약예금, 청	○ '15.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 원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형 단순화	약부금, 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지하고, 기 가입한 통장은 모두 소진될 때 까지 현행 통장 목적대로 사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⑦ 청약대상 주택유형 단순화	○ 공급주택 유형 3개(국 민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	○ 유형을 2개로 통합 (민간건설 중 형국민주택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7)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5. 파독 근로자 체육유공 자에 대한 주택우선 공급	① 파독(派獨) 근로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 신설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5년간 한시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② 대한민국 체육유공 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 신설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에게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 특 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6.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	- 임대유기기간 : 10년 - 별도 조례로 용적률 상한선을 규정 - 연립 · 다세대 주택 의 경우 4층으로 층 수가 제한	- 임대유기기간 : 8년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을 법적 상한까지 부여 - 연립 · 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 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 한 완화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 책 발표,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	임대주택법 (‘15.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15년. 7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기획과 (044-201-3355, 336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 (대상) 70만 가구 ◦ (월평균급여) 9만원	◦ (대상) 97만 가구 ◦ (월평균급여) 11만원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여, 내년 6월 또는 7월 본격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15. 6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9)
8. 대한지적공사의 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 조정	◦ 명칭: 대한지적공사 ◦ 업무범위: -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 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교육 등 지원사업 -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 그 밖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명칭: 한국국토정보공사 ◦ 업무범위: -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공간정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자의 업무범위(지적측량업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연구·기술 개발·표준화 및 교육사업 -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협력 및 국외 진출사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국가공간정보 기본법('15.6.4)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5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국가공간정보 제공대상확대		사전에 등록된 공간정보사업자에 한하여 제공가능	공간정보 제공대상을 ‘공간정보사업자’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하는 자’로 확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15. 6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044-201-3473)
10. 공익 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시 영업손실 보상등 확대	① 영업휴업 보상기간 등 확대	3개월 이내 보상	4개월 이내 보상 -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휴업보상분의 20%, 1천만원 상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10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6)
	②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5백만원	6백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10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6)
11. 보상전문기관 확대		LH공사 등 8개 기관	21개(부산도시공사 등 13개 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0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6)
12.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개선	① 매매 6억~9억, 임대차 3~6억 구간 중개보수 요율 신설	매매/임대차 0.9%/0.8% 이 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 매매 6~9억 구간 요율 0.5% 이하 ○ 임대차 3~6억 구간 요율 0.4% 이하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 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시·도 조례 (‘15.2~6월예정)
			각 시·도 토지관리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3)
12.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개선	② 85㎡ 이하 일정설비 (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신설	0.9%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 매매 0.5%, 임대차 0.4%이하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 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4.12~’15.1월 예정)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3)
13.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개발사업 구역내의 진 입로 공사비만 인정 ○ 7개 부담금만 개발비 용 인정 (농지보전부담금, 대체 초지조성비, 수도원인 자부담금, 하수도 원인 자 부담금, 광역교통시 설부담금 등)	○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상승에 기여한 경우 개발사업 구역외의 진입로 개설비용을 공사비로 인정 ○ 7개 부담금을 추가로 개발비용 으로 인정 (학교용지부담금, GB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 부담금, 도시개발구 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 용부과금 및 추가 설치비용부담 금,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생 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 보 전협력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15.1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 340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발비용의 인정시점을 사업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	- 부과개시시점(인허가) 이전* 또는 부과종료시점(준공) 이후**에 비용이 발생된 경우라도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 * 조사및설계 등을 위해 사전 투입된 비용 ** 지목변경수반취득세, 양도소득세(법인세)등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14.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 개소		기존 온라인 포털의 구인·구직 기능은 단순 공지나 입사지원 정도로 국한	각 협회별로 운영중인 구인·구직 시스템을 “건설워크넷”으로 통합 건설분야 일자리를 한분에 확인 가능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개소 ‘14.11.28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별로 별도 구인·구직 운영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경력자료를 직접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인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인·구직 지원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 보도자료>구인·구직정보 한곳에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개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6)
15. 취약 시설물의	① 취약시설	등급에 상관없이 받기 1회 이상	취약시설물(D,E급)의 경우 해빙기·우기·동절기의 특성을 받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안전점검 실시횟수 를 확대 조정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기준 완화	물 정기점검 실시시기 확대		영하여 1년에 3회 이상 실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특별법 시행령 (‘15. 1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② 안전진단 전문기관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	○ 중급기술자 ‘기사’ 자격 제한	○ ‘기사’자격 삭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 1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③ 안전진단 전문기관 장비보유 등록기준 완화	○ ‘비디오카메라’ 보유	○ ‘비디오카메라’ 삭제 ☞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5. 1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16. 입지규제최소구역 을 통한 도시내 용·복합 개발 촉진		○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허용용도, 밀도(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 적용	○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일률적인 용도지역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허용 -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주거·산업·사회문화·관광·업무판매 등 3개 이상 중심기능을 포함한 계획수립 - 구역내 계획을 통하여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입지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17. 도시계획시설내 설치할 수 있는		○ 공공청사, 학교, 문화·체육시설의 편익	○ 공공청사, 학교, 문화·체육시설의 편익시설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편익시설 확대		시설 - 주차장 · 휴게소 · 공중전화 · 구내매점 등 ○ 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 -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생시설(휴게음식점 · 마을회관), 제2종 근생시설(극장 등, 직업훈련소, 테니스장 등), 도서관,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어린이회관 ○ 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 -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교육원, 직업훈련소,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4.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6)
18.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① 분양 오피스텔 분양 신고 기준 완화	○ 20호실 이상	○ 30호실 이상으로 완화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2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6)
	② 분양건축물 수의계약 요건완화	○ 최초 공개모집후 미분양면적이 일정요건에 미달될 경우 2차 공개모집 후 수의계약 가능	○ 최초 공개모집후 발생하는 미분양 물량은 바로 수의계약 가능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2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6)
	③ 분양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표시 전용면적 산정방법 일원화	○ 중심선 치수	○ 안목치수 적용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2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6)
19. 자동차 대체부품인증 시행		○ 없음	○ 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인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고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저렴하고 품질 높은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	(‘14.12) 국토교통부자동차 운영과 (044-201-3853)
20.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 사망·후유장애시 최 대 1억원, 부상시 2천 만원, 대물피해시 1천 만원	◦ 사망·후유장애시 최대 1억5천 만원, 부상시 3천만원, 대물피해 시 2천만원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10년 만에 1.5배 확대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시행령 (‘16. 4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8)
21.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신규	◦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 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 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 령정보>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5.1.8)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 3840)
22.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운영	◦ 1단계 운영 (동편 전용출국통로, 오전 8~10시)	◦ 2단계 확대 운영 (동·서편 전용출국통로, 7~20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 로 시범운영	’15. 1/4분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6)
23. 항공장에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 우편이나 메일 등을 통하여 항공장에 표시 등 설치 신고서를 제 출	◦ 인터넷을 통하여 항공장에 표시 등 설치신고서를 제출가능	항공법 시행령 (‘15. 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5)
24.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 항공등화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항공등화시	◦ 항공등화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항 공등화시설과 전력시설에 대한 6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설과 공항전력시설에 대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	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	점검지침 (‘15. 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5)
25. 항공장에 표시등 시험성적기관의 자격 구체화 시행	표시등 설치신고서 제출 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성적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의한 성능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함	표시등 설치신고서 제출 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광도 및 광학 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성적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의한 성능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함. 또한, 섬광등의 경우 섬광등을 시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	항공장에 표시등과 항공장에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15. 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5)
26. 접도구역 규제 완화	고속도로의 접도 구역 폭 20m 군도 및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접도구역 지정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10m로 축소 전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접도구역 지정 제외 군도 접도구역 지정 제외 접도구역 내 농업용 축사·창고의 신축 기준 완화(연면적 20㎡→30㎡)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추가 허용	도로법 (‘14.12월)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0)
27.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양도·양수	판매목적 불허가	‘15.1월말부터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판매 - 관련 법령 개정 후 자동차정비업소 등에서도 자유로운 판매 가능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15.10월)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33)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6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8. 서수원 -평택 민자고속 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인하	① 통행료 인하	◦ 1000원 ~ 3,100원	◦ 900원 ~ 2,700원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898)
	② 통행료 인상 주기	◦ 매년	◦ 3년(7.37%, 연평균 2.4%로 제한)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898)
	③ MRG	◦ 적용	◦ 폐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898)
29. 긴급견인		◦ 민자구간 미적용	◦ 적용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902)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무료긴급견인서비스,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	
기상청				
1.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	◦ 기상인력기준 2명	◦ 기상인력기준 1명		기상산업 진흥법
				기상산업 정책과
2. 기상용 슈퍼컴퓨터 신규 도입	◦ 슈퍼컴퓨터 3호기 운영	◦ 슈퍼컴퓨터 3호기, 4호기(우리) 운영 ◦ 세계기상분야 슈퍼컴퓨팅 성능 향상 - 758TF → 1,205TF(2014년 8위 → 5위) ☞ (참고)기상청홈페이지>행정과정책>보도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기상청 슈퍼컴퓨터운영과 (043-711-023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료)기상용 슈퍼컴퓨터(4호기) 낙찰예정사 선정	
3. 이안류 예측정보 제공 대상 해수욕장 확대	○ 해운대, 양양, 중문 해수욕장 예측정보 제공	○ 대천해수욕장(충남 보령) 확대 (총 4개소)	이안류 예보지원 서비스 실시 ('11. 7월)
			기상청 해양기상과 (02-2181-0742)
4. 지진조기경보 1단계 시행	지진속보 120초 지진통보 300초 통보	○ 지진조기경보 시행으로 50초 이내 지진분석 정보 전파 ○ 지진발생 여부만을 알리는 지진 속보에서 지진의 발생위치, 크기 등의 분석정보를 포함한 정보 제공 ☞ (참고) 기상청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지진관측법 제정공포	지진관측법 ('15. 1월)
			기상청 지진정책과 (02-2181-0768)
5. 초단기예보 및 단기(동네)예보 기간 연장	○ 초단기예보(3시간까지) ○ 단기예보(내일까지)	○ 초단기예보(4시간까지) ○ 단기예보(모레까지) ☞ (참고)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동네예보	예보업무규정 ('15. 3월)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508)
6. 총자외선 지수 대국민 서비스	○ 자외선 B 영역의 자외선 지수 제공	○ 자외선 A와 B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 대국민 서비스 ☞ (참고)기후변화정보센터홈페이지(www.climate.go.kr) > 기후변화감시 > 자외선 지수	-
7.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전국 확대	○ 수도권 지역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 전국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으로 확대	
			기상청 기상융합 서비스팀 (02-2181-089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8. 온실가스 변화 경향 실시간 제공	연 1회 월평균과 연평균 농도 보고서로 발간	- 매일, 일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웹페이지 제공 (참고)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limate.go.kr)에 제공 예정	기후변화감시센터 (041-674-6420)
보건복지부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	-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면허신고제도 시행	의료기사등 에관한법률 (‘14.11.2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2-202-2452)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국가예방접종 13종 백신 지원	- 국가예방접종 14종 백신 지원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타)보도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15.5~)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9)
3.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 실시	-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료접종 실시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타)보도자료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15.10~)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21)
4.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충남 시범사업 (14년) - 보건소에서만 잠복결핵감염 치료 지원	-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 민간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 확대	결핵예방법 (‘15.7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043-719-73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수적이나 비용·효과 성이 낮아 비급여	◦ ('15.1월) 청성뇌간이식술 등 5 항목 급여 확대 ◦ ('15.2월)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 장·뇌혈관 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 ('15.1, 2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
6. 3대 비급여 개선	①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	병원별 80%	진료과목별 2/3 (약 65%)로 축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14.8.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의료기관정책과 (02-202-2744, 2479)
	② 상급종합 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	50% 이상	70% 이상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9.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3)
	③ 포괄간호 서비스 확대 운영	28개 병원	◦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 (참여 신청을 하는 병원 약 100 개 예상)	'15.1.1일~ 지속 시행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24)
7.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75세 이상 건강보험 지원 (적용)	◦ ('15.7월) 70세 이상 대하여 임 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 대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15.7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8.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 평가를 거쳐 보험 등재됨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는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는 특례제도 신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 칙·고시개정안 입법예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심평원 장 공고) (‘15. 3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3)
9.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전면금연 (예 :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	100㎡이상 전면금연구역 운영(2014년부터)	모든영업소(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 (‘15. 1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4)
10.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기초 생활보장 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 선정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수준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수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수준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수준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	-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수준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의료·교육급여) 현행과 동일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노인·장애인 등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464만원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취약가구 413만원, 그 외 290만원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② 2015년 최저생계 비 2.3% 인상	◦ 4인가구 최저생계비 : 1,630,820원	◦ 4인가구 최저생계비 : 1,668,329원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5.1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044-202-3056)
11. 갑작 스런 위기가구 를 신속히 지원할 긴급 복지지원 확대	① (긴급 복지) 금융재산 기준 완화	◦ 300만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 법령정 보> 입법/행정예고>「금융재산기준」일부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15. 1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
	② (긴급 복지) 지원단가 인상	◦ 4인기준 생계지원 월 108만원 등	◦ 4인기준 생계지원 월 110만원 등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 법령정 보> 입법/행정예고>「긴급지원 지원단가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15. 1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
	③ (긴급 복지) 위기상황 으로 인정하는 사유 확대	◦ 실직, 휴·폐업 인정 시 6개월 경과규정 ◦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 우 가족이 없거나 관 계단절	◦ 실직, 휴·폐업 인정 시 12개월 경과규정 ◦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우 가족구 성원이 모두 취약계층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 법령정 보> 입법/행정예고>「위기상황으로 인정 하는 사유」일부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15. 1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2.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카드 통합	-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사용 시 각각의 신용카드 발급 해서 사용 - 최대 4개의 카드 발급 불가피	- 기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 맘편한, 아이행복(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 기능 사용 가능 - 다수의 신용카드 발급 불필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15. 4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044-202-3204)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 지원	- ('15.2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8)
14.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록 허용	-	-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신청 및 등급심사를 거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상이등급자(9천여명)는 등록절차 간소화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5. 5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8)
15.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등급 1급부터 3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6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1)
16. 장애수당 급여인상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3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4만원	'15.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044-202-332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확대		◦ 장애등급 1급 ~ 2급	◦ 장애등급 1급부터 6급	'15.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18.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만 14세가 될 때까지	◦ “만 15세가 될 때까지”로 확대	입양특례법 (’12. 8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특별대책팀 (044-202-3413)
19. 단기가사서비스 지원강화		◦ (질환) 골절, 중증질환 ◦ (신청기한) 최근 2개월 이내 ◦ (대상자 수) 5천명	◦ (질환) 골절(관절증, 척추증 포 함), 중증질환 ◦ (신청기한) 골절 및 수술일자로 부터 2개월(단, 입원으로 2개월 도과시에는 퇴원일자로부터 1개 월이내 신청가능) ◦ (대상자 수) 7천명	'15.2월~
				노인정책과 (044-202-3453)
20.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강화	① 독거노인 돌봄	◦ 기본돌봄서비스 : 20 만명 ◦ 응급안전서비스 : 8.1 만명 ◦ 독거노인친구만들기 : 60개소 ◦ 사랑잇기 : 4.6만명	◦ 기본돌봄 : 22만명 ◦ 응급안전 : 9만명 ◦ 독거노인친구만들기 : 80개소 ◦ 사랑잇기 : 5.4만명 등	'15.1월~
	② 학대 피해노인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 : 27개소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배치	◦ 노인보호전문기관 : 29개소 ◦ 전문보호상담인력 추가 배치가능	'15.상반기
	③ 실명예방 지원	◦ 안검진 단가 : 36,250원 ◦ 개안 수술비 지원 : 2,440안	◦ 안검진 단가 : 43,000원 ◦ 개안 수술비 지원 : 5,000안	'15.1월~
				노인정책과 (044-202-346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④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규)	-	○ 지원대상 : 저소득노인 약1,900명 ○ 예산 : 20억원	노인정책과 (044-202-3463)
21. 노인 사회활동지원		○ (사업명칭) 노인일자리	○ (사업명칭) 노인사회활동지원	'15.1월~
		○ (사업규모) 28만명* *재능나눔 시범사업 3만 명 별도	○ (사업규모) 33.7만명	
		○ (재능나눔 활동기간) 3 개월	○ (재능나눔 활동기간) 6개월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044-202-3472)
		○ (전담인력 인건비) 월 109만원(1,823명)	○ (전담인력 인건비) 월116.7만원 (1,929명)	
22.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변경		○ 평가 주기 2년 ○ 식품위생관리 관련 평 가지표 無	○ 평가 주기 변경, 평가지표 신설 및 강화, 평가 결과 하위기관의 질관리를 위해 수시 평가 실시 등	장기요양기관평가 방법등에 관한 고시 (’15.1~)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3, 3511)
23. 보육료·유아 학비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 보육료는 아이사랑카 드, 유아학비는 아이즐 거운카드로 지원	○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가능	영유아보육법 (’15. 1월)
		○ 아이사랑카드는 3개사 (KB국민,우리,하나)에서 발급하고 유아학비는 NH농협에서만 발급	○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NH 농협, BC, 롯데 7개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가능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내년 1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9)
2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어린이집 기부채납에 따른 혜택 없음	○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 납하는 경우 기업의 근로자 자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가능 ◦ 공동주택 입주민이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입주민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현행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5. 1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기반과 (044-202-3545, 3579)
25.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시범사업 성격으로 전국 98개소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230개소) 하여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	영유아보육법 ('14.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1)
26.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확대	◦ 0 - 2세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15만원 지원 ◦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 겸직원장 지원비 : 월 7.5만원 지원	◦ 0 - 2세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17만원 지원(2만원 인상)	- ('15.1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 3564)
27. 실업크레딧 도입	◦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부유예 신청 (가입기간 불인정)	◦ 구직급여 수급기간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가입기간으로 산입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최대 1년) - (대상자) 구직급여 수급자 - (인정소득) 실직 전 소득의 50%(최대 70만원) -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75%	국민연금법 ('15.7월, 현상임위통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28.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소득기준 : 135만원 미만 - 10인 미만 영세사업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소득 기준 확대 : 135만원 → 140만원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개정('14.1월) 시행('15.1월)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지원 ○ 농어민 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소득월액 : 85만원 - 85만원 이하 : 보험료의 1/2 지원 - 85만원 초과 : 월 38,250원 지원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지원 ○ 농어민 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소득월액 상향 : 85만원 → 91만원 - 91만원 이하 : 보험료의 1/2 지원 - 91만원 초과 : 월 40,950원 지원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29. 기초연금선정 기준액 상향조정	○ (선정기준액) 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 (지급액) 최대 20만원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등 10~20만원 ** 부부수급자 16~32만원	○ (선정기준액)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15.1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지급액) 최대 20만 3,600원('15.4월,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예정)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등 10만 1,800원 ~ 20만 3,600원 ** 부부수급자 16만 2,880원 ~ 32만 5,760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15.1월, 4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28)
여성가족부			
1.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 여성발전기본법 ○ (추진체계)여성정책조정위원회, 여성책임관 ○ (보호범위)모성권 ○ (행사)여성주간	○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추진체계)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책임관 ○ (보호범위)부성권까지 확대 ○ (행사)양성평등주간 ○ 양성평등실태조사 실시	양성평등기본법 ('15.7.1)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2100-6149)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센터)140개소,	○ (센터)150개소	'15.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인프라 및 사업 확대	◦ (과정)630개, 14,000명	◦ (과정)720개, 15,800명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4)
3.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설치	◦ 미설치	◦ 안전총괄 기관으로 안전센터 신 규 설치	'15.4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5)
4. 학교 밖 청소년지원 정책 본격화	◦ (근거) 청소년복지지원 법 제17조 *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 (프로그램) 직업체험(두 드림), 학업복귀(해밀) ◦ (전달체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54개소)	◦ (근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 한 법률 ◦ (프로그램)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 (전달체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200개) ◦ (기타) 학교장 연계 의무화 실태조사 실시·공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14.5.29)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8)
5.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연중 확대 운영	◦ 2014년 8월 설립 ◦ 하반기 시범운영(1~3 주과정, 6회)	◦ 연중 확대 운영(1~5주과정, 13회)	'15.1월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02-2100-6302)
6. 청소년증 발급절차 개선	◦ (신청인)청소년 본인 ◦ (신청장소)주소지 읍· 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가까운 읍·면·동 주 민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15.1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41)
7.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최초 시행	◦ 개인이 직접 또는 변 호사 등을 통해 양육 비 관련 소송을 건건 이 개별적으로 수행	◦ 양육비이행관리원(3월말 설립 예정)에 한 번만 신청하면 자녀 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관 련 상담, 당사자간 합의 지원, 소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3.2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송 등 법률지원, 채권추심 지원,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뉴스·소식> 보도자료>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강화제도 마련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33~5)
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만12세미만 아동대상)	◦ 월 7만원/인 지원	◦ 월 10만원/인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15.1.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5)
9.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실시	◦ 6개 센터 시범사업	◦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15.1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02-2100-6368)
10.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 스톱지원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해바라기센터로 명칭 일원화	사업 지침 (2015.1.1.)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2/ 6385)
11.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시설 신규 지원	◦ 총 보호시설 27개소	◦ 총 보호시설 29개소로 확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1분기)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5)
12. 성매매 방지 내실화	◦ 신설	◦ 1년 중 1주일을 성매매 추방주 간(매년 9.19~9.25)으로 지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9개소	운영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개소 추가(총 10개소)	관한 법률 (15.1분기)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6396/6398)
13.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 가족보호시설 18개소 - 주거지원시설 199호 - 신설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38백만원 - 신설	- 가족보호시설 21개소로 확대 - 주거지원시설 239호로 확대 1366 여성긴급전화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확보(18명 신규)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확대 631백만원 - 가정폭력 시설 종사자 치유프로그램 신규지원 40백만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2분기)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02-2100-6425)
14.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횟수)2,500회 (지역)전국 10개 권역	(횟수)3,500회 (지역)전국 15개 시·도	'15.1월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2)
1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 생활안정지원금 월 101만2천원 - 간병비 월 32만8천원 -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지원금 연 359만4천원 - 신설 - 신설	- 생활안정지원금 월 104만3천원으로 인상 - 간병비 월 45만4천원으로 인상 -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지원금 연 427만원으로 인상 - 맞춤형 지원 - 국제학생작품공모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5.1월)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02-2100-643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법무부			
1.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 의무 도입 및 대한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 명시 의무 ○ 1개월	○ 설명 의무 ○ 3개월로 연장	상법 보험편 (‘15.3.12.)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2.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 전면 금지	○ 일부 허용	상법 보험편 (‘15.3.12.)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3. 보험모집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 규정 없음	○ 보험대리상 및 보험설계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하고, 그 효 력이 보험회사에게 미치게 함	상법 보험편 (‘15.3.12.)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4. 피보험자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제한	○ 규정 없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 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실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보 험자가 그 가족에 대하여 대위권 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5.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 보험금청구권 : 2년 ○ 보험료청구권 : 1년	○ 보험금청구권 : 3년 ○ 보험료청구권 : 2년	상법 보험편 (‘15.3.12.)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6. 단체생명보험의 수익자는 가족으로		◦ 규정 없음	◦ 단체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려면 이를 명시한 규약이나 개별 서면동의가 필요	상법 보험편 (‘15.3.12.)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7. 회생 절차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 방지		◦ 회생절차에서 M&A가 시도되는 경우 엄격하게 심사하는 규정 없음	◦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으로 회생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고, 인수자가 구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도록 함 ☞ (참고) 법무부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회생절차 악용방지를 위한 도산법 2015. 1. 16. 시행 예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1. 16.)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8. 중소기업에 대한 간이회생제도 도입		◦ 채무관계가 단순한 중소기업도 일반회생절차를 이용	◦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의 재량화(회생절차기간 약 3개월 단축) ◦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 간이조사위원제도 신설(조사위원 선임비용 약 2000만원 절약) ☞ (참고) 법무부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을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3월)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9.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의지대로	① 공익 신탁 설립 요건 완화	◦ 허가제	◦ 인가제로 완화	공익신탁법 (‘15.3.19)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② 공익 신탁 담당부처 일원화	◦ 주무부처	◦ 법무부로 일원화	공익신탁법 (‘15.3.19)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사법무과 (02-2110-3167)
	③ 공익 신탁 인가절차 구체화· 서식마련	○ 규정 없음	○ 공익신탁 인가절차 구체화 ○ 인가신청서 등 서식 마련	공익신탁법 시행령 (‘15.3.19)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15.3.19)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④ 공익 신탁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 규정 없음	○ 공시제도 도입 ○ 일정규모 이상 공익신탁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화	공익신탁법 (‘15.3.19)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⑤ 공익 신탁의 약용방지 를 위한 제도 도입	○ 규정 없음	○ 신탁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 공익신탁이 종료될 경우 잔여재 산은 국가, 지자체나 유사한 목 적의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도 록 함	공익신탁법 (‘15.3.19)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10.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 466개 마을 733명 마 을변호사	○ 전국 1,412개 모든 읍·면 1,455명 마을변호사로 확대 ☞ (법무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우리 마을에 ‘변호사’가 생겼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법무부 법무과 (02-2110-3170)
교육부				
1.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 시행		○ 이전 교복 구매 형태 : 개별구매, 공동구매,	○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 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일괄구매	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하게 됨 - 교복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에서 선정한 교복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받음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교복 학교주관 구매 시행 및 '교복구매 운영요령(2014년 개정)' 안내	교육부 학생복지 정책과 (044-203-6522)
고용노동부			
1.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5,210원	◦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	고용노동부 고시(2014-29호) (15.1.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29/7535)
2.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제 도입	◦ 없음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시 포상금 50만원 지급 ☞ (신고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 <게시예정>	국가기술자격법시 행규칙 (15.1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평가과 (044-202-7290)
3. 일학습병행제 참여대상 확대	◦ 현 고교 졸업생(최종학 기 현장 실습생 포함)	◦ 고교 재학생 단계로 확대 시범운영 -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참여 특성화고 9개교 재학생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정책과 (044-202-7273)
4. 직업훈련 선택권 및	◦ 직업훈련 참여자 간	◦ 구직자도 (40시간 이상) 사업주	실업자 등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훈련비 지원 확대	타 훈련 참여 불가능 - 계좌한도(200만원)내 훈련비 지원	훈련 참여 가능 - 동일 직종 취업 시 훈련비 전액 지원	직업능력능력 개발실시규정 (‘15.1)
			고용노동부인적 자원 개발과 (044-202- 7319)
5.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 초단시간 근로자 등의 훈련 참여 불가능 - 실업자훈련 간 참여방 식 이원화	○ 초단시간 근로자, 택배기사 등 실업자 훈련 참여 가능 - 실업자훈련 참여방식을 ‘내일배 움카드’로 일원화	실업자 등 직업능력능력 개발실시규정 (‘15.1)
			고용노동부인적 자원 개발과 (044-202- 7319)
6.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신설	○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부터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가 가능 ○ (채용일정·결과 등의 공지) 구 인업체는 채용서류, 채용일정, 채용여부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알려줘야 함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 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 출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할 수 없음 ※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 우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 인을 받아 채용심사비용의 일 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해명자 료>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채용서류 돌려 받을 수 있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15. 1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과 (044-202-733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종전: 월보수 135만원 미만 - 개선: 월보수 140만원 미만	수혜대상자 범위를 월보수 135만원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개정	보험료징수법 하위 고시 개정 ('15.1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48)
8.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신설	고졸 학력의 근로자가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근속한 경우 연 100만원 장려금 지급(최대 3년)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15.4)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48)
9. K-Move 센터 설치 확대	7개국 *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독일	10개국으로 확대 * 호주, 싱가포르 추가 설치 (1개국 미정)	2015.3.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8)
10.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지원요건) -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 (지원수준) - 인건비의 50%를 1년간 지원	(지원요건)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으로 요건 현실화 (지원수준) 중소기업에 한해 인건비 외에 간접노무비 1년간 추가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 ('15. 1월)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시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단 (044-202-7502)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를 지원 - (전환장려금) 전환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지급한 임금 및 그 밖의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정액 지원(중소·중견기업만) - (대체인력지원금) 전환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시행지침 ('15. 1월)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단 (044-202-7505)
	-	○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중소·중견기업)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 ('15. 1월)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단 (044-202-7505)
11.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 근로자지원 : - 연간 5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지원	○ 근로자지원 : 상동 ○ 사업주지원(신설) :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최대 1년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시 ('15. 1월)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9, 7462)
1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14년말 종료 ○ 경비업종 지원기준율(23%)	○ '15년 ~ '17년말까지 지원기간 연장 ○ 경비업종 지원기준율(12%) ○ 정년요건 완화(사업개시 이후 정년 미설정 → 신청 현재 정년 미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시 ('15.1월)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사업개시 후 정년 미설정	설정)	(044-202-7459, 7462)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무기계약 전환시, 첫 6개월간 월30만원 이후 6개월 월30만원 지원	◦ '15.1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비정규직채고용) 지원 수준 조정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첫 6개월간 월 40만원/ 이후 6개월 월 80만원 으로 상향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책마당>대 상자별정책(여성)>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고시 (2015.1.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8)
14.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변경 및 '15년 부담기초액 확정	◦ 장애인 고용부담금, 미달인원 구간별 차등 부과	◦ 미달인원 전체 일괄부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장애인 고용 부 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시 ('15. 1월)
	◦ 부담기초액 월 67만원 ◦ 미달인원 구간별 차등 부과 ◦ 가산구간 4단계	◦ 월 71만원 ◦ 미달인원 전체를 하나의 부담기 초액으로 일괄부과 ◦ 가산구간 5단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1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확대	◦ 건설현장은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 2015.1.1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 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 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 명 이상인 공사현장은 보건관리 자를 선임하여 보건관리자의 직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5 ('15.1.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 7742)
인사혁신처			
1. 지방인재	Ⅰ 대상 ◦ 5급 공채, 외교관후보 자 선발시험	◦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7급 공채(이에 상당하는 외무공	공무원임용 시령령,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채용 목표제 7급 공무원 공채시험 까지 확대			무원 공채 포함)	균형인사지침 (’15. 1)
	② 시험실시 단위별 채용목표 인원	○ 시험실시단계별로 당 초합격예정 인원의 20%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합격예정 인원의 20% ○ (7급 공채 및 이에 상당하는 외 무공무원 공채시험)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합격예정 인원의 30%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2-2100- 6613)
	③ 추가합격 상한	○ 목표인원에 미달하더 라도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 제1차시험에서는 추 가합격상한(10%) 의 제한을 두지 않음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추가합 격은 당초합격예정인원의 10% -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상한 (10%)의 제한을 두지 않음 ○ (7급 공채 및 이에 상당하는 외 무공무원 공채시험) 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합격은 당초합격예정인원의 5%	
	④ 추가 합격선	○ 1차 : -3점, 2차 : -2점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1차 -3점, 2차 -2점 ○ (7급 공채 및 이에 상당하는 외 무 공무원 공채시험) 필기 -2점	
행정자치부				
1. 재외 국민에 대한	㉠ 국외 이주자의 주민등록	○ 주민등록 말소	○ 주민등록 유지 (거주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법 (’15.1.22)
				행정자치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 증 발급가능	(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주민과 (02-2100-3983)
	② 재외 국민 주민등록 (말소자, 미등록자)	◦ 주민등록 말소	◦ 주민등록 허용 (말소자 → 재외국민으로 재등록) (미등록자 → 재외국민으로 신규 등록)	주민등록법 (‘15.1.22)
				행정자치부 주민과 (02-2100-3983)
	③ 재외 국민 영주귀국 자의 주민등록 (해외이주 포기자)	◦ 주민으로 등록	◦ 주민등록 변경 (재외국민 → 거주자)	주민등록법 (‘15.1.22)
				행정자치부 주민과 (02-2100-3983)

경찰청

1. 경비 산업 활성 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규제 완화· 폐지	① 일반 경비원 신입교육 시간 완화	◦ 28시간	◦ 24시간으로 완화 경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경 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알림	경비업법 시행규칙 (‘14. 12월)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1331)
	② 경비업 변경신고 기간 완화	◦ 15일 이내 신고	◦ 30일 이내로 완화 경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경 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알림	경비업법 시행령 (‘14. 12월)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1331)
	③ 경비 협 회 설립제한 규정 폐지	◦ 발기인 5인 이상	◦ 발기인 제한 규정 폐지 경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경 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알림	경비업법 시행령 (‘14. 12월)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13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	○ 최종별로 구분, 다양한 기능에서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담당	○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실종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체계 마련 ○ 분야별 특화된 수사 전문성 및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 여성·아동 등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보호와 지원 전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3150-1391)
3.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인상	○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15년 이상 30년 미만 경장, 30년 이상 경사급 보수	○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30년 이상 경위급 보수 ☞(참고) 청원경찰법 제6조	청원경찰법 ('14. 12월)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756)
국가보훈처			
1.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손자녀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 '45.8.15. 이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금 미지급 ○ 나이 많은 자에 지급	○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1명에 한하여 보상금 지급 ○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독립유공자예우법·시행령 ('15. 1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11)
2.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 신설	○ 독거이며 3개 이상 질환이 있는 생계곤란 참전유공자에게 보훈 섬김이가 주3회 방문하여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 복지인력 충원(243명) - 보훈복지사 17명 - 보훈섬김이 226명	2015년도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044-202-5620)
3. 남양주보훈요양원 개원	○ 5개 보훈요양원 (수원·광주·김해·	○ 남양주보훈요양원 개원 - '15. 1.19부터 입소개시,	국가보훈처복지운영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구·대전)	'15. 2월 개원 ☎ (참고) http:// nyjcare.bohun.or.kr	(044-202-5631)
4. 남방한계선 인접지원에서 복무한 군인 등의 고엽제환자 인정기간 확대	○ 1967.10.9 ~1970.7.31	○ 1967.10.9~ 1972.1.31 로 확대 ☎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정보마당>법 령정보>보훈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환자지원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 (법사위계류중 공포즉시시행)
			국가보훈처제대군 인지원과 (044-202- 5759)
5. 복지카드 기능통합	○ LPG복지카드와 고속 도로 통행카드 따로 발급	○ LPG할인과 통행료 감면기능 통 합하여 하나의 카드로 발급 ☎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정보마당>법 령정보>보철용차량 지원지침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14.12.23)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044-202-5761)
국방부			
1. 5급 공채 공무원의 중위 임관제도 보완	○ 5급 공채공무원 중위 임관	○ 외교관 후보자 선발 후 국립외교 원을 수료하여 5등급 외무공무원 으로 임용된 사람도 중위로 임관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 군인사법>제12조 장교의 초임계 급 등	군인사법 (‘15. 4.1, 잠정)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2.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선발대상 확대	○ 군사적인 능력과 전 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연 2회 선발하여 전역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	○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 역 재임용 선발대상을 대위~중 위, 중사로 확대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군인 사법>제11조 장교의 임용 등	군인사법 (‘14. 1. 11)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3. 진급·전역 시 범죄경력조회 강화	진급 및 전역 시 민간 법원에서 처벌받은 경력조회를 위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활용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경력을 진급 및 전역 심사시 조회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군인사법시행령>제6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인사법시행령 (‘14. 7. 18.)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4.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 완화	- 일반군무원 - 공개경쟁채용시험 5급·7급 : 20~40세 9급 : 18~40세 - 특별채용시험 2·3·6·7급 : 53세 4·5·8·9급 : 45세 - 기능군무원 - 공개경쟁채용시험 - 기능6~9급 : 18~40세 - 특별채용시험 - 기능6~9급 : 45세	- 일반군무원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 18세 이상 - 기능군무원 - 기능 6급 이하 : 18세 이상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15. 1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05)
5.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자격기준 개선	자격기준 : 상담관련 자격증과 상담 경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채용시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자격기준 변경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10년 이상의 군 복무경험자에 한해 상담경험을 인정)	군인사법 시행령 (‘14. 11월)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4)
6.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훈련 소집제도 개선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	- 훈련 부과와 상관없이 원하는 일정에 훈련 휴일/전국 단위 훈련 신청 가능 - 향방작계훈련은 1차 보충훈련부터 휴일훈련 신청 가능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15. 1월)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일반 예비군훈련 입소 허용시간 변경	○ 09:30까지 입소 허용	○ 소집 통지 시간인 09:00까지만 입소 허용 ☞ (참고) 예비군 홈페이지>공지사항>15년 달라지는 예비군훈련 제도 안내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15. 1월)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8. 일반 예비군훈련 시 M16소총 사용	○ 일반훈련 시 칼빈소총 사용	○ 일반훈련시 M16 사용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15. 1.1)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9. 병 봉급 인상(15%)	○ 병 봉급 이병 112,500원 일병 121,700원 상병 134,600원 병장 149,000원	○ 병 봉급 인상(15%) 이병 129,400원(증 16,900원) 일병 140,000원(증 18,300원) 상병 154,800원(증 20,200원) 병장 171,400원(증 22,400원)	공무원보수규정 (15. 1.1)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10.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 강화	○ 병 사망위로금 인상 • 5백만원 지급	• 1천5백만원으로 인상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15. 1월)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21)
	○ 병 상해보험금 지급 신설	○ 1억원 지급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15. 1월)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1. 장병 전투임무 수행 및 복무여건 향상을 위한 보급품 지원 확대	① 핵심 개인장구류 집중 보급	◦ 노후 및 부족물자 위주의 보급	◦ 핵심 개인장구류를 하나로 묶어서 부대 단위로 집중 보급하여 완결 - 2015년까지 전방 GOP사단 전투부대 100% 신형 보급	-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99)
	② 동운동복 및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 입대시 초도 1매 지급	◦ 입대시 초도 2매 지급	-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99)
	③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확대	◦ 개인일용품 중 현금지급 품목 : 세숫비누, 세탁비누, 치약, 칫솔	◦ 개인일용품 보충보급품 전 품목 현금지급 - 추가품목 : 휴지, 가루비누, 면도날, 구두약	-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99)
	12.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 신설 *피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 경과로 법적보상 근거 없음	◦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법적근거 마련 ⁶³⁸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국방부 관계법령(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 4. 16.)
				국방부 시설기획과 (02-748-5859)
13. 군인·군무원 징계부가금 제도 시행	◦ 신설		◦ 군인·군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하여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군인사법 ('14. 12.), 군무원인사법 ('15. 4.)
				국방부 법무과 (02-748-681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위사업청				
1. 국산 SW 사용 시 인센티브 부여		○ 신 설 ○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시 SW 국산화 평가 배점 : 2.5점	○ 핵심기술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시 SW 국산화 항목/ 배점 반영 시행 : SW 중심사업 2점, 일반 핵심기술 1점 ○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시 SW 국산화 평가 배점 : 3점 * 상용SW 국산화 평가항목 추가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 행정규칙>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 가 및 협상지침,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 무처리지침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15. 1월)
				방위사업청 획득기반과 (02-2079- 6377)
2. 저가낙찰 방지 및 기술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한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 제안서 평가 시 비용평가 최고점 부여 제안비율 : 80%	○ 제안서 평가 시 비용평가 최고점 제안비율 상향 조정 : 80% → 90%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 행정규칙>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 가 및 협상지침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 (’15. 1월)
				방위사업청 사업운영평가팀 (02-2079- 5032)
3. 국산화 개발지 원사업 제도전 기회 제공 및 지원대 상 확대	Ⅰ 성실실패 제도전 제도 도입	○ 신 설	○ 성실실패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제도전 기회(최대 2년) 제공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 법령>행정규칙>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 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14. 12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 644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②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대상 확대	양산 및 운영 유지 중인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까지 확대 * 단, 국산화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부품은 제외 - 소재, 소프트웨어도 지원대상으로 확대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14. 12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2)
4.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 적용		신 설	- 유해물질 안전관리 필요품목 지정권자(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 명시 - 유해물질 안전 관련 품질보증 적용기준은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정하여 적용 - 유해물질 안전 관련 품질 검사를 거쳐 합격된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표시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방위사업법령>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15. 3월) 방위사업청 물자규격팀 (02-2079-4690)
병무청				
1.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입영선호시기(2~5월) 전산추첨에 의한 선발, 기타시기(6~12월) 선착순에 의한 선발	선호시기(2~5월), 기타시기(6~12월) 구분, 2개(1·2지망) 선택 후 추첨 ☞ (참고) 병무청홈페이지>뉴스마당>공지사항	지침 (2015년 2월 입영자부터)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3)
2. 306보충대 해체후, 사단직접 입영		306보충대 입영 후 관할 사단으로 배치	‘14년말 306보충대 해체 후, ‘15년부터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직접입영	지침 (2015년 1월 입영자부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3)
3.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 없음	◦ 면접·체력검사 등 현역병 모집 전형참석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 ※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 산 범위 내에서 응시횟수 통 틀어 2회까지 확대	병역법 (‘15. 1월 전형참석자 부터)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42)
4.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	◦ 성적(고교내신, 수능 등) 평가 요소 반영	◦ 성적 반영 축소 및 각 군 반영비 율 동일 적용하도록 모집병 선발 평가요소 개선 - 다만, 기술 중심의 지원병의 경 우 성적 반영을 폐지하고, 자 격·면허, 전공 위주로 선발 (‘16. 1월 입영자부터)	지침 (‘15. 1월 입영자 부터)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53)
5.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 없음	◦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규정 (‘15. 1월 입영자 부터)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49)
6. 사회복무요원 병가 미사용자 연가 가산	◦ 연가 : 31일 이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복 무의무 위반사실이 없이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가산 -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 2일 -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 1일	병역법 시행령 (2014.11.10)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042-481-301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 1년이상 근무해야 다른 업체로 전직 가능	○ 6개월만 근무해도 다른 업체로 전직 가능	병역법 시행령 (2014.11.10.부터)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 2773)
문화 · 체육관광부				
1.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부재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 로그램 신규 지원 ☞ (참고)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문 화예술교육과 (044-203- 2764)
2. 안전 하고 위생적인 체육시설 환경 조성	① 체육 시설 안전 기준 개선	○ 화재 대비 피난안내의 무 없음 ○ 체육시설 내 사고 발 생 시 보고 의무 없음	○ 화재 대비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 안내 ○ 체육시설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② 스키장 안전기준 개선	○ 안전망, 안전매트의 구체적인 기준 없음 ○ 길이 1.5km 이상 슬로 프에 스키구조요원 배 치 : 2명 ○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1명	○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 상(설면으로부터 1.5m 이상)이 되도록 설치, 안전매트의 두께는 50mm이상 ○ 길이 1.5km 이상 슬로프에 스키 구조요원 배치 : 3명 ○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2명	문화체육 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문화체육 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③수영장 안전·위 생 기준 개선	○ 탁도기준 : 2.8NTU ○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 기준 없음	○ 탁도기준 : 1.5NTU ○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 (비소 0.05mg/l이하, 수은 0.007mg/l 이하, 알루미늄 0.5mg/l 이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문화체육 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3.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모태펀드에 스포츠계정을 신설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4.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	○ 태권도 콘텐츠 공모, 태권도 관광자원화 등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044-203-3165)
5. 창조관광사업 개편 및 창조관광육성펀드 도입		○ 38백만원	○ 154백만 원으로 확대 개편 - 2단계 맞춤형 지원 및 창조관광사업 지정 * 참신하고 혁신적인 중소 관광사업체는 누구라도 지원 가능 - 창조관광육성펀드 도입(관광기금 130억 원) (참고)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공모전 홈페이지(www.venture-visitkorea.com) : 추후 개편 예정	관광진흥개발기금 법, 고시('15.1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16)
6. 장애물 없는 관광지 「2015 열린		-	○ 전국 관광지 및 관광사업장 5개소 선정/ 개소 당 2억원 한도 내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관광지」사업		에서 장애물 없는 환경 개선 지원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사업 공고일 부터 확인 가능	관광정책과 (044-203-2816)
7. 호텔 등급 평가방식 및 표시체계 개편	○ 단일 평가기준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새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공·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50% 감면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042-481-4909)
방송통신위원회			
1. EBS 지상파 다채널 방송 시범서비스	지상파 방송사별 1개 채널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 가구는 EBS 채널 1개 추가 시청 가능	방송법 및 전파법 ('15. 1월)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5)
2.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 신 설	이통사(알뜰폰 포함)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 시, 청소년유해 매체물과 음란물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15. 4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윤리과 (02-2110-1553)
3.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 신 설	웹하드·P2P 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15.4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윤리과 (02-2110-1553)
4.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실시	◦ 신 설	방송광고 제작비 50% 지원 - TV광고 5,000만원, 라디오광고 500만원 한도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7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운영	○ 부산, 광주, 인천 등 5개 지역에 서비스 제공	•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운영을 통해(전국 6번째), - 지역 시청자에게 미디어교육, 방송제작장비 지원 등 서비스 제공	방송법 제90조의2	
			방통위 시청자지원팀 (02-2110-1297)	
미래창조과학부				
1.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의무화	① 분리 발주 대상 SW	○ 5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가인증 획득 ○ 조달청 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 ('15. 1월)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02-2110-1837)	
	② 제외 사유 적용 주체	○ 5천만원 이상 ○ 국가인증* 획득 * GS, CC, 행정업무용, NET, NEP, 국정원 검증·지정	○ 조달 발주 사업의 경우, 제외사유 적용 시 사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사전 검토 의무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 ('15. 1월)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02-2110-1837)
2.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및 중소기업 확대 적용	①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SW사업의 유지 및 보수 사업에 한시적 참여허용	○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SW사업의 유지 및 보수 사업에도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15. 1월)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02-2110-1833)
	② 중소기업 범위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5.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481-4541)
3. 공개SW R&D 과제 참여시 민간부담 및 기술료 면제	① 공개SW 개발과제 대상 정부출연 금 면제	○ 총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 면제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공고 제 2014-501 ~ 505)정보통신·방송 연구 개발 사업 관리규정 및 지침 개정(안) 행 정예고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부속훈령 (’15. 1월) 미래창조 과학부 SW진흥팀 (02-2110-1805)
	② 공개SW 개발과제 대상 기술료 면제	○ 지원된 정부 출연금의 10% 이상 납부	○ 면제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공고 제 2014-501 ~ 505)정보통신·방송 연구 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지침 개정(안) 행 정예고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부속훈령 (’15. 1월) 미래창조 과학부 SW진흥팀 (02-2110-1805)
4. 사물 인터넷산 업 활성화 지원	① 사물 인터넷 분야 개방형 생태계 구축	-	- 개방형 IoT 플랫폼 개발 및 소스 공개로 사물인터넷 신제품 개발 촉진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신산업팀 (02-2110-1722)
	② 사물 인터넷 실증단지 조성	-	-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추진단과 사 물인터넷 실증센터 운영을 통한 서비스 발굴 및 실증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신산업팀 (02-2110-1722)
	③ 사물 인터넷 DIY 환경	IoT 혁신센터 개별 운영	- DIY오픈랩 확대 운영 : ‘14년 3개 소(강남, 용인, 송도)→’15년 지방 2개소 추가	- 미래창조과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확산		- 초등학생 대상 사물인터넷 DIY체험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경진대회 개최	인터넷산업팀 (02-2110-1722)
	④ IoT 혁신센터 운영	-	- 창조경제혁신센터, 무한상상실 등과 협력확대 및 IoT 혁신센터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산업팀 (02-2110-1722)
5. 간접비 산출방식 개선	① 간접비 산출방법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 등급별 일괄적용 - A등급 20%, B등급 15%, C등급 10%, D등급 5%	전 대학의 실소요 원가계산 방식으로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 ('15. 4월 예정)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02-2110-2731)
	② 간접비 비율 가·감율 적용	국가R&D사업 참여제한의 기간 및 건수에 따라 최대 -2.8%p 감율	- 국가R&D사업 참여제한의 기간 및 건수에 따라 최대 -5.0%p 감율 - 연구비 관리수준에 따라 ±2.0%p 차등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 ('15. 4월 예정)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02-2110-2731)
6. ICT 학점이수인턴제 추진		- 신규 사업 - 고등교육법상 '현장실습'에 따른 학점인정 이외에 ICT 특별법에 따른 학점이수인턴제를 신설	'14년 2월 시행된 ICT 특별법 및 시행령 등에 반영된 「학점이수인턴제」를 추진 - 이에 따라 「ICT 학점이수인턴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부와 협의의 거쳐 '15년 1학기부터 추진할 계획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 ('14. 2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 기반과 (02-2110-285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제도 안내,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참가 기업 및 대학을 선정하고, 기업에서 발굴한 R&D 프로젝트, 서비스 개발 등의 과제를 대학측과 공유하여 수요 기반의 매칭을 지원 - 참여 기업, 인턴, 대학 등에 근무 환경 구축, 사전교육, 인턴 지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15년도 인턴 150여명을 목표로 추진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기업은 톡톡 튀는 인재를, 학생은 현장학습에 학점까지”	
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제도 폐지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업 최초 등록 후 매 3년마다 시·도지 사에게 등록기준에 관 한 사항을 신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 (참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처리외안> 법률안>「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안(권은희의원 등 10인)	정보통신 공사업법 (’15.3월에정)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02-2110-2958)
8.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최소화	① 발신 번호 변작방지 등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일부 통신사 자율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15. 4월)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02-2110-1947)
	②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 스 사업의	등록(등록요건* 완비) 후 사업 가능 * 발신번호 변작방지 등 기술적 조치 구현, 관 련 인력 및 물적 시설 확보 등	전기통신사업법 (’15. 10월) 미래창조과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등록제 도입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신자원정책과 (02-2110-1947)
농림축산식품부				
1.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가등기 시행	○ 신규	○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 (기재예시) 동 재산은 보조금을 지 원받아 취득한 것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보조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6월, 잠정)	
			농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 (044-201-1382)	
2. 농업법인의 경영활동 지원 강화	□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 농업경영, 농산물 가공· 유통, 농작업 대행 등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 임범위 ○ 무한연대 책임 □ 영농조합법인 조직변경 유형 ○ 합명·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범위 추가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 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 농원사업 ○ 출자액 한도 ○ 유한·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으로도 변경 가능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14.12 공포, 잠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6월, 잠정)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7)	
3.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시행	○ 신규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 트 시행 - 3~4년간 최대 70억원(국비 기준)	-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참고) 지역발전위원회홈페이지>지역위 소식>보도자료>“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 책, 내년도 예산으로 구체화”	
4.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보험료 자부담 축소	◦ 자부담 50%	◦ 자부담 20%	-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2)
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기준소득금액 85만원	◦ 기준소득금액 91만원 ☞ (참고) 농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15. 1월)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
6.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 신규	◦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 시범사업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 식>보도자료>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농어업재해 보험법 (‘15. 6월)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044-201-1780)
7. 밭농업직불제 확대	◦ 신규 ◦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 40만원/ha	◦ 밭고정직불제 도입 - 지급액(모든 품목) : 25만원/ha * 기존 밭농업직불대상인 26개 품 목 : 15만원/ha 추가 지급 - 50만원/ha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 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밭농업직접지불 제사업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5.1월)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044-201-177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8. 쌀직불금 지원 확대	○ 지급단가 - 90만원/ha ○ 지급대상자 기준 - 2년이상 경작면적 1만㎡이상 또는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 100만원/ha - 1년이상 경작면적 1천㎡이상 또는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5.1월)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044-201-1778)
9.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3% - 농기계구입자금 - 귀농인창업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축산경영종합자금 -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 농업경영회생자금	○ 2% - 농기계구입자금 - 귀농인창업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축산경영종합자금 -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 1% - 농업경영회생자금  (참고) 농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5. 1월)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6)
10.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43개 품목 ○ 종합위험보장방식 - 배(12개 시군) - 단감(3)	○ 46개 품목 - 배(30개 시군) - 단감(12) - 사과(3)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작물재해보험, 보험대상 품목 및 종합위험보장방식 확대	농어업재해 보험법 시행령 ('15. 2월)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044-201-1797)
11.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 3만원/3.3㎡	○ 3.5만원/3.3㎡	농지규모화사업시행지침 ('15.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 농지규모화사업	농식품부 농지과 (044-201-1738)
12. 쌀 관세화 시행	○ 쌀 관세화 유예	○ 쌀 관세화 이행 - 수입가격의 513%만큼 관세를 납부하면 쌀 수입 가능 -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관세법 시행령」 (2015.1.1)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2)
13. 쌀 부정유통 방지	○ 국산쌀-수입쌀 혼합 판매시 혼합비율 표시 ○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판매시 혼합비율 표시 ○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시 처벌기준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양곡관리법 (2015년 6월 또는 7월)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5, 1820)
14. 선박에 대한 아시아메미나방 검사수수료 한시적 인하폭 확대 운영	○ '14년도 20% 한시적 인하	○ 1년간('15년) 한시적 인하폭 25%로 확대 ☞ (참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사전공표대상정보>이사회 개최 결과>제9차 임시이사회 결과 의안번호 제2014-17호	-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5.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확대	○ 허가대상 - 소 : 600㎡ 초과 - 돼지 : 1,000㎡ 초과 - 닭 : 1,400㎡ 초과 - 오리 : 1,300㎡ 초과 * 15.2.22일까지	○ 허가대상 : 준전업규모까지 확대 - 소 : 600 ~ 300㎡ - 돼지 : 600 ~ 300㎡ - 닭 : 1,400 ~ 950㎡ - 오리 : 1,300 ~ 800㎡ * '15.2.23일~'16.2.22일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15.2월)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17)
16.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 이력관리 품목 - 소 및 쇠고기 (수입산 포함)	-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확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돼지 및 돼지고기이력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4.12.28.)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62)
17.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지원	○ 신규	○ 국내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 '15년 지원 규모 : 20개소 - 개소당 지원한도 : 6억원 (보조 3억원, 융자 3억원)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30%(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2)
18.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 확대	○ 인증대상 축종 - 산란계, 돼지	○ 인증대상 축종 추가 - 산란계, 돼지, 육계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14.12.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83)
19. 무허가 축사 개선	○ 육계·오리의 흙바닥에 사육 - 축사 미인정 ○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 ○ 신·증축시 축사거리제한	○ 육계·오리의 흙바닥에 사육 - 바닥에 왕겨 또는 톱밥을 도포 시 축사로 인정 ○ 한·육우, 말도 운동장 허용 ○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 설정* * 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무허가축사 개선대책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가축분뇨법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입법예고>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15.3월 예정)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5) 환경부 유역총량과 (044-201-7021)
20. 가축질병 발생 시 방역대 내 선별적 살처분 실시	○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 - 500m 또는 3km ○ 가금 및 알 - 전부 이동제한 ○ 이동 차량 - 전체 소독 실시	○ 발생농가 살처분 원칙 -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 가금 및 알 - AI 검사 후 음성인 경우 출하 가능 ○ 이동 차량 - 축산차량만 선별 소독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14. 12월)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1.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 미지급	-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9)
22.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완화	- 인가 요건 -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등에 지회 확보 - 지정 요건 - 외식산업 관련 총 매출 40억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식재료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인가요건 - 폐지 - 지정 요건 - 해당 지구 내 외식업소의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14. 12월)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7)
23. 식품인력양성	○ 신규	- 교육인프라 구축 - 식품교육 수요조사·분석, 교육 프로그램 협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 공모 및 보급, 식품기업 구인·구직 정보시스템 구축 -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신직업 창업교육 및 NCS기반 대기업 교육프로그램, 대학생·수출형 중소기업 연수프로그램, 사이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18)
24.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 신규	- 성(省)별·도시별 수출 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 - 청도 물류기지와 현지 냉장·냉동 물류센터 이용 지원	-
			농식품부 수출진흥팀 (044-201-217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수출자 등록, 중문 라벨 제작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현지화를 위한 상품화·마케팅·법률자문 - 온라인 입점 절차·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 (참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25.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양화	- PC이용 - 신규	- 모바일앱으로 확대 (www.maglook.co.kr) - SNS서비스 제공(카카오톡스토리(카카오톡스토리ID : 농업관측센터))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0)
26. 농업전망 대회 개최	중앙대회(서울) 및 영·호남 지역	지역의 특성과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개최 - 1월 20일(중부권), 22일(호남권), 27일(영남권), 29일(충청권) 2월 3일(제주도) ☞ (참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관측정보 > 농업관측정보 > 농업전망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0)
27. 신재생에너지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 지열냉난방시설 - 목재펠릿난방기 - 지원대상 면적 - 0.1~0.5ha	- 지원대상 - 지열냉난방시설 - 목재펠릿난방기 - 지중열냉난방시설 - 폐열재이용시설 - 지원대상 면적 : 0.1~1.0ha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사업시행지침 (‘15. 1월)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 2258)
28. 농산물 우수관리(GAP) 제도	인증신청 - 3차례	인증신청(3→1차례), 인증 소요기간(126→42일), 구비서류(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선	○ 인증 소요기간 - 126일 ○ 구비서류 - 12종	→3종) ○ 인증신청 : 1차례 ○ 인증 소요기간 : 42일 ○ 구비서류 : 3종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 인증은 쉬워지고 안전성은 강화	칙 (14.9.30)
			농식품부 소비정책과 (044-201- 2425)
29.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해 형사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 천만원 이하 벌금	○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 시자에 대해 형사처벌 + 과징금 부과 -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 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 금으로 부과· 징수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현행법령>농수산물의 원산 지 표시에 관한 법률(15.6.4. 예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5.6.4)
			농식품부 소비정책과 (044-201-2419)
30.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연장	○ 유기 5년	○ 유기 5년 + 추가 3년* 지급 * (단가) 논 300천원/ha, 밭 600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 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친환경농업직접 지불사업시행지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15년, 잠정)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0)			
식품의약품안전처			
1.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 개방	○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상호 단절되어 식품안 전 문제 발생 시 효과	○ 12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되어 식품안전 일원화 행정지원 및 식 품안전정보의 공개·공유로 선 제적 식품안전 대응 체계 확립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 개방 (15. 4월)
식품의약품 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적 대응에 한계	☞ (참고) 식약처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본격 추진	통합식품 안전정보망 구축추진단 (043-719-4064)
2.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도입	◦ 구분표시 제도 없음	◦ 식품용 기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 의무화 ☞ (참고)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 고시전문> 「식품등의 표시기준」 ('13.12.26)	식품등의 표시기준 (‘15.1.1)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소비 안전과 (043-719-2861)
3. 현장 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 영업자(대표자) 대상	◦ 업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 종사 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2015. 4월 예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정책 조정과 (043-719-2003)
산림청			
1. 산림탄소모아 시스템 운영	〈신설〉	◦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산림탄소모아(산 림탄소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산 림탄소상쇄 사업계획 신청 ☞ (참고) 산림탄소모아 시스템 오픈시 접근 경로를 별도 공개예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15. 상반기)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99)
2.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규제 개선	◦ 연구개발비 사용 변경 한도 상향조정 등 집 행기준 개선	◦ 「국가연구개발규정」에서 정한 변경 승인한도인 3천만원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5백만원 이상의 장비·시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 필요	「국가연구개발규정」에서 정한 제출기간인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 「국가연구개발규정」에서 정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이상 사용하도록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 (’15. 1/4분기)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37)
	○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외 사용 금액 비율에 따라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로 제한	「국가연구개발규정」에 준하여 용도 외 사용금액 비율을 국가기관 간 통일 - 20% 이하인 경우 : 5년 이내 → 3년 - 20% 이상 30% 이하 : 7년 이내 → 4년 - 30% 초과인 경우 : 10년 이내 → 5년 - 둘 이상 병합 : 10년 이내 → 5년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3. 우드그랩 품셈 반영	〈신설〉	숲가꾸기 및 직영벌채 설계 시 우드그랩 품셈 반영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15. 1월)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20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4.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신설〉	노후화된 건조시설, 제재·가공 시설, 방부시설 등의 현대화 개선 지원 (30개소)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15년도 목재생산 사업계획	'15년 사업계획 ('15. 1월)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204)
5.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	〈신설〉	- 가로수 수목 생장으로 인한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가림현상 제거 - 교통안전 및 가로경관을 고려한 전지·전정 제도화 - 가로수 관리인식표 부착법 개선 조치 - 수목생육을 고려한 인식표 부착법 제도화 * 가로수 생육을 저해하는 못질 금지 및 현수막 부착끈 제거 등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도시숲경관 사업계획	'15년 사업계획 ('15.1월)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27)
6. 대부료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국유림 대부료 - 연간 증가율 (9%) 부과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대부료 (20/1,000) 부과	- 국유림 대부료 연간 증가율 하향 조정 및 감면확대 - 연간 증가율 : (당초) 9%→(변경) 5%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대부료 감면 (당초) 20/1,000→(변경) 10/1,000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소관법령>입법 및 행정예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상반기)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8)
7. 공·사유림 교환제도 개선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지방산림청별 운영	-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확대 구성 - 산림청 1차 소속기관과 제주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년 상반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시 자문대상 기준 - 10ha 이상인 경우 〈신설〉	- 별자치도에 확대 구성하여 국유 재산 처분 시 사전 검토 강화 -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시 자문대상 기준 개정 - 특별시·광역시 : 1ha이상 - 제주특별자치도와 시(도농복합읍·면제외): 3ha이상 - 그 밖의 지역 : 5ha이상 - 공·사유림 교환 추진 시 -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취득재산의 면적이 처분 재산의 면적보다 크도록 면적 규정 신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소관법령>입법 및 행정예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5)
8. 자연휴양림 설치가능 시설 확대	〈신설〉	- 자연휴양림 내 설치 가능시설에 다음 사항을 추가 - 숙박시설 : 트리하우스 - 편익시설 : 모노레일 - 체험시설 : 로프체험시설 - 체육시설 : 산악자전거시설·행/페러글라이딩 시설 - 안전시설 : 방송시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소관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2. 4)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9. 자연휴양림 보험가입 의무화	〈신설〉	재난·안전사고로 인하여 이용객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훈령) (‘14. 12. 15)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0. 대도시 지역 내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완화	○ 치유의 숲 면적기준 - 국가 및 지자체 : 50만㎡ 이상 - 그 외 : 30만㎡ 이상	○ 치유의 숲 면적기준 <table><tr><th>구분</th><th>국가 및 지자체</th><th>그 외</th></tr><tr><td>일반지역</td><td>50만㎡ 이상</td><td>30만㎡ 이상</td></tr><tr><td>특별시, 광역시 지역</td><td>25만㎡ 이상</td><td>15만㎡ 이상</td></tr><tr><td>도서(섬) 지역</td><td>-</td><td>10만㎡ 이상</td></tr></table>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 정보>소관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분	국가 및 지자체	그 외	일반지역	50만㎡ 이상	30만㎡ 이상	특별시, 광역시 지역	25만㎡ 이상	15만㎡ 이상	도서(섬) 지역	-	10만㎡ 이상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2. 4)
			구분	국가 및 지자체	그 외										
일반지역	50만㎡ 이상	30만㎡ 이상													
특별시, 광역시 지역	25만㎡ 이상	15만㎡ 이상													
도서(섬) 지역	-	10만㎡ 이상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 -4124)												
1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 신설	〈신설〉	○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 정받은 경우 -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 설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 - 지정 당시 제출한 산림치유지 도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 한 경우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 정보>소관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14. 12. 4)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 -4124)												
12. 산림치유지도사 활동범위 확대	○ 치유의 숲에 한정	○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욕 장 또는 숲길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 정보>소관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14. 12. 4)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124)
13.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기준 -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학과 학위 - 산림치유 관련 근무 경력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증 추가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소관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2. 4)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124)
14.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영림업 또는 별목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구입 또는 수입한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15.상반기)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15.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 완화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 * 1인 1회 지원에 한함 (다음년도 추가 지원 불가) ○ 지원내역 - 임도·작업로 시설, 목재생산장비 등 8종	- 지원자격 및 요건 -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에서 1인 2회 이상 지원 가능 ○ 지원내역에 생산 운반시설장비 (모노레일), 체험시설 추가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5. 1월)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4195)
16.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	〈신설〉	- 사업 대상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지원 비율 - (소액) 국비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 (공모) 종자·종묘구입비 30% 내에서 지원 ○ 지원 기준 : 본당 3,760원(W 10cm × L 120cm) *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5. 1월)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8~9)
17.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확대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 - 냉동탑차 지원	○ 지원 범위 - 냉동탑차 및 일반 화물차량 지원 -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유통장비 추가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5. 1월)
	○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대상 품목 확대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에 한정	○ 단기소득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으로 확대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6~9) 4194, 4196)
	○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 규모 완화 - 임산물 중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	○ 임산물 중 1개 단지 규모가 25,000㎡ 미만이라도 소득창출·경영목표 달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참조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8.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및 조경수 관정시설 보조율 조정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 보조율 조정 - 토양개량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10%	- 토양개량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유기질비료 : 국고+지방비 80% 이내, 자부담 20%이상 * 정액지원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5. 1월)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4, 4196)
	- 조경수 관정시설(직접) 보조율 조정 - 국고 40%, 자부담 60%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9. 정원정책 신설	〈신 설〉	- 정원에 관한 법률 규정 신설 및 정책사업 추진 -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운영 - 정원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코리아가든쇼 개최 - 꽃과나무 상담소 운영 (참고) 국회 홈페이지>의안정보>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5. 6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9)
20.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산림보호구역 내에서의 사망시설 등 재해시설 설치 시 보호구역 해제 절차 이행	- 산림재해 등으로부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사망시설 등의 설치행위를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가능토록 완화 - 송전탑 긴급복구 허용 - 사망시설, 산림재해 예방시설	산림보호법 시행령 ('14.12.4.)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설치 허용 - 병해충 예방시설 설치 허용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률>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042-481-4247)
21.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기준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예방교육을 받은 만 20세 이상인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역 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선발	○ 산사태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만 20세 이상인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선발하고 선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 예방교육을 받도록 선발기준 완화 ☞ (참고) 산 립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률>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산림보호법 시행령 ('14. 12. 4)
			산림청 산사태방지와 (042-481-8844)
22. 산림병해충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원 자격 - 기술1·2급 : 100ha 미만	○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원 자격기준 완화 - 기술1급 : 300ha 이하 - 기술2급 : 200ha 이하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림보호법 및 시행규칙 ('14.12월)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269)
23.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연장	○ 생산확인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효기간 : 30일	○ 생산확인표 발급일로부터 45일 이내 - 유효기간 : 45일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14.12월)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269)
2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조사목 활용확대	<신설>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조사목 훈증·건조하여 제재목으로 활용 * 피해극심지역에 대량훈증 시설	'15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및 장비 지원(3개소, 42억원)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15. 1월)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76)
25.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공동사업 지원기준 강화	〈신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동사업 지원은 신청자 공동명의의 사업부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함 (사업우선순위에 추가)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 (’15.1월)
			산림청 산림생태계 복원팀 (042-481-8815)
해양수산부			
1. 향만과 경제자유구역의 이중규제 개선	○ 「향만공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실시 계획 승인	○ 「향만공사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실시계획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향만공사법」 참조	향만공사법 (’15년 3월)
			해양수산부 향만물류기획과 (044-200-5751)
2. 해양심층수 부담금 요율 인하	○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	○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0.5% ☞ (참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1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8)
3.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	○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	○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 면제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식염의 원산지표시 강화	(‘15. 1월)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044-200- 5448)										
4. 연안어선 선박량 제한 상향 조정	<table border="1"><tr><td>연안개량안강망어업</td><td rowspan="4">8톤 미만</td></tr><tr><td>연안선망어업</td></tr><tr><td>연안통발어업</td></tr><tr><td>연안조망어업</td></tr><tr><td>연안선인망어업</td><td rowspan="4">10톤 미만</td></tr><tr><td>연안자망어업</td></tr><tr><td>연안돌망어업</td></tr><tr><td>연안복합어업</td></tr></table>	연안개량안강망어업	8톤 미만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10톤 미만	연안자망어업	연안돌망어업	연안복합어업	○ 10톤 미만으로 상향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개바다>보 도자료>어선 제한톤수 늘고 과징금 크게 올라	수산업법 시행령 (‘15. 3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 5517)
	연안개량안강망어업	8톤 미만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10톤 미만												
연안자망어업													
연안돌망어업													
연안복합어업													
5.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	○ 2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개바다>보 도자료>어선 제한톤수 늘고 과징금 크게 올라	수산업법 (‘15. 3월)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44-200- 5563)										
6. 수산자원보호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허용행위 확대	① 일반음식점 등 건축불가 ② 24m 미만 선박수리건조 ③ 농업용 및 수산업용 창 고시설 건축 ④ 수산업을 위하여 물건 쌓아 놓는 행위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자동차 야영장, 어항 편익시설 설치 허용 ② 40m 미만 선박 ③ 농업용 및 수산업외에도 선박시설 과 선박용 창고시설 허용 ⑥ 농어업 및 수산업과 선박시설, 선 박용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시 행령 (‘15. 1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 5531)										
	7.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벌칙 강화	○ 환수(부당수령액) ○ 처벌(없음)	○ 환수(부당수령액의 2배) ○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15. 4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새소식>보도자료>수산업직불금 부정수급못한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5)
8.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이 쉬워집니다	① 수협 설립인가 기준 중 사업규모 기준 폐지	○ 사업규모기준(지구별 수협 100억원 이상,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 수협 80억원 이상)	○ 사업규모기준 폐지 ☞(참고)해양수산부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4. 12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
	② 일선수협 상임이사 자격기준 완화	○ 상임이사 자격(수협이나 은행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공공기관, 연구·교육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가능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4. 12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
9. 배타적경제수역 입어 어획물운반선 체크 포인트 시범실시		○ 신설	○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시범실시 ○ 조건부합 일부어선 모범선박 지정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 연내 공동감시 실시	2015년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14. 12월)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44-200-5565) 해양수산부 서해어어관리단 (061-240-7970)
10. 수로도서지		○ 종이해도 :16,500원	○ 종이해도 : 18,300원	측량·수로조사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판매가격 인상	- 전자해도 : 8,200원 - 조석표(한국): 12,400원	- 전자해도 : 9,100원 - 조석표(한국) : 13,700원 * 기존가격대비약 11%인상 ☞(참고) 국립해양조사원홈페이지>정보마당>해양조사관련 법률정보>고시>수로도서지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규정(별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1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051-400-4312)
11. 국립해양박물관 법인 출범	정부 임시 조직으로 운영	해양수산부 산하 법인(공공기관)으로 운영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현행법령>국립해양박물관법	국립해양박물관법 ('15. 4월)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051-309-1721)